

베 트 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베트남 국기





베트남 지도



베 트 남

차 례

◆ 최근 주요 이슈	x
◆ 요 약	xi

I. 일반 개황

1. 국가 개요	3
2. 약 사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6
4. 사회와 문화	6
가. 자연조건	6
나. 국가와 민족	8
(1) 국기와 국가	8
(2) 민 족	9
다. 인 구	10
라. 언 어	11
마. 국민 생활	11
(1) 종교 생활	11
(2) 전통 의상(아오자이)	12
(3) 생활 풍습	12
(4) 민족성	12



Ⅱ. 경제 · 정치 동향

1. 경제 동향	14
가. 국내경제	14
(1) 국내경제 및 경제정책	14
(2)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8
나. 국제경제	25
(1) 수출입 동향	25
(2) 외국인투자동향	26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27
(1) 국제신인도	27
(2) 대외지급능력	29
2. 정치 · 사회 동향	30
가. 정치 동향	30
나. 사회 동향	31
다. 국제관계	33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 요인	33
가. 성장의 동인	33
나. 성장의 장애 요인	34
4. 베트남 시장의 특징	36

Ⅲ.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38
가. 개 요	38
나. 신투자법과 외국인투자법의 비교	40
(1) 투자 유형	40
(2) 투자 절차	41
(3) 투자 인센티브	41
(4) 투자자 권리	42
(5) 투자 보장	42
(6) 투자 분야 및 이중 가격	43
(7) 투자 청산	43
다. 신투자법의 주요 내용	44
(1) 진출 기업 형태	44
(2) 투자자의 권리	50
라. 신투자법 시행에 따른 기업 재등록 절차	52
(1) 재등록을 안하는 경우	52
(2)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56
리. 외국인투자 사업의 형태	59
마. 투자 우대 및 규제 조치	63
(1) 투자 우대 분야	64



베 트 남

차 례

(2) 외국인투자우대 조치	70
(3) 외국인투자규제 조치	73
2. 외국인투자여건	77
가.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	77
(1) 수출입 허가	77
(2) 관세제도	77
(3) 외환관리제도	79
나. 금융 제도	80
다. 조세 제도	84
(1) 법인소득세	84
(2) 개인소득세	91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95
(4) 특별판매세	98
(5) 인지세	98
(6) 천연자원개발세	98
라. 노동 및 기타	99
(1) 노동문제	99
(2) 투자 지역	103

IV. 주요 산업

1. 정보통신(ICT)산업	107
가. 정보통신산업 시장 규모	107
나.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현황	109
(1) 통신산업	109
(2) 소프트웨어산업	118
(3) 하드웨어 산업	122
2. 에너지 산업 동향	123
가. 에너지 산업 개발 필요성	123
나. 에너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	124
다. 개발정책	125
3. 석유가스 산업	127
가. 매장량	127
나. 생 산	128
다. 천연가스 처리 마스터플랜	130
4. 정유 산업	135
5. 전력 산업	136
가. 개 요	136
나. 발전설비 건설 추진계획	137
다. 전력자원 개발현황	138



베 트 남

차 례

라. 원자력발전	139
마. 주변국과의 전력개발 협력 추진	141
바. 전력공급 확대 방안	142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방안

1. 진출현황 및 애로점	145
가. 우리의 진출현황	145
나. 애로점	148
2. 진출 확대방안	150
가. 진출 전략	150
나. 진출 유망분야	151
3.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현황	154
가. 수은 자금	154
나. EDCF 지원	155
다. 금융 지원 확대 방안	156

〈부록 I〉 APEC의 개요 및 특징	161
----------------------------	-----

〈부록 II〉 베트남 투자법	188
-----------------------	-----



베 트 남

표 차 례

<표 1> 한·베트남 교역 현황	6
<표 2> 주요 국내 경제 지표	14
<표 3> 경제 사회개발계획(SEDPA)의 성과 및 목표	20
<표 4> 주요 국제 경제지표	25
<표 5>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이	29
<표 6> 베트남의 주요 경제 정책 변화 추이	39
<표 7> 투자 형태에 따른 장단점	62
<표 8>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우대세율표	71
<표 9> 부가가치세율 및 법인세율 현황	89
<표 10> 외국인과 해외 근무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94
<표 11>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자	94
<표 12> 부가가치세율	97
<표 13> 천연자원개발세율	99
<표 14>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규모 추이	108
<표 15> 베트남 유선통신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09
<표 16> 베트남 무선통신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11
<표 17> 베트남 통신 관련 기업 현황	113
<표 18> 베트남 인터넷 중계사업자(XPs) 현황	115
<표 19> 베트남의 인터넷 관련 주요 지표	116
<표 20> 베트남의 에너지별 수요	124



베 트 남

표 차 례

<표 21> 베트남 가채 매장량	127
<표 22> 베트남 석유산업 현황	128
<표 23> 향후 베트남의 석유생산 전망(일산)	129
<표 24> 베트남 가스산업 현황	129
<표 25> 향후 베트남의 가스 생산 전망(일산)	130
<표 26> 베트남의 가스파이프라인 현황	131
<표 27> 연도별 전력수요 예측	138
<표 28>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145
<표 29> 국가별 대베트남 투자 현황	146
<표 30> 지역별 외국직접투자 유치현황	147
<표 31> 대베트남 수은자금 금융지원 현황	155
<표 32> 대베트남 경제협력기금지원(EDCF) 현황	156



베 트 남

그 림 차 례

<그림 1> 10개년 전략(SEDs)과 SEDP 및 CPRGS 관계도	21
<그림 2>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시장규모 증가 추이	108
<그림 3>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117
<그림 4>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 추이	119
<그림 5> 베트남 하드웨어산업 규모 추이	122
<그림 6> 분야별 에너지 소비	126

최근 주요 이슈

■ 2006년 4월의 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경제 개혁파 득세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북부 출신), 대통령(중부 출신), 총리(남부 출신) 등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오고 있었음.
- 이번 전당대회에서 총서기장(농 득 만)을 제외하고 대통령(응웬 밍 찌엣)과 총리(응웬 쩌 쑤)가 모두 개혁파로 불리우는 남부 출신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제 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 WTO 가입

-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한 사전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음.
- EU,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28개국과 WTO 가입의 전제 조건인 양자 협상을 이미 타결하였으며, 오는 11월 7일 열리는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승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WTO 가입으로 베트남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 시행

- 그동안 베트남에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이 각각 존재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제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 투자법과 기업법을 지난 2006년 7월 1일, 공포하였음.
- 신투자법은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외국인투자 대상 분야에 과거 투자 금지 품목이었던 유통업 및 무역업을 포함하는 등 투자 대상 분야를 확대하였음.

요 약

■ 베트남 경제는 GDP기준 세계 57위(524억 달러, 2005년), 1인당 국민 소득 세계 166위(620달러, 2005)

- 세계 GDP의 0.1%, 우리나라 GDP의 6.7%

■ 정치구조 :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1976년 통일 이후 총리, 대통령, 총서기장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지역적, 계층별로 권력이 적절히 분산되어 안정적 정권 유지
- 농 득 만(Nong Duc Manh) 정부가 新기업법의 제정, 투자법 단일화,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부문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개혁파들의 입지 강화되고 있음.

■ 산업 및 무역구조 : 아직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1986년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고도 경제성장 지속
- 산업구조 : 공업 41.0%, 서비스업 38.1%, 농업 22.7%로 개방 정책 실시 이후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무역구조 : 원유 등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수요 증대로 상품수지가 소폭의 적자 기록
- 주요 무역상대국 : 대미 무역협정 타결로 수출은 미국에 집중 (21%)되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높은 비중 (17%)을 차지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추진

- 1988년 이후 2006년 9월까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6,635건 261억 달러에 이르러 베트남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투자 부문별로는 초기에는 봉제, 의류 등 단순노동집약 산업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원유 개발, 플랜트 등 대형화되고 있음.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진출 고려

- 베트남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잠재 시장으로서 단기적 이익 추구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진출 등 경제협력 기반 구축 필요

VIETNAM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베 트 남





1. 국가 개요

일 반 개 요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면 적	: 330천km ² (한반도의 1.5배)
	기 후	: 아열대성(북부), 열대성(남부)
	인 구	: 84 백만 명(2005)
	수 도	: Hanoi(308만 명)
	민 족	: 베트남인(88%), 화교, 크메르인
정 치	언 어	: 베트남어(공용어)
	종 교	: 불교(80%), 가톨릭(9%)
	독 립 일	: 1945. 9. 2(프랑스)
	정 부 형 태	: 사회주의 공화제
	국 가 원 수	: Nguyen Minh Triet 주석
	의 회	: 단원제(498석)
경 제	주 요 정 당	: 베트남 공산당
	국제기구가입	: UN, IMF, ADB, ILO, ESCAP, ASEAN
	G D P	: 528억 달러(2005)
	1인당 GDP	: 620달러(2005)
	화 폐 단 위	: Dong
	회 계 연 도	: 1. 1~12. 31
제	산 업 구 조	: (2005) 농업 20.9%, 공업 41.0%, 서비스업 38.1%
	주요수출품	: (2005) 원유 23.3%, 섬유류 15.1%, 신발류 9.5%
	주요수입품	: (2005) 기계류 14.4%, 연료 13.6%, 철강 8.2%
	주요부존자원	: 석탄(35억 톤), 석유(10억 톤), 철광석(7억 톤)
	경제개발계획	: 제8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
	경제적강점	: 농수산자원 개발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
제	경제적약점	: 기술인력 부족, 인프라 미비

2. 약 사

- 1883년 베트남, 프랑스의 보호국이 됨.
-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
- 1930년 호치민 베트남 공산당 결성
- 1941년 베트남 독립연맹(베트민) 결성
- 1945년 베트민, 하노이 입성, 독립선언
호치민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 1946년 프랑스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개시(1946~54)
- 1954년 베트민군, 프랑스와의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승리(5월)
제네바 협정 체결로 인도차이나 전쟁 종결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 베트남 대치(7월)
- 1955년 남베트남, 고딘디엠을 수반으로 한 베트남 공화국 수립
- 1960년 하노이의 지원으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 결성
- 1965년 미국, 중부 지역인 다낭에 상륙(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1965~73)
- 1967년 남베트남, 구옌 반티우 대통령 취임
- 1969년 해방전선,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 정부 수립(6월),
호치민 사망(9월)
- 1973년 파리 평화 협정 체결, 전쟁종결 결의
- 1975년 사이공 함락(4월)
- 1976년 총선 실시(4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탄생(7월)
- 1978년 소련과 우호협력조약 체결(11월), 베트남군 캄보디아 침공
(12월)

-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刷新)정책 채택,
개방·개혁 실시
- 1989년 베트남군, 캄보디아에서 철군
- 1990년 종전후 최초로 미국과 공식대화 재개
-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 체결(10월), 중국과 국교정상화(11월)
- 1992년 신헌법 채택(4월), 한국과 국교 수립(12월)
- 1994년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2월)
- 1995년 ASEAN 가입(7월), 미국과 국교 정상화(8월)
-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총리, 총서기장 연임
- 1997년 판 반 카이(Phan Van Khai) 총리 및 쩌 득 르엉(Tran Duc Luong) 대통령 취임
- 1998년 APEC 가입(11월)
-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농 득 만(Nong Duc Manh) 총서기장
선출(4월), 10개년(2001~2010) 경제·사회 안정과
발전 전략 채택
-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11월)
- 2006년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응웬 밍 쩌엣(Nguyen Minh Triet)대통령 및 응웬 땀 중(Nguyen Tan Dung)
총리 선출(5월)
- 2006년 APEC 개최(11월)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년 12월 22일(북한과는 1950. 1. 30 수교)
- 주요협정 : 무역, 투자보장, 항공협정('93), 이중과세방지협정('94),
세관협력협정('95), 외교관 및 관용사증면제협정('98) 등
- 교역현황

<표 1>

한·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1~9	주요 품목
수 출	2,561	3,256	3,432	2,928	석유류, 기계류, 전자제품
수 입	511	673	694	664	수산물, 신발류, 전기기기

- 해외직접투자현황(2006년 6월말 현재, 총투자 기준)

: 871건 17억8,700만 달러

4. 사회와 문화 ¹⁾

가. 자연조건

- 위치 및 지형

－ 베트남은 동경 102° 09'~109° 30', 북위 8° 10'~23° 24'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하

1) 이것이 베트남이다, 동연, 2006.11에서 주로 인용

고 있고, 면적은 331,690km²로 한반도의 약 1.5배이고, 최북단과 최남단간 거리는 1,750km에 이른다.

-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북부의 홍(Hong)강과 남부의 메콩(Me Cong)강이 주요 생활중심지가 되고 있음. 특히 메콩강은 길이가 4,220km에 달하는 인도차이나의 젓줄로서 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베트남에 이르러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음.(총 길이 중 200km만이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을 통과)
- 메콩 델타 지역의 총 면적은 22,000km²에 달하며, 상류에서 운반된 비옥한 흙으로 쌀농사에 적합해 쌀의 곡창지가 되고 있고,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홍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톤킹만으로 흐르는 전장 1,200km(베트남 통과 구간은 475km)에 달하는 북부지역의 젓줄로 베트남의 2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15,000km² 면적의 홍강 델타 지역을 통과함.
- 베트남에는 높이 2,400m 이상 되는 산이 11개 있으며, 가장 높은 판시판 (Phan Si Pan, 3,143m)을 비롯해서 뿌르엉(Pu Luong, 2,985m), 랑꿍(Lang Cung, 2,193m) 등의 산이 있음.
- 베트남 동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South China Sea(남중국해)'로 표기되어있지만 베트남은 '동해(East Sea)'라고 부르고 있음.
- 동해상에는 중국 등 인근국과의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앙사(Hoang Sa) 군도(Paracel 군도 또는 西沙群島)와 썬엥사(Truong Sa) 군도(Spartley 군도 또는 南沙群島)가 있는데, 특히

쓰영사 군도(南沙群島)는 원유와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많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임.

□ 기 후

- 북부는 아열대성이고, 남부는 열대성 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 (북부: 23.2℃ / 중부: 24.1℃ / 남부: 27.1℃), 습도는 월 평균 83%, 평균 강우량은 2,151mm으로 한국보다 2.4배 높음.
-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연중 기온 차가 심하며, 남부 메콩델타 지역도 태풍이나 침수 피해를 자주 당하는 편임. 그러나 호치민시는 연중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고(평균 26℃ ~ 29℃),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는 편임.

나. 국가와 민족

(1) 국기와 국가

□ 국 기 : 황성적기(黃星赤旗)

- 현 남딩(Nam Dinh)성 유학자 가정 출신으로 베트남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응우옌 호우 띠엔(Nguyen HuuTien)이 혁명 활동 중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고 프랑스 식민시대에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던 쾨 다오(Con Dao)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동안에 처음 고안하였음.

- 황성적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별이 그려져 있는데, 붉은 색은 혁명과 독립된 베트남을 상징하고 5각의 황성(黃星, Sao Vang)은 사(士, Si), 농(農, Nong), 공(工, Cong), 상(商, Thuong)과 군인(兵, Binh)이 한데 뭉쳐 단결하고 있음을 상징함.

□ 국 가: 진군가(進軍歌)

- 베트남 국가는 진군가(進軍歌, Marching to the Front, Tien Quan Ca)로 반 까오(Van Cao)가 작곡하여 프랑스 항전 때부터 군대에서 군가로 쓰던 것을 국가²⁾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2) 민 족

- Viet족이 전국민의 대부분(89%)을 차지하고 있으며, 53개 소수민족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약 100만의 화교가 살고 있음. 주요 민족은 사용 언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비엣 므엥(Viet-Muong) 어군 : 베트남 전체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어군에 속하는 민족은 비엣(Viet), 므엥(Muong), 토(Tho), 쑤트(Chut) 등 4개 민족이 있음.

② 몬 커메(Mon-Khome) 어군 : 21개의 소수민족이 속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 동남부 지방, 찰렝썬 산맥 서부 고원지대, 응에안성 북쪽 서부와 베트남 서북쪽 각 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주로 산기슭에 거주하며 화전으로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음.

2) 국가 : 단결하자 베트남! 조국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깃발은 승리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고, 조국의 영혼을 담고 있다. 서둘러 전선으로 달려 나가자! 다함께 전진하자! 우리 베트남은 영원토록 부강하리라!

- ③ 파이 타이(Tay-Thai) 어군 : 8개 민족이 속하며, 베트남 북부의 산간지방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임.
- ④ 호몽 자오(H'mong-Dao) 어군 : 중국 각 지방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해온 민족들로 북부지역 해발 1,000m 내외의 산악지역에 거주.

다. 인 구

- 전체 인구는 약 8,400만 명(2005년)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는 250명/km²,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6.7명으로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음. 출생률은 19.9%, 사망률은 5.6%로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자녀 수는 2.3명, 평균수명은 61.35세임.
- 행정구역은 5개의 특별시와 59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284만 명, 호치민에 약 538만 명, 하이퐁에 약 171만 명, 다낭에 약 71만 명 등이 살고 있음.
- 베트남 인구 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 4,300만 명에 달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 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 국민의 7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매우 급속할 것으로 보여 이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 받아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증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대도시에는 상당수의

불법 이주민들이 살고 있음.(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수많은 불법 이주민들이 있음).

라. 언 어

-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음. 베트남어는 중국어의 4성조 보다 많은 6성조로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60% 정도) 한자어의 베트남식 발음을 터득하면 배우기가 용이함.

마. 국민생활

(1) 종교 생활

- 베트남에는 신자가 가장 많은 불교를 비롯하여 카톨릭, 까오 다이(Cao ai, 유·불·도 혼합), 호아 하오(Hoa Hao)기독교 등의 종교가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일반적으로 미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 지신(地神), 부(富)의 신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풍속도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일을 택해 장례 날짜를 정하기도 함.

(2) 전통 의상(아오자이)

-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는 ‘긴 옷’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76년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에 부적합하고 퇴폐적이라고 착용을 금지했다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예식에서 즐겨 착용하고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체의 제복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3) 생활 풍습

- 음력 정월 초하루(땃, Tet)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하루에는 일가친척, 선생님,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배 돈이 주어짐.
- 설날의 첫 방문자는 그해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고위 인사나 돈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며, 첫 방문자는 조상신을 모신 제례상에 향불을 피우고 덕담을 하고 어린이에게는 세배 돈을 나누어 줌.
- 베트남인들은 9를 으뜸이자 신성한 수로 여기며, 13은 액운의 상징으로 여김.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험의 뜻과 비슷하여 숫자의 합이 5가 되거나 15, 25등 5로 끝나면 이를 기피함.

(4) 민족성

- 베트남인들은 스스로 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감성 등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

로 물리친 국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함.

- 북부지역 출신 사람들은 근면형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호치민 주석 등 베트남 혁명가의 대부분이 북부출신인 반면,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풍부한 농산물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자유 분방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편임.

Ⅱ 경제 · 정치 동향

1.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1) 국내경제 및 경제정책

□ 고성장 기조 유지

— 사회주의공화국인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인 도이머이(刷新)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연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f
경제성장률	7.1	7.3	7.7	8.5	7.8
재정수지/GDP	-1.5	-2.0	-1.4	-1.7	-2.0
소비자물가상승률	3.8	3.1	7.8	8.3	7.6

자료 : EIU

- 2005년에는 제2위 수출 품목인 섬유 및 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부문이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매, 금융, 통신 등의 민간부문이 확대되면서 8.5%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으로 추정됨.
- 금년에는 고유가 지속과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WTO 가입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그동안 쿼터 제한을 받아오던 베트남 섬유류의 대미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섬유산업의 호조 지속으로 7.8%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활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의 중심이 종래의 호치민 중심 남부지역에서 하노이, 하이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 소폭 확대 전망

- 경제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와 원유 수출 증대로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목표치인 GDP 대비 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재정수지는 국내 개발 수요 확대에 의한 지출 증대, 금융 개혁 추진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로 점차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당분간 유지될 듯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 구성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과 석유제품의 소매가격이 상승하면서 2005년중 8.3%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금년중에는 고유가 지속과 국내 통화량 증대에

【참 고】

경제 동향 요약

□ 개 요

- 베트남의 2005년 명목GDP는 524억 달러로 GDP기준 세계 57위
 - 동년 세계 명목 GDP(44조 3,849억 달러)의 0.1%, 우리나라 GDP(7,876억 달러)의 6.7%에 불과함.
- 1인당 국민소득은 620달러로 세계 166위(2003년)이며 세계 평균인 6,987달러는 물론 개도국 평균 1,746달러보다도 낮은 저소득국임.
- 외환보유액 : 약 91억 달러(2005. 12월 기준)
- 신용 등급 : Moody's: Ba3, S&P: BB+, Fitch: BB-

□ 산업구조

- 공업 41.0%, 서비스업 38.1%, 농업 22.7%로 개방정책 실시 이후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무역구조

- 2005년 들어 원유가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선 가운데 성장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수요 증대로 상품수지는 소폭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소폭 흑자로 전환됨.
- 주요 수출상대국은 대미 무역협정 타결로 미국에 집중(20.6%)되어 있으며 이후 일본(13.0%), 호주(7.9%), 중국(7.3%) 등임.
 - 4대 수출품목은 원유(23.3%), 의류(15.1%), 신발류(9.5%), 수산물(8.6%), 쌀(3.6%) 등임.
- 수입은 중국이 원자재 수입수요로 1위국(17.0%)이며, 이후 싱가포르(13.4%), 한국(11.7%), 일본(10.8%), 태국(7.1%) 등임.
 - 4대 수입품목은 1위가 기계류로 전체 수입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정유제품(13.6%), 철강(8.2%), 섬유부자재(6.3%) 등임.
- 교역규모 : 수출(325억 달러), 수입(333억 달러)

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인플레이 억제 의지로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은행(SBV)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2003년 3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동(dong)화 예금에 대한 기준 금리를 2005년 2월 7.8%(기준 금리 대비 0.3% 포인트 상승)로 인상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8.25%로 인상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 정부는 경제개혁정책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소와 함께 2002년기준 5,196개에 이르는 국영기업중 2002~05년 기간 동안 2,857개를 민영화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함.
 - 그동안 2,000여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되었으나 이들이 전체 국영기업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6%에 불과하여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기업 구조조정 및 개발 위원회 (Steering Board of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가 밝힘.
 -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기업들이 민영화할 법적 의무가 없어 임원 및 지방 정부의 반발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절차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또한 많은 국영 기업들이 채무를 지고 있어,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민영화 부진의 요인으로 지적됨.

(2)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개 요

- 베트남 정부는 2006년 9월초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06~2010」을 작성하였음.
- 동 계획은 지난 2001~2005년간 베트남 경제가 연평균 7.5%의 GDP 성장 및 750만 명의 고용 창출 등의 양적인 성장 확대를 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2010년까지 1인당 GDP 1,000달러 달성, 빈곤 인구 비율의 감소(15~16%) 및 도시지역 상수도 공급률 증대(95%)라는 주요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음.

□ 계획안 작성 배경 및 추진 일정

- 이 계획은 2001년 4월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수립한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 2001~2010」중의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관련 정부 관계자들 및 기업인들과 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2005년 9월에는 원조공여국 기관과도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동 계획안을 2006년 4월의 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01~2005의 주요 실적 평가

－ 양적 성장 확대

- 고도 경제성장 실현 : 연평균 GDP 성장률 7.5% 기록
- 산업구조 관련 제조 및 건설분야 비중 증가
: 2000년도 36.7% → 2005년도 41%
- 세계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부문이 확대되었음. 동 기간중
연평균 수출 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16.2% 및 18.5%이며, ODA 지원
액은 2001년 24억 달러에서 2005년 3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01-2005년간 ODA 공약총액 : 147.3억 달러(베트남내
집행액 : 77.7억불)
* 2006-2010년간 ODA 공약총액(예상) : 170억 달러
(집행 100억불 예상)
- 고용 증대, 빈곤 인구의 감축, 상수도 공급률 등에 대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 사회경제개발계획 2001~2005의 문제점

－ 질적 성장 미흡

- 섬유 등 경공업 및 중소기업제품 위주 수출이 총수출의 40.2% 차
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수출 점유율이 미미함.

<표 3> 경제사회계 발계획(SEDPA)의 성과 및 목표

(단위 : %)

구분	항목	2001~05목표	2001~05성과	2006~10 목표
경제지표	GDP 성장률	7.5	7.5	7.5~8.0
	1인당 GDP(달러)	410(2001년)	620(2005년)	1,000(2010년)
	산업구조(GDP내)			
	- 농림수산	20~21	20.5	15~16
	- 제조·건설	38~39	41.0	42~43
	- 서비스	41~42	38.5	41~42
	수출증가율(연간)	14~16	16.2	14~16
사회개발 지표	고용 창출(백만 명)	7.5	7.5	8.0
	숙련 인력 비율	30	26	40
	빈곤인구 ^{*)}	17(2001년)	7(2005년)	15~16(2010년)
	인구증가율	1.2	1.4	1.12
환경지표	상수도 공급률	60	62	75(농촌)~95(도시)
	산림녹화율	38~39	38(2005년)	43

주 : 빈곤인구의 기준은 2005년까지는 월소득 기준 도시지역 약 10달러, 농촌지역 약 6.7달러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6~10년 계획에서는 이를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도시지역 약 15.3달러, 농촌지역 약 12.3달러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상기 2005년도 빈곤인구 비율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26%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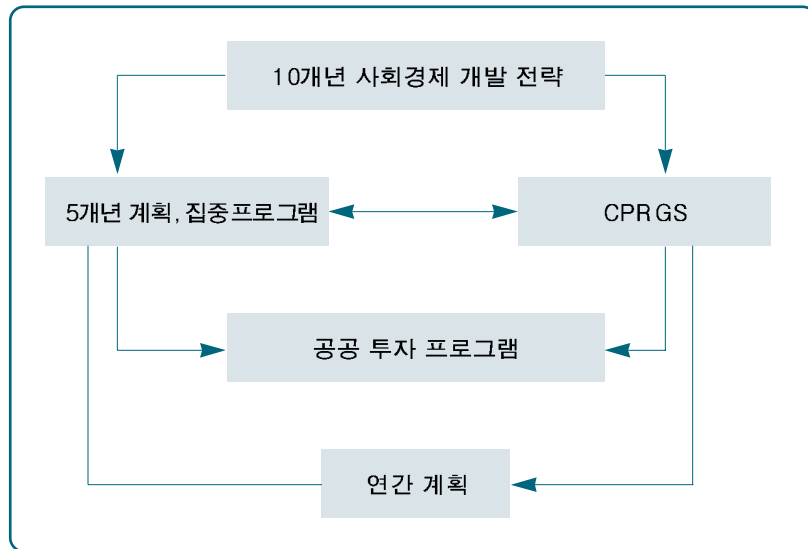
- GDP 대비 서비스 분야 점유율 및 숙련인력 비율에 대한 목표 미달성

□ 사회경제개발계획 2006~2010의 방향

— 주요 일반 목표(General Goals)

-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를 통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탈피
-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그림 1> 10개년 전략(SEDs)[※]과 SEDP 및 CPRGS 관계도



주 :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2001~2010))

- 주요 개발 목표(Main Targets)
 - 주요 성과지표는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
 - 동 목표는 UN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베트남의 개발목표(VDG) 및 세계은행의 포괄적 빈곤해소 및 성장전략(CPRGS :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 Growth Strategy, 2002년 수립)의 이행과도 부합되게 작성되었음.

□ 사회경제개발계획 2006~2010의 주요 특징 및 개선 필요점

- 금번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

- 베트남 정부가 동 계획 수립시 처음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 (stakeholder)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
- 금번 계획(안)은 새천년개발목표(MDG) 및 베트남의 개발목표 (VDG) 등과도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으며 빈곤감축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동 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개발계획의 수정, 보완에 있어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이 중심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개선 필요점

- 이번 5개년 계획의 달성목표가 매우 광범위한데 비해 재원 배분 등 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특히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역할 규정과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있는 예산 배분 및 행정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 투자계획이 경제부문(70%) 위주이고 환경 등 여타부분에 대한 투자(2.8%)는 지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정책이 필요함.
- 부패방지 및 행정·사법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참고】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

□ 개 요

- CPRGS는 베트남이 World Bank로부터 양허적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2002년 세계은행과 IMF에 제출된 베트남판 빈곤 감소 및 성장전략(PRSP)으로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의 각 부문별 개발전략 및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임.
- 지속적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 확립, ② 금융시장 안정, 세계 개혁을 통한 정부 재정 안정, 외환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거시경제 균형 유지 ③ 빈곤층을 위한 보건 및 교육 여건 향상 등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개발 목표

- 지속적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산업 및 부문별 주요 정책으로 ① 빈곤층 소득 창출을 위해 빈곤층의 90%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성장 전략, ②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성 지위 향상, ③ 빈곤층 및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을 설정함.
- 또한 그 구체적 개발목표로서 빈곤 비율 감소,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하수처리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 개선 등 1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정함.

□ CPRGS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 베트남 정부 자체적으로 2002~03년간의 CPRGS 추진경과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개발 중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품목이 없으며, 지역·사회적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여, 베트남 정부는 2004년 10월 하노이에서 열린 원조공여국 회의(Donor Group Forum)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전략(National Strategic Ori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ietnam's Agenda 21)을 발표함.
- Vietnam Agenda 21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로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한 3개 분야 19개 우선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나. 국제경제

(1) 수출입 동향

<표 4>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f
경 상 수 지	-6.1	-18.8	-9.3	28	10.2
경상수지/GDP	-1.7	-4.8	-2.0	0.5	1.7
상 품 수 지	-10.5	-25.2	-22.6	-7.9	7.5
수 출	167.1	201.8	265.0	324.9	399.1
수 입	177.6	227.0	287.6	332.8	391.6
FDI 유 입 액	14.0	14.5	16.1	27.0	..
외 환 보 유 액	41.2	62.2	70.4	90.5	..

자료 : IFS, GD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05년중에는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확대와 전체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감소하였음.
- 금년 이후에는 다자간섬유협정(MFA) 종료에 따른 섬유류의 수출 경쟁 심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 진행에 의한 수입 확대, 국내 내수시장의 호조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자재 수입수요 증대 등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의 유입확대와 함께 베트남 해외교포의 송금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이 2005년 중 4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비공식적인 송금까지 포함할 경우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WTO 가입 추진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한 사전신청을 제출해놓고 있으며, EU, 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미국 등 양자협상 대상국인 28개국과 WTO 가입의 전제 조건인 양자 협상을 이미 타결하는 등 2006년까지 정식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WTO가입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이 2005년 5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타결됨으로써 금년 내 가입 가능성이 큰 상황임.

(2) 외국인투자 동향

□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증가세

- 2003년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노동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FDI 유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05년중 외국인투자 승인액이 약 798건, 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년말 기준 외국인투자 유입 잔액은 27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2005년중 외국인투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체 승인액의 60%가 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공업지대 및 수출가공지대의 투자가 1/3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I.C.R.G. : 71/140('04. 12) → 76/140('05. 9) → 65/140('06. 6)
- Euromoney : 76/185('04. 9) → 75/185('05. 3) → 82/185('06. 3)
- I.I. : 81/173('04. 9) → 80/173('05. 9) → 79/173('06. 3)
- OECD : 5등급('04. 4) → 5등급('05. 4) → 5등급('06. 4)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네델란드(Atradius) :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 아직은 투기적 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Moody's사가 베트남의 경제성과 등을 반영하여 외화표시 장기채권의 신용등급을 종전 B1에서 Ba3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06년 9월 7일에는 S&P사가 베트남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들어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Moody's : B1 → Ba3('05.7.7, stable)
 - S & P : BB- (Positive) → BB+ ('06.9.7, stable)
 - Fitch : BB- (stable)

□ 구조조정 성과가 신용등급에 영향 전망

- 비효율적인 공공기업 개혁, 금융기관들의 약 30%에 달하는 부실여신 해소, 세제 개혁 등이 향후 신용등급 향상과 연계되어 있음.

□ 베트남 최초의 국제채 발행 성공

- 베트남은 2006년 1월 중순 7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최초의 국제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음. 만기 10년, 표면 이율 7.125%인 이번 채권발행에는 모집 금액의 6배에 이르는 45억 달러가 몰렸으며, 조성된 자금은 국영조선소인 Vinashin사, 베트남 전력청, 베트남 항공사 등에 배분될 예정임.

- 이번 채권 발행의 성공으로 향후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의 채권 발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베트남 재무부는 2006년중 총 9억 7,530만 달러의 정부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2) 대외자금능력

<표 5>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o	2006 ^f
총 외 채 잔 액	1332	1581	1820	2020	2180
총외채잔액/GDP	38.1	40.0	40.3	38.8	36.5
총외채잔액/수출	67.4	67.2	59.7	54.3	51.2
D.S.R.	5.3	3.1	2.3	2.6	2.4

자료 : EIU

□ 양허성 차관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 외채가 주로 IMF 및 세계은행 차관을 포함해 양허성 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D.S.R.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음.
-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빈곤감소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2003-06년 동안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ADB도 매년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매년 선진국(Consultative Group)들의 원조가 유입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 열린 세계은행의 자문그룹 회의에서 세계은행 및

주요국 등 국제원조 기관들은 2006년중 37억 달러(무상원조 12억 달러, 소프트 론 2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음.

- 2000년에 대 러시아 루블화 채무 110억 달러에 대한 협상 타결로 동 채무가 23년간에 걸친 17억 달러의 채무로 전환되어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

□ HIPC 대상국에서 제외

- 베트남은 세계은행이 분류하고 있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고채무저소득국) 국가중 sustainable cases(기존 채무 구제방식에 의한 외채해결 가능국)로 분류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5년 3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HIPC 대상국 리스트에서 sustainable cases들이 HIPC 대상국에서 제외됨으로써 베트남도 HIPC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베트남은 세계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세계은행이 제시한 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 전략(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을 수행해 오고 있음.

2.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1976년 통일 이후 남부 출신의 총리, 중부 출신의 대통령, 북부 출신의 총서기장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2006년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총리와 대통령을 모두 남부지역 출신이 차지하여 정치적 배분 보다는 경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정부 주요 요직 교체

- 지난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현 농 득 만 총서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응웬 민 쩌엣, 총리는 응웬 쩌 쩌이 선출되었으며 공산당 서기국 서기인 쩌엣 쩌 상 서기와 함께 남부 출신의 경제전문가들이 대통령, 총리, 서기국 서기 등을 장악하여 향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난 1930년 노동자의 당으로 출범한 베트남 공산당이 당헌을 개정, 자본가의 공산당 영입을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나. 사회 동향

□ 부정부패 해소 대책 착수

-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판 반 카이 전(前)총리는 반부패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국회도 국가감사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1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각된 'PMU 프로젝트 횡령사건'으로 불리는 일본 ODA 자금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정부 내 많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치

는 등 큰 파문을 초래하고 있음.

□ 소수 민족과의 대립이 사회불안 요소

- 베트남은 중앙고원지역에 많은 소수 종족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경제여건 개선 조치를 통해 2001년 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라오스와의 국경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몽족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몽족들이 과거 베트남 전쟁시 미국을 도와 북베트남과 대립하였고 현재에도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빈곤 퇴치에 성과

- 최근들어 정부의 각종 보조지원과 국제원조에 힘입어 빈곤퇴치에 성과를 거둬 빈곤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조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2004년 기준 베트남내 빈곤층(한달 수입이 약 6.3달러)이 전체 인구의 9%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
- 특히 베트남 정부는 2005년 9월초 대대적인 빈곤층 지원사업을 위해 2010년 까지 39억 2,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우대 금리 대출, 재할 사업, 보건, 직업 훈련, 교육 부문 등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다. 국제관계

□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

- 2005년 6월 종전후 최초로 Khai 총리가 미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국경 마찰 등 역사적으로 잦은 분쟁을 겪은 중국과의 대외 관계도 동년 7월 Luong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해상 및 육상 국경 분쟁을 2008년까지 해결하기로 합의 하는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 요인

가. 성장의 동인

□ 경제성장 잠재력

- 1986년 말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개혁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 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후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3,010달러(2005년 기준, 세계 148위)에 이르고 있어 국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가능성도 큰 상황임.

□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월남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해외교포들 및 그 자녀들의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치적 안정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동안 정치적으로 안정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성장의 장애 요인

□ 관료주의로 행정 소요시간 및 비용 과다

- 외국인투자시에 제도상의 투자 허가기간 보다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됨.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 사용계약,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 예상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함.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부문은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임.

□ 불균형적인 발전

- 베트남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 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서만 집중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또한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신속히 적응한 계층이 신흥 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차 소득 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들 계층간의 갈등이 향후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의 잦은 변화

-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내부 상황에 따라 이미 발표한 정책도 자주 변경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급입법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4. 베트남 시장의 특징

□ 남부와 북부 베트남은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

- 베트남의 남북지역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매우 멀고(1,700Km) 물류여건이 좋지 않아 분할된 각각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음. 이에 따라, 소비자 취향, 기 진출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함.

□ 유통체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제품군별로 상이

- 유통구조가 선진국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고 유통체계가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 수입상-소매상-소비자, 수입상-소비자 등과 같이 다양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낮게 책정함.

□ 지역별, 소득계층별 격차가 큰 시장

- 도시-농촌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크며, 같은 지역이라도 소득간 격차가 심하므로 목표고객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제품 시장과 도시 저소득층,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제품 시장으로 양분됨.

□ 투자허가 남발로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투자허가를 남발하여 내수시장 점유경쟁이 치열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인투자업체가 11개사가 있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52개의 현지조립업체와 7개의 외국투자업체가 있음.
- 또한 수입관세 인상, 수입규제 등 정부발표가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음.

□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는 브랜드시장

- 베트남 소비자들은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복제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

- 베트남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은 있으나 베트남 정부와 소비자들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이에 따라 외국제품에 대한 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된 제품을 복제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III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가. 개 요

□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베트남은 국민경제 발전, 천연자원 개발, 노동력 및 기타 국가 잠재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외국 자본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자 1987년 12월 29일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였으며 1988년 9월 30일에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차례 걸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해 통합 투자법 제정

- 그동안 베트남에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이 각각 존재하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표 6> 베트남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주요 정책 및 조치
1986	- 개인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소유권 인정 - 생산계획, 자금조달, 제품판매 등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개별 사업 단위로 이양 - 도이머이 노선 채택
1987	- 국영기업개혁에 관한 법령 제정 - 검문제 철폐, 제조업체의 해외무역 허용 등 기업의 영업영역 확대 - 외국인투자법 제정
1988	- 외환관리법, 수출입 · 관세법 제정 - 국영기업의 정리와 피고용자의 해고 개념 도입 천명 - 민간기업에 대한 규모 제한 철폐, 고용의 자유 허용 - 은행제도 개혁(국가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1989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설치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제 확립(3월) - 수출가공구 설치 발표 - 국영부문의 보조금 완전 철폐
1990	-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 『사기업법』 제정(2월) - 『회사법』 제정(12월)
1991	- 외국인투자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수출가공구 설치허용법안 통과 - 사회안정화전략 채택(제7차 전당대회) - 외환거래소 설립 : 호치민(8월), 하노이(11월) -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능성 제시(12월)
1992	- 새로운 수출입 관세법 시행(3월) -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헌법 승인(4월) -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12월)
1993	- 토지법 개정(7월) - 파산법 시행(7월)
1994	- 외환시장 개설(10월) - 노동법 제정(11월)
1995	- 토지 · 내수면, 해수면에 대한 임차료 규정 및 시행령 시행(1월) - 행정위반 처리법령(7월)
1996	- 민법 시행(7월) - 행정위반 처리 시행령(10월) -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12월)
1997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3월)
1998	- 국영기업개혁위원회(NERC) 설치
2000	- 외국인투자법(6월) 및 외국인투자법 시행령(7월) 개정 - 호치민 주식거래소 개설
2002	- 노동법 개정
2006	- 투자법 개정(7월), 기업법 개정(7월)

- 세계 경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위해 각종 제도 및 법안의 개정과 WTO 가입을 추진해 온 베트남 정부는 두 가지 투자법을 폐지하고 신규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 투자법을 지난 2006년 7월 1일, 공포하였음.
- 신규 투자법의 주요 특징은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과 투자 대상 분야를 과거 외국인투자 금지 대상품목이었던 유통업 및 무역업에 대해서도 심사후 승인 대상으로 하는 등 투자 대상 분야를 확대하였다는 것임.

나. 신투자법과 외국인투자법의 비교³⁾

(1) 투자 유형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직접투자	- 기존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유형을 다양화하여 상세히 명시 - 또한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향상, 환경오염 방지능력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	- 투자유형이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BCC, BOT, BTO, BT 등에 불과함
간접투자	- 재정지원, 회사지분 취득(일부 민감 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제한되어 있음),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및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 기타 재무 참여 등 간접 투자를 허용함.	- 간접투자 개념이 없음.

3) www.kotra.or.kr 등 참조

(2) 투자 절차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등록	- 신규 투자법에는 이를 명시하였으며 투자 금액이 3,000억 VND(1,900만 달러) 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의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라이선스 획득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금 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임
등록 소요 기간	- 1,900만 달러 이하 및 조건부 투자대상이 외의 분야 소요기간은 15일 이내에 등록	- 금액 명시가 없었으며 소요기간은 30일
심사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금액이 3,000억 VND(1,9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승인 획득 가능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금 액별 심사대상이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

(3) 투자 인센티브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세금 우대조항	- 신규 투자법에는 이러한 우대 세율 명시가 없음	- 과거 투자법에는 법인세 우대 세율을 (28%, 20%, 15%, 10%)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음
소득세 면제	- 신규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완료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 - 투자장려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 과거 투자법에는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 없었음.
수입관세 면제	- 신규투자법에는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교통 장비, 기타 제품 구입시 수입관세 면제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

토지 사용기간	- 신규 투자법에는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 과거 투자법에는 토지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라이선스 기간만 있었음)
토지 사용료	- 신규투자법에는 투자장려 분야 투자시 토지 무상사용, 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투자형태 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의미)	- 과거 투자법에는 BOT, BTO, BO 형태 투자나, 열악지역 투자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수 있다고 명시
기타 인센티브	- 신규투자법에는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 전통공예단지 등 투자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과거 투자법에는 공업단지, 가공단지 투자시 우대 가능만 명시

(4) 투자자 권리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원자재, 장비구매	- 신규 투자법에는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할 필요 없다고 명시(의무조항 해제)	- 과거법에는 투자자가 장비, 차량, 원부자재 구매 시 베트남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 (ex. 오토바이)
투자자금 회수	- 신규 투자법에서는 투자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감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	- 외국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3자에 매각 권한이 있다고 명시

(5) 투자 보장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자산 유상보상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명시. 또한 보상 수단은 환전가능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 과거법에는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에 대한 명시 없었음. 또한 보상수단에 대한 언급 없음.

(6) 투자 분야 및 이중 가격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무역, 유통 업 분야 투자	- 신규 투자법에는 외국투자자가 무역 및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100% 단독투자 가능. - 또한 취급 업종분야 및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음. 그러나 동 분야는 자동승인 대상 분야가 아닌 투자심사 대상 분야로 향후 세부 지침 보완 예정	- 과거법에는 무역,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수상승인 조건이라 사실상 불허. -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투자만 허용.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품목 확대 불가
이중 가격 적용	- 신규 투자법에는 외국투자자도 내국기업과 같은 가격의 전력, 수도 등을 적용한다는 이중가격 폐지 언급	- 과거법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는 베트남 국내기업보다 높은 전력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가격 적용

(7) 투자 청산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청산 조건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승인시한 종료 투자자 부모와 함께 투자자 자의로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	- 과거법에는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모 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만 명시

다. 신투자법의 주요 내용

(1) 진출 기업 형태

□ 투자법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으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법의 규정을 적용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습에 의거하여 적용함.
- 우선순위 : 국제조약 > 특별법 > 투자법

□ 투자 방식 구분

① 직접투자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단독 자본출자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간 합작
- BCC⁴⁾, BOT⁵⁾, BTO⁶⁾, BT⁷⁾ 계약에 의한 투자 - 사업개발투자

4)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경영협력계약(BCC)은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사업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5) BOT (Build-Operate-Transfer) :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는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형식을 말함.

- 지분매입 혹은 자본출자를 통한 투자활동 관리 및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투자

② 경제단체 및 회사 설립에 의한 투자

- 투자법 제 21조에 근거한 투자형태로서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기타 법 규정에 따른 각종 경제 단체들을 의미함.
- 국내투자자의 경우 상기 형태 외에 조합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조합 또는 조합 연합의 설립을 위한 투자 형태도 있음.

③ 상호 계약에 의한 투자

- BCC 계약 또는 경영협력 형식의 계약체결에 의한 투자로서 이윤, 생산품 분배 목적의 생산 협력, 유전 탐사, 조사, 개발 및 자원 생산 및 분배 형식의 계약, 교통, 전력생산과 경영, 배수 시설, 폐수처리 시설, 기반시설 신축 및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 등이 있음.

-
- 6) BTO (Build-Transfer-Operate) :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동안 그 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형식을 의미함.
- 7) BT (Build-Transfer) :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함.

④ 사업개발투자

- 사업장의 확대, 매출규모 및 사업
- 기술혁신, 품질 개선, 환경오염 축소 등

⑤ 자본출자, 지분매입, 인수, 합병 형태의 투자

-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대한 자본출자 및 자본 매입
- 기업 및 지사의 인수 및 합병

⑥ 간접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 매입,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한 투자,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등을 의미함.

□ 사안별 투자 절차

① 최초로 기업을 설립하여 투자를 시행하는 국내투자자

- 기업법에 의거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음.

②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

- 투자법에 의거 투자절차를 밟은 후 투자승인확인서(Certificate of Investment)를 발급 받음. 동 투자승인확인서가 기업법상 사업자 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대체함.

③ 기존 투자승인확인서를 받은 외국투자자

- 새로운 투자주체(기업)의 설립 없이 신규 투자프로젝트 추진 시,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절차를 밟아야 함.
- 새로운 투자주체 설립이 수반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승인확인서(Certificate of Investment)를 발급받아 경제주체를 설립해야 하며 현재는 투자승인확인서가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대체함.

□ 투자형태별 회사 설립 개요

① 100% 투자회사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는 100% 지분 소유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수행을 위해 다음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
 - (i)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 법정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된 회사를 의미함. 주주는 단체나 개인이 될 수 있음. 최소 주주 수는 3인 이상이며, 최대 주주 수의 제한은 없음. 주주는 지분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
 - (ii)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이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 사원수가 50인 이하임. 사원은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사원간 투자지분은 회사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함.
 - (iii) 합자회사(Partnership Company) : 2명 이상의 사원이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을 수행하며 무한책임사원 이외에 유한책임 사원도 둘 수 있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iv)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 개인소유 기업으로 무한 책임을 짐.

(v) 기타 투자법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투자형태

- 베트남에 기 설립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일 외국인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와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동 투자기업은 베트남법에 의해 법적 주체성을 갖고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즉시 활동이 가능함.

②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 합작투자회사

-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국내투자자와 합작으로 기업법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합작회사(Partnership Company),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등을 설립 할 수 있음.
- 합작투자 회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직후부터 법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음.

③ 경영협력계약(BCC)에 의한 회사

- 경영협력계약은 투자자간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날인된 문서에 의한 투자형태로, 별도의 회사설립 없이 각 투자자에게 책임과 사업결과의 배분 조건 등을 명시함.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기타 자원 개발에 관한 경영협력계약(BCC)은 관련법 및 투자법에 의거하여 시행
- BCC 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내에 운영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투자승인 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④ 자본출자, 지분매입, M&A형태 투자

- 기업법에 의거하여 경영참여를 위해 자본금 부담,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의 권리를 보유한 투자가는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 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음.
- 베트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베트남 기업에 대해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할 수가 없음.
- 베트남에서 기업 또는 기업의 지사를 합병, 인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저촉되지 말아야 함.
 - 기업법상 지분 매입, 인수 및 합병 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
 - 베트남내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1년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외국인투자가는 투자 승인기관에 투자승인서 발급 이전에 충분한 계획을 설명해야 함.
-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기업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상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⑤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형태의 외국인투자

- 외국인 투자 Share Holding Company는 기업법에 의거하여 구성, 설립된 회사를 의미함. 동사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외국인 발기 주주를 보유함. 동사는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직후 법적 정체성을 보유함.

⑥ 지사, 연락사무소

- 베트남에 설립된 경제주체는 본사 이외의 지역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권리가 있음. 해외지점 또는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외 투자 규정에 따름.

(2) 투자자의 권리

□ 투자 보장

- 투자자의 투자자본과 자산은 국유화 및 압류되지 않음.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함.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함.

□ 지적 재산권 보호

-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

□ 투자자의 의무 조항 완화

-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 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관련 이자
- 투자자본 및 투자종결 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개인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투자자의 합법 적인 개인 소득

□ 동일한 비용 적용

-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예 :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음.

□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

- 기존 법률 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음.
-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 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지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 실시
-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함.

□ 분쟁 해결

- 베트남 내 투자활동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만약 분쟁 당사자 중 한 측이 외국인투자자이거나 모두가 외국인투자자일 경우 다음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위원회
 - 외국 중재위원회
 - 국제 중재위원회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

라. 신투자법 시행에 따른 기업 재등록 절차

□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 시행에 따른 재등록

- 기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투자허가를 취득해 활동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등록을 안하는 경우

① 기업 권한

-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에 준한 투자 인센티브 수혜, 활동 기간 보장, 사업 분야의 영업 지속 및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함.

- 재등록 하지 않는 외국투자기업에서의 합작계약서 및 회사 정관 등 기타 서류는 전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의 적절한 조항으로 해석 될 수 있음.

② 기업 의무

- 기업법에 따라 회사구조를 재구성 해야 함. 기존 투자승인 조항에 더하여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의 기타 조항을 따라야 함

③ 회사조직 개편 필요

- 재등록을 거부한 외국투자기업은 투자법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에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회사구조를 개편해야 함.
- 상기 시한 이내에는 재등록 거부 기업이라도 정관에 따른 회사 형태(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④ 투자허가서 수정 필요

- 회사 영업활동 기간 중 재등록을 거부한 외국투자기업은 기업법 제 170조 2(b)항⁵⁾ 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경우 투자허가서(투자자

5) 제170조 : 신규 개정 기업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 ① 1999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합작회사는 사업자 등록 수속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 ② 본 법이 발효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본 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권리가 있다. a)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한다. 재등록은 본 법 발효 후 2년 안에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본 법에 따라 조직, 관리, 활동한다. b) 재등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은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분야와 기간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투자우대 혜택을 받는다.
- ③ 경영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자산을 비상환 양도하기로 약속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이선스)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시행령의 적절한 조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영업활동 분야 및 영업내용
- 영업기간
- 투자인 센터브
- 기업 분할, 기업합병, 기업통합

- 투자담당기관은 재등록 거부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 허가서(라이선스) 수정요청을 허락 할 수 있음. 투자 담당기관은 수정된 투자 허가서 첨부 없이 다음 조건 하에서 수정요청을 허락할 수 있음.

- 적정한 지역에 거래지점, 거래 사무소, 상점, 생산활동 없는 쇼룸 개설 및 설치
- 투자기업 본사가 위치한 중앙행정 관할지역 내 시 또는 성에서의 사무실 주소 변경, 또는 투자지역 변경
- 투자허가서 변경 권한은 투자등록의 일반조항에 따름.

⑤ 투자허가서 수정시 필요서류

<기본 필요서류>

- 기업의 법적 대표자 날인 투자허가 수정 신청서
- 기업 소유주 또는 기업 소유주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투자허가 수정 결정서
- 투자허가 발급일부터 투자허가 변경 신청일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

<투자허가의 추가 및 보완이 요구될 경우 필요서류>

- 상기 서류에 더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투자허가 주요 사안에 대해 신청기업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a) 자본 이전 관련 사안의 경우 : 자본 이전 동의서, 합작계약서, 협력계약서, 기업정관의 수정 또는 보완사항, 법적지위, 자본 이전 양수인의 재무상태 (외부인에 대한 자본 이전의 경우)
- (b)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점 설립의 경우 :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점 설립 내용(내용, 지점운영 규모, 투자자본, 자재소비 등), 설립지역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설립위치, 토지 임대 등에 대한 의견서, 생산제품이 제한적이고 제품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허가가 제공된 투자프로젝트에 연관된 정부부처의 의견서 등
- (c) 투자 금액 변경의 경우 : 보완된 경제기술설명서, 투자금액 조정을 보장하는 재정 조건들, 추가 소요 기계 및 설비 명단
-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3부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중 1부는 원본이어야 함. 투자승인 당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완비된 변경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변경내용을 통보해야 함.

(2)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① 등록대상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 시행령은 과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하기 외국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Joint Ventures Enterprises
 - 100% 외국투자법인
 - 2003년도 4월 15일자 시행령 번호 38/2003/ND-CP에 의거하여 Foreign Joint Stock Companies로 전환된 Joint Venture Enterprises 및 100% 외국인 투자법인
- 동 시행령은 과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투자 승인을 받았거나 신규 투자법에 따라 재등록을 완료한 협력계약에 적용됨.

② 재등록 시한 : 외국인 투자기업 재등록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

③ 재등록 허가 : 사안별로 심사, 행정당국에 의해 허가

④ 투자 인센티브 유지 : 투자승인을 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등록 기업은 투자 승인에 명시된 투자인센티브 수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⑤ 재등록기업 형태

- 본 시행령에 의거한 재등록 유형은 다음과 같음.
 - Joint Venture Enterprise 또는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기업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재등록을 해야 함.

【참 고】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재등록을 해야 하는지?

□ 재등록 제도의 문제점

- 투자법 및 기업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기존 기업들이 재등록을 할 수 있고, 재등록한 업체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권을 주식 지분 등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 문제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 조항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문제는 현재 약간의 지분과 사업권만 갖고도 만장일치라는 의결방법 때문에 전권을 행사하는 베트남측 합작 상대들이 재등록에 동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이 문제임.
- 결국 기존 진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작기업들은 여러가지로 유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법에 따라 재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 경우 실권을 잃게 되는 베트남 합작 상대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재등록을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기존 투자시한의 연장이 불가능하고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안되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합작사를 설득해 재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새 법에는 바로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1~2년 이상 유한회사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유한회사의 책임자는 반드시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고 있는 사람(permanent residence)이어야 한다는 조항(기업법 제46조)이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재등록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내용을 모두 공개해야만 하게 되어있어 외국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1명의 소유주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은 신규기업법에 의거하여 1명의 소유주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해야 함.
- 외국인 Joint Stock Company는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Joint Stock Company로 재등록 해야 함.
- 상기에서 명시된 유형의 재등록 직후 기업은 독자적으로 기업명, 지사, 대표 사무소, 법적 대표자 등을 개명할 수 있음.

⑥ 재등록시 필요서류

- 투자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 회사의 재등록 결정 증빙 서류
 - Joint Venture Enterprise의 경우 이사회 의결 내용
 -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소유주들의 재등록 결정사실 증빙서류
 - 외국인 투자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 주주 연합회의 재등록 결정 사실 증빙서
- 투자 허가서 및 수정된 투자 허가서(공증 필)

⑦ 재등록 절차

- 재등록을 희망하는 외국투자회사는 투자담당 기관에 동 시행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등록 서류의 정확성과 진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사업등록 기관 및 투자 담당기관은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재등록 대상자의 평가 및 투자허가서 발급에 대해 책임을 짐. 만약 투자허가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적절한 사유를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허가발급 거절 통지문에는 발급 거절 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 요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라. 외국인투자 사업의 형태

□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비즈니스 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 양측의 책임과 의무 및 생산물 분배는 계약에 의거 결정되며 조세의 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음. 즉 베트남측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측은 외국인투자 관계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함.
- 사업협력계약은 MPI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이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MPI의 허가과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양 당사자가 계약의 기한연장에 동의했을 때에는 MPI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이전에도 사업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종료 또는 취소의 경우 사후처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처리비용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세금, 차입금 등의 채무처리가 우선 되어야 함.

□ 합작투자(Joint Venture Enterprises)

- 합작투자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법인(Joint Venture Enterprise)을 설립하는 것으로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합작기업의 위험부담 및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의 출자지분에 따름.
- 외국측 출자액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액의 최고한도는 없음. 외국측의 법정자본금 출자형태는 외화, 공장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기계/공구, 특허권, 기술로 한정되어 있고 베트남측은 베트남화와 외화, 건설, 토지사용권 등임.
- 베트남측으로서는 출자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지의 사용권을 현물 출자함. 합작계약 전에 토지사용권의 출자가액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측 합작파트너는 대부분이 국영기업(중앙정부 및 지역인민위원회, 공산당산하 기업)으로 사회주의 기업경영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비능률적, 비생산적, 비합리적 측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100% 단독투자기업(Enterprises with 100% Foreign Capital)

-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의 소유, 경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임. MPI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기업의 정관을 등록하면 기업이 설립됨.
-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자의 외국에서의 법적 자격 및 재무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서
- MPI에 신청하여 중자를 할 수 있으며 감자는 인정되지 않음. 기업 소유자가 비거주자 일 때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이 대리인을 MPI에 등록할 수 있음.

□ BOT 계약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양도하는 방식임.
- BOT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 개발, 병원건설, 리조트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임.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시, 성 인민위원회에서는 BOT 계약 유치사업 목록을 작성·발표하고 있는데 BOT 사업의 신청창구는 중앙정부의 경우 MPI, 지방의 경우 각 인민위원회임.

<표 7>

투자 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경영협력 계약(BCC)	· 과도한 초기 투자 불필요 ·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 (이익분배, 경영방식 등) · 베트남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불필요 ·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	·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
합작투자	·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망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의 경감 가능 · 베트남측 파트너의 힘을 빌어, 내수시장 진입 용이 ·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	· 베트남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 베트남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 받게 되는 경우 발생 · 기술유출 가능성 · 토지 등 베트남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 평가애로 ·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
단독투자	· 외국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 · 투자이익 독점 가능 · 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	·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약상존(합작형태만 허용) · 초기 투자부담이 큼 · 정부기관, 베트남기업의 인맥구축 애로

자료 : www.kotra.or.kr

- BOT 방식에 의한 진출절차는 ① 정부의 사전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 ② 낙찰되면 정부가 정한 BOT 실시기관과 계약체결 및 베트남내 법인 설립 ③ 토지사용권 등 각종 부대계약 체결 등의 순임.

- 베트남 정부는 BOT 투자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BOT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토지임차료는 무료로 하며 이윤세는 10%로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처음 4년간은 면제되고 다음 4년간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최고 우대세율이 적용됨.
- BOT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은 것은 BOT 계약 사업의 경우 대부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토지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기 때문임.
- 특히 투자자금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용요금(전기, 수도요금 등)의 설정에 있어 투자가의 재량권이 너무 적은데다 정부의 BOT 사업에 대한 보증조건도 불명확하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대표 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 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함.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됨.

마. 투자우대 및 규제 조치

- 대베트남 투자는 투자 우대 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 금지분야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속하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함.

(1) 투자 우대 분야

□ 특별 투자 우대분야

-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 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 농림수산물 채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 식수 및 조림
 -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 원양 어업
-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지속적으로 5,000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승인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 교육 및 훈련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 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해난 구호 서비스
-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 일반 투자장려분야

-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 비철 금속, 제강
-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 식품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 코크스, 황성탄 생산
-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제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 전자 제품의 생산
 -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판매 (灌溉) 장비의 생산
 -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 －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 약용 식물의 재배
 -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류의 생산
 -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제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제배, 보호 기술 전수
 -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 －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 유류 오염 방지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 －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 －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가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 국립 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 전통 분야 발전
 -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업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투자우대 지역에서 공중 전화 연결 센터 개설
 -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 어린이용 완구 생산

-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2)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법인세

- 외국인투자 기업의 조세 체계는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음. 표준 세율은 28%(국내외 기업 모두 적용)인데, 외자기업은 20%, 15%, 10%의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산업공단법’에 따라, 수출가공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수출가공공단법’에 따라 더욱 유리한 세제혜택이 주어짐.

□ 수출가공구에 대한 우대 조치

- 수출가공구는 제품수출 및 생산과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가공구 내에 입주하는 모든 투자조직 및 개인은 수출물품의 제조, 하청 또는 조립생산 뿐만 아니라 수송, 하역, 수리, 보험 및 은행 등의 서비스업종도 운영할 수 있음.

<표 8>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우대세율표

법인세율		감면기간	투자분야	공업단지	
				산업공단	수출공단
표준세율 (28%)			호텔, 금융, 보험, 유통, 서비스업		
우 대 세 율	우대 세율 (I) *20% 적용 ^{주1)}	흑자전환후 1년간 면세, 이후 2년간 50% 경감	표준기업소특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대세율 II, III 어느 것에 도 속하지 않는 제조업	· 서비스업 · 제품의 50% 미 만 수출 (제조업)	
	우대 세율 (II) *15% 적용 ^{주2)}	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일반 투자장려 투자 · 투자장려지역 투자 · 투자기간 만료후 베트남정부에 자신이 무상 이전되는 사업 · 산업공단 입주업체로 제품 50% 이상 수출 기업 · 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	제품의 50% 이상, 80% 미만 수출 (제조업)	모든 서비스업
	우대 세율 (III) *10% 적용 ^{주3)}	흑자전환후 4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우대세율(II)의 요건중 2개 충족시 · 특별 투자장려 분야 · 공업단지 인프라 개발기업 및 수출가공구내 기업 · 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 분야	제품의 80% 이상 수출 (제조업)	모든 제조업

주 1)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허가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실효되며 28% 표준세율로 환원됨.

2) 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실효

3) 생산 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후 실효

4) 생산 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후 실효

자료 : www.kotra.or.kr

- 수출가공구는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운영되는 지역으로서 수출입시 관세가 면제되나 국내 시장간의 상품교환은 국가간 교역으로 간주하여 수출입세를 부과함. 수출가공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베트남 정부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2001년 3월, 소프트웨어와 IT산업 전담 산업단지가 호치민시 인근 Quang Trung에 지정됨. 입주비, 인터넷 사용료, 개발보조금 등에서 특혜가 주어짐.

□ 산업별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 상품을 수출하거나 시행령에 명시된 미개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첨단기술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음.
- 2001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조치를 발표함.
 - 외국인투자 IT산업에 대해서는 4년간의 법인세 면제, 향후 4년간 5%, 이후 10%의 법인소득세 적용.
 -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30%이상 베트남 자원 사용, 생산품의 30% 이상 수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외국인투자 규제 조치

□ 투자제한 분야(조건부 투자허가)

- 라디오, TV 방송
-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어로 활동
- 담배 제조
- 부동산 경영업
-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 교육, 훈련 분야
- 병원 및 진료 시설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
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
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 인간 복제 실험

－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 국제 협정에 의해 생산이 금지된 화학 물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 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
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
젝트

□ 투자허가시 규제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투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섬유류 및 신발생산과 호텔, 사무용실 빌딩, 아파트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허가 지침을 발표하였음.

① 섬유류 및 신발류 생산부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

- 합작투자와 사업협력계약 기업은 생산량의 80%, 외국단독투자기업은 90% 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또 투자유형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함.
- 도입하는 중고기계 및 설비는 신품과 비교 8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 단, 운송장비는 신제품이어야 함.
- 부지 내 거주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을 베트남 측 투자선, 외국 측 또는 설립법인 누가 지급하든 법정자본금으로 인정하나 베트남 측 투자선이 출자한 토지사용권과 정부에 내는 토지임차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호텔, 사무용빌딩, 아파트 건설 부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

- 호텔은 3스타급 이상의 건축에 한함.
- 합작호텔은 외국의 호텔경영회사에 경영을 위임할 수 있으나 상표 사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 경영 서비스료가 매출액의 3% 또는 세전수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영위임기간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 인민위원회 토지사용면적 및 임차료에 관한 추천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은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환경규제

-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설립 신청서 중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에 환경보호대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의 설립허가서는 그 영업의 본거지가 있는 현 내지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발급함으로써, 이들 지방인민위원회가 기업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평가하게 됨. 지방 인민위원회는 환경보호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허가 불허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음.
- 토지법에서는 해변에 있는 농지, 임야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므로 토지사용자에게 특별히 환경보호의무를 부과하며 (토지법 제48조), 시내에 있는 농지, 임야는 환경 및 도시경관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베트남 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발전단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시행을 보류중임. 그러나공단입주기업 선정시 피혁산업, 염색산업 등 공해관련 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베트남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2. 외국인투자여건

가.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

(1) 수출입 허가

- 외국기업은 수출입허가를 받은 베트남 기업만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음. 특정기업이 특정 품목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수입은 수입관세, 수입수량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으로 규제수준이 상당히 높음.
-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 중고소비재, 무기 및 탄약류, 중독 약품, 유해 화학물, 담배 등.

(2) 관세제도

□ 개 요

- 외국기업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수출입관세가 부과되나 합작기업이나 BCC 사업을 위해 자본으로 출자되는 기계장비, 설비, 부속품, 사업용 설비 등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 부속품 등 기타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그러나 이들이 베트남 국내 시장으로 양도·판매될 때는 관세 및 매출세가 부과됨.

□ 부과대상

- 정부의 허가를 얻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품질, 성격,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종가세임.
- 수출품은 FOB가격, 수입품은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가격은 베트남화를 기준으로 함.

□ 관세의 면제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인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 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적인 수출,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 되는 물자, 단 EPZ가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

□ 관세의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 장려가 필요한 경우 관세를 환급함.
-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한 베트남은 2006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에 따라 1,600개 품목에 대해 0~5%까지 관세를 인하하여야 함.
- 2001년 베트남 정부는 2006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할 6,130개의 품목을 발표하였음. 몇몇 소비재와 과일류, 기계류는 현행 25~50%의 관세율에서 20%이하로 조정되었으며, 향후 5% 이

내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되었을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음.

(3) 외환관리제도

□ 외환통제

- 1994년 10월 이후 외국 환의 거래가 외국환은행간 시장(foreign currency interbank market)을 통해 허용됨.
- 정부는 전일의 은행간 거래 환율을 평균하여 당일의 공식 환율을 고시함. 이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dong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정부는 또한 지역 경제의 ‘달러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dong을 달러로 교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반드시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 2001년 1월 발표된 Decree 05는 위와 같은 외환거래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한 외화매입이 허용되나, 외환수익의 절반을 dong으로 환원해야함.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무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 은행과 외국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에 현지통화나 외화로 구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예치금을 현지 통화로 교환할 수는 있으나 현지통화 예치금을 외화로 교환할 수 없음.

□ 국외송금

- 베트남으로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베트남에 송금된 외화는 dong화로 환전하거나 외화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
- 합작경영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 급여 및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화로 국외송금할 수 있음.
- 모든 송금은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의 계좌를 통해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청산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투자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나. 금융제도

□ 개요 및 금융기관 현황

- 베트남은 1988년부터 재정개혁과 더불어 금융개혁을 착수하였으나 아직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금융개혁 이전 베트남의 금융제도는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특히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금융정책은 주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적정 자금소요량을 지원해주는 신용계획(Credit Plan)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음.

- 1988년 7월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국영전문은행의 개편, 지주은행(Share Holding Banks)의 설립허가, 일반상업은행의 외환업무 취급허용 등임.
- 베트남의 은행산업은 4대 국영은행이 총자산의 80% 차지하는 등 국영은행 중심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제도 금융권 이외의 부문에서 상당한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은행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임.
- 반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며, 낮은 국내 저축률과 단기 위주의 예금 관행, 집단소유제 등으로 담보권 행사가 어려운 법률구조 등 성장의 장애 요인들도 상존함.

□ 중앙은행

- 1988년 이전까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 SBV)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정부가 입안하는 생산 물류계획에 따라 통화관리만을 해오는 정부의 금고역할에 치중하여 왔으며, 또한 상업금융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일원적 은행제도(One-tier Banking System)가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1988년 7월 최초의 금융개혁 조치에 따른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은행적 기능이 신규로 설립된 농업개발은행(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 이후 농업은행으로 개칭)과 상공은행(Bank for Commerce and Industry : 이후 공상은행으로 개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었음.

- 또한 1990년 10월 시행된 신은행법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 추가되어 금융부문의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4대 국영 상업은행

- 대외무역은행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 Vietcombank): 1963년 설립되었으며 외환업무 전담, 제조 및 무역업체 지원
- 농업은행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1988년 설립, 농촌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공급
- 공상은행 (Industrial & Commerce Bank of Vietnam : Incombank): 베트남의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외로부터 자금조달 및 공급, 국내외 거래와 관련된 은행간 결제업무, 공업/운수통신/상업금융업무
- 투자개발은행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 : BIDV): 1953년 설립되었으며 공공투자를 위해 국영기업에 중장기 자금 지원, 국가사업의 중장기 금융 제공

□ 단기금융

- 1999년 8월 이후 단기외국금융은 외국인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이상의 승인이나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단기대출을 받을 경우, 단기대출이 채무자의 총투자자본 증가를 야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그러나 건축분야에 있

어 합법한 자본이 모두 소요되고 모든 투자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예외임.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운용자본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 외국 대출을 받는 경우는 동 대출이 총 투자 자본의 증가로 간주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외국은행이 행하는 대부분의 대출은 공산품과 농산물을 위한 단기 무역 금융인 경우가 많음.

□ 중장기 금융

- 달러화 표시 중장기 금융은 중앙은행이 고시한 대출 요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대출 이전에 중앙은행에 등록을 요함. 그 밖의 다른 통화로 중장기대출을 할 경우에는 집행전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함

□ 리스 금융

- 2001년 5월 Decree 16과 9월 Circular 08의 제정으로 금융리스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음. 이 법률은 금융리스사의 활동범위를 대폭 늘려, 1년 이상의 예치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CP를 발행하거나 국내외 은행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음.
- 또한 제3자의 개입 없이 기계와 설비를 자체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Decree 16은 기계류와 설비, 운송수단 및 기타 동산의 리스를 포함하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금융리스에 쓰이는 자산은 2002년 2월 하노이시에 개설된 보증계약 등록센터(Centre of Guaranteed Transactions)에 등록하여야 함.

- 국내 금융리스사는 최소 등록 자본 330만 달러를 현금 및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금융사는 최소 500만 달러의 등록자본이 필요함.

□ 주식시장

- 2003년 2월 현재 21개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 총액은 약 1억 달러로 GDP의 0.3% 수준임.
- 외국인 지분소유는 일반기업 3%, 외국기관 7%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 기업의 총 외국인 지분소유는 20%를 넘지 못함.
-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1년 이상, 경영에 참여할 때에는 3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외국인참여의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다. 조세 제도

(1) 법인소득세

□ 개 요

- 2004년 개정된 베트남 법인세법은 신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과 우대 세율에 관한 내용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음,
-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됨.(<표 8> 참조)

－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은 아래의 세금과 관련됨.

- 법인세
- 원천징수세
- 자본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개인소득세
- 종업원에 대한 사회안전과 보험세

① 거주자

- － 투자인가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베트남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외국인파트너도 납세의무자가 됨.
-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도 법인세 제도에 도입되었으나 법인세법상 지위는 투자 승인 과정에서 결정되며 거주자여부는 외환통제 및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련됨.

② 과세대상 소득

- － 과세대상 소득 = 총 수입 - 총 공제가능 비용 - 기타 과세가능소득 - 이월결손금(5년)
- 과세소득이라 함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총수입이라 함은 판매소득,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총수입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과 자본거래 수입도 포함되며

이월결손금은 5년까지 인정됨.

- 재고평가 : 현재는 재고평가나 재고흐름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세무처리는 회계처리를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은 베트남회계준칙(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을 따름.
- 양도차익 : 양도차익도 법인세로 과세됨. 외국인투자자의 베트남 면허기업(Vietnam-licensed enterprise)에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28%의 표준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됨.
- 회사 간 배당 : 회사 간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외국소득 : 베트남 원천소득만이 베트남투자업체의 장부에 기록되기 쉬우나, 베트남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베트남 세법체계 하에서 외국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외국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됨.

③ 비용

- 과세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제 가능함. 예를 들면 제조원가, 임금과 급여, 판매관리비, 사업에 이용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 보험료, 지급이자, 전기이월손실, 기술자료 이용권 획득비용, 특허권(일정 제한이 있음) 및 총 지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비용(보너스, 광고비용, 접대비 등) 등임.

- (a) 감가상각 및 감모 : 2004년 1월부터 세무상 상각은 회계상 상각과 달라졌는데, 세무상 상각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은 공제되지 않음. 동 규정은 무형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대 및 최소 내용연수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재 허용 가능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빌딩(2~4%), 사무실 비품(10~20%), 자동차(10~16.66%), 기계장치(3.33~6.66%)

(b) 순영업손실 : 손실은 5년간 이월될 수 있으나 소급 공제(Carryback)는 허용되지 않음.

(c) 외국관계회사에의 지급 : 외국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및 용역대가의 공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이전관련 규정은 로열티 지급률 및 다른 기술이전대가에 대해 일정제한을 두고 있음.

④ 조세감면

-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특정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됨.

⑤ 이중과세방지협정

- 베트남은 1992. 4. 13. 호주와 처음으로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이래 태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및 한국 등 현재까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38여 개국임.

⑥ 지점 및 자회사

- 외국법인의 지점은 베트남에서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나 많은 제한이 있으며 적용세율은 28%임.

⑦ 원천세

- (a) 사용료 등 : 지적재산에 대한 지급으로 일컬어 지는 것들(베트남 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또는 기술적 비밀)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 임.
- (b) 이자 : 1999년 1월에 이자에 대한 10% 원천징수가 도입되었고 1998.12.31 이후에 서명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나 특정 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해외로부터의 차입(Offshore Loan)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어 동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음.
- (c)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ors)
-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베트남 측 일방이 베트남 내에서 허가된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인과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외국계약자가 베트남 회계 시스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당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음.
 - 회계장부가 적합할 경우 외국계약자는 법인세를 실질소득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 베트남 회계제도 등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는 계약일방에 의해 과세대상 총 거래액의 인정비율로 원천 징수되

는데, 이행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율이 정해져 있음.

- 법인세의 경우, 원천 징수율이 1~10%이고, 부가가치세는 실효 원천 징수율이 또한 1~10%이다. 계약일방에 의해 원천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그 일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됨.

<표 9> 부가가치세율 및 법인세율 현황

사업 활동	실효 부가가치세율	인정 법인세율
재화의 거래 (물, 음식, 식료품, 석유 및 화학물질 포함)	1	1
용역	5	5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 없는 설치, 탐사, 의장, 감독	5	2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을 수반한 설치	3	2
기타 제조 및 운송	2.5 또는 1.25	2
이자	면제	10
로열티	면제	10

- 한 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일부에 대한 하청을 줄 경우, 동 하청계약자가 하청계약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과세대상 총 거래액은 하청계약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음.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할 의무는 계약의 베트남 측 일방에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조세조약상의 감면이 적용되기도 함.

⑧ 국경간 리스

- 베트남 측 임차인(Lessee)은 해외의 임대인(Lessor)에 리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 징수율은 10%로, 이는 인정법인세율 5% 및 부가가치세 5%로 구성됨.

⑨ 법인세 납부

(a) 실질과세의 경우

- 법인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매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하여 매분기가 종료된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제출되는 잠정 신고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서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협력계약인 경우 법인세는 2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잔여기간의 반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에 세금을 정산함.
- 세금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0.1%/일의 지연료를 부과하며 자본금의 25%에 달할 때까지 세후이익의 5%를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b) 인정과세의 경우

- 기성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발주처가 납부하는데,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동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2) 개인소득세

□ 거주자 판정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25%의 고정세율로 과세됨.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목적상 영구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10%에서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2004. 7. 1.이전의 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에 30일 미만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동면제규정은 2004. 7. 1.이후에 삭제됨.

□ 과세연도

- 정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소득세 납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매월 한 번씩하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연도 말에 납세자는 확정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소득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과세가 되며 비정규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득신고, 세금계산, 원천징수를 위하여 세무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과세대상소득의 유형

① 정규소득

-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 이사회에 참가에 따른 소득수취분
- 작가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
- 수수료와 중개용역, 스포츠 활동에 의한 용역, 디자인 용역, 컨설팅
트 용역 등에 속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소득

② 비정규소득

- 외국기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송된 현금 및 현물 (발송이유를 불문). 단, 해외거주자로부터 선물이나 기부 물품을 현물로 받은 경우 2004년부터 비정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기술이전,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로열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 복권당첨금

③ 스톡옵션

-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소득은 정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되며 과세되는 금액은 행사일의 시장 가격과 행사가격과의 차이 분을 적용함.

④ 비과세대상소득

- 업무추진비, 여비, 특근비, 유해·위험수당, 벽지수당, 발명 및 창작 등에 대한 상금

- 퇴직보조금, 휴직보조금
- 소득세를 납부한 자영업주의 이자소득

⑤ 소득공제

- 가수, 배우, 축구선수, 프로선수 등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25%를 공제해 줌.

⑥ 외국세액공제

- 베트남 시민, 베트남 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이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세 율

① 정규소득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 및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함.

<표 10> 외국인과 해외 근무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소득금액	세율(%)	초과누진세액	초과누진세율
0 ~ 8,000,000	0%	0	0%
8,000,001 ~ 20,000,000	10%	1,200,000	6%
20,000,001 ~ 50,000,000	20%	7,200,000	14%
50,000,001 ~ 80,000,000	30%	16,200,000	20%
80,000,001 이상	40%		

② 비정규소득

- 지급건당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 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며,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됨.

③ 독립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

<표 11> 베트남인과 베트남내 거주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소득금액	세율(%)	초과누진세액	초과누진세율
0 ~ 5,000,000	0%	0	0%
5,000,001 ~ 15,000,000	10%	1,000,000	7%
15,000,001 ~ 25,000,000	20%	3,000,000	12%
25,000,001 ~ 40,000,000	30%	7,500,000	19%
40,000,001 이상	40%		

④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 사회보장세는 현지인만 해당되며, 매월 국내 및 외국법인은 국내 베트남종업원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함.
- 의료보험 납부율은 고용인 2%, 피고용인 1% 등임.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개 요

- 과거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구분 없이 매출금액 전체에 일정비율이 부과되었던 매출세는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으며, 표준세율은 10%이고 이외에 0%(수출품), 5%(의료, 식품, 석탄 등 필수품) 등의 세율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까지의 거래세(Turnover tax)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가 납세의무자임.
- 생산, 통상 및 용역의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 활동 및 수입재화의 관세포함 가격 등에 적용됨.

□ 부가세 면제 품목

- 미가공 농산물,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
- 교육 및 직업훈련, 기술이전
- 신용서비스, 건강관련 서비스
- 베트남 국외 국제운송과 관련 직접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
- 미제련 상태로 베트남 국외로 수출되는 몇몇 천연자원 제품등

□ 세 율

- 재화와 용역의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0%, 5% 및 10%(표준율)이며 광범위한 감면이 적용되고 있음.

① 제조·가공 재화 및 용역의 수출 : 0%

- 수출재화(수출가공공단으로의 판매 포함) 또는 직접 수출업자를 위해 가공되는 재화, 수출 소프트웨어 용역, 노동수출 용역 등

② 농업, 의료장비,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 5%

- 필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즉, 물, 비료생산, 학습기구, 종이, 아동용 도서, 식료품, 의약품 및 의학 장비 등

③ 대부분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 10%

- 표준율로서 0%, 5%, 면제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다른 활동에 적용

<표 12> 부가가치세율

부문	세율(%)
상업	10%
서비스업	50%
자재공급을 제외한 설비 및 건설업	50%
자재공급을 포함한 설비 및 건설업	30%

□ 신고 및 납부기한

- 납세자는 익월 10일까지 월별 신고하고 신고서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행함.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말에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함. 연간 부가가치세 확정 및 정산은 익년 60일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납부방법

-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액공제법(tax deduction method)은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공제법(direct calculation method)은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됨.

(4) 특별판매세

□ 납세의무자

- 특별 판매세(special sales tax)는 알코올, 수입 자동차, 석유, 담배, 카드,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잭팟, 골프장, 도박오락 시설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과되며, 재화의 경우 생산 또는 수입단계에서만 부과됨.

□ 세 율

- 특별판매세율은 10%~80%로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판매세 과세대상인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됨. 잠정적인 특별판매세 감면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자동차조립업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5) 인지세

- 인지세(stamp tax)는 주택, 차량, 모터사이클, 보트, 선박 등의 자산 소유권 이전에 납부하며 과표는 시가로 하고, 세율은 5%임.

(6) 천연자원개발세

- 천연자원개발세(natural resource tax)는 석유 및 가스, 기타 광물, 삼림, 수산업, 특히 천연수와 같은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기업 등에게 부과되며 세율은 사업 형태에 따라 결정됨.

<표 13> 천연자원개발세율

사업의 형태	세율(%)
철광산	2 ~ 5
비철광산	1 ~ 8
금	2 ~ 3
원유	6 ~ 25
가스	0 ~ 10
산림	5 ~ 40
수산물	2 ~ 10
천연가스	0 ~ 4
기타	10 ~ 20

라. 노동 및 기타

(1) 노동문제

□ 개 요

- 노동가능 인구가 연평균 2.5%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증가는 베트남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010년에는 노동가능인구가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 관련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은 1994년 제정 노동법(Labor Code: 1995년 발효)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15세 미만의 베트남인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베트남인을 고용할 때에는 우선 고용알선 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고용알선기관이 15일 이내에 적절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 기업이 직접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 모든 노동조합은 베트남 노동연합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의 산하에 있음.
- 노동법은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전에 중재절차를 거칠 것과 파업 3일전 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공익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파업이 금지되며, 전기, 수도, 체신 및 통신, 대중교통, 은행, 해상 및 항공 운송, 원유 추출, 연료, 국방 및 안보 분야 등도 이에 해당됨.
- 고용계약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서면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노동계약서에는 직무규율, 근무지, 근무시간, 휴일, 임금, 계약서의 유효기간 등을 명기해야 함.

□ 임 금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하노이 및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월 45달러, Haiphong, Ba Ria-Vung Tau, Danang, Binh Duong, Hue 지역은 월 40달러, 기타지역은 월 35달러로 책정되어 있음

-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70%만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전문직은 60일, 기타 직종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2000년 10월 Decision 1037은 특정분야의 최저임금액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senior engineer 1000달러, ordinary engineer 500달러, 통역 400달러, technician 350달러, 관리직 200달러가 최저임금액임. 이는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을 제외한 금액임.
- 1인당 인건비에는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인 임금총액의 15%와 노동조합비의 회사부담분인 임금총액의 2%가 추가됨. 도심지 공장을 제외한 노동집약형 공장에서는 점심을 회사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초과근무수당은 통상근무일에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 200%, 야근 수당은 130% 또는 135%임.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원칙적으로 주 48시간, 일 8시간 범위내
 - 고용주는 노동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노동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함.
- 휴식시간
 - 8시간 연속작업 근로자는 작업중 최소한 30분 동안 휴식
 - 야간근무자는 작업중 최소한 45분간 휴식
 - 교대근무자는 다음 작업 시작전까지 12시간 이상 휴식

－ 유급휴가

- 양력설, 음력설, 전승일, 국제노동절,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 상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익일 휴무
-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정상 근무상황 : 연 12일
 - 힘들고 유독한 작업장 또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근로자, 18세 이하 근로자 : 연 14일
 - 작업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경우 : 연 16일
 - 휴가를 위한 여행시간은 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함.

□ 근로 계약의 종료

-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거나,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 20일 혹은 월 7일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간의 병치료, 자연재 해로 인한 업무 축소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음.
- －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한 해고통지는 무기한 고용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45일 전에, 1~3년 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30일 전에, 1년 이하 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3일전에 해야 함.
- － 업무축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집행부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기관에 통지하여 30일후 해고할 수 있음. 근로자는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처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인을 고용해야 하나, 적합한 노동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 1999년 12월 발효되고 2000년 3월 재확인된 법률(Circular 08/2000/TT-BLDTB)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요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3년 제한이 철폐되고, 노동허가서의 발급여부도 45일에서 단축된 15일로 규정됨.

(2) 투자 지역

□ 투자 지역의 선정

- 투자지역의 올바른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노동집약형 분야의 가공수출 방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투자에서는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리한 투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발굴이 필수적임.
- 현지의 일반적인 진출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출지역을 물색하는 것은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입지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남부와 북부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 등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회문화적 풍토의 영향을 받아

남부인들은 개방적 낙천적, 북부인들은 인내심과 조직 순응력이 강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지역 선정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은 진출희망지로 남부지역 보다 북부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 베트남 내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면 시장규모가 큰 호치민 인근의 남부지역이 단연 유리함. 그러나 노동집약적 부문의 수출 지향적인 투자라면 토지임차료와 인건비가 저렴할뿐더러 노무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북부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장입지

- 투자입지의 유형은 크게 대별하여 공업단지와 일반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투자분야에 따라 각 입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임.
- 베트남에는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공업단지가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입주시에는 법인세 등 우대조치가 주어지고 있음.
- 공단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 입주와 기업운영에 편리한 점이 많으나,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법인세 우대혜택 등에 있어 공단과 별반 차이가 없고 지방인민

위원회와의 협상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공단입주시와 마찬가지로 수입관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음.

- 현재 우리 진출기업의 대다수는 노동집약형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측면에서 공단보다는 일반지역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참 고】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 EPZ)

□ 개 요

- 수출가공구(Special Export Zone : EPZ)는 수출품의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한 곳임.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보세가공지역이며 수출가공구 기업이란 수출가공구내에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업을 말함.
- 수출가공구 기업에게는 수출의무가 부과되지만 EPZ내로의 원료, 기계, 장비 등의 반입에는 수입관세가 없으며 수출품 역시 수출세가 면제됨. E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 입주조건

- 수출가공구내에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 사업협력계약 등의 어느 경우라도 입주할 수 있으나 가공구내의 법인격 획득이 필요함.
- 수출가공구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구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특혜조건

- 법인세 감면
 - 제 조 업 : 이익실현 첫 해부터 4년간 면세후 10% 부과
 - 서비스업 : 이익실현 첫 해부터 2년간 면세후 15% 부과
- EPZ안에서 사회기간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업체는 제세공과금을 영업허가서 조건에 따라 납부
-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시 수입세, 수출세 부과(무역으로 간주)



1. 정보통신(ICT)산업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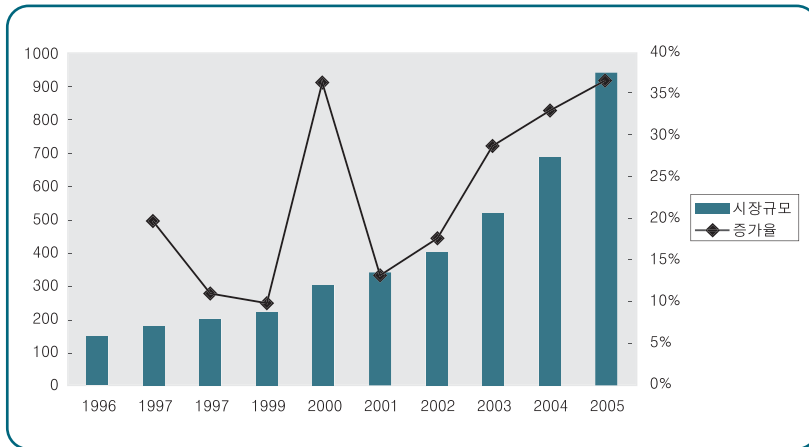
가. 정보통신산업 시장 규모

-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베트남도 자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통신교환기는 100%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되었으며 통신시스템도 위성, 광섬유, 광역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 국토와 해외로 연결되어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전략 추진으로 현대적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보급률도 지역기준 98%에 이르고 있음.
- 2005년말 기준 베트남 정보통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9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동 기간중 세계 정보통신시장 성장률이 5%임을 감안할 때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6) 여기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를 같은 의미로 사용함.

<그림 2>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시장규모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5

-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하드웨어 제품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은 크지 않은 실정임.

<표 14>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규모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
소프트웨어	50	60	75	105	140	175
하드웨어	250	280	325	410	545	760
소 계	300	340	400	515	685	935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5.

나.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현황

(1) 통신산업

(가) 유선 통신

□ 개 요

- 베트남의 유선통신 라인은 2005년 말 기준 약 500만 회선 규모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선통신 보급률은 여전히 6%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베트남이 지리적으로 동서로는 폭이 좁으나 남북으로는 약 1,650km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유선통신보다 무선통신 산업이 더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 수에 있어서도 유선통신이 무선통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에는 5개의 유선통신 사업자가 있으나 베트남우정통신공사(VNPT)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표 15> 베트남 유선통신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천 라인,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유선라인수	2,453	2,453	3,050	3,929	4,519	4,970
증 가 율	20.7	0	19.9	28.8	15.0	10.0
유선 보급률	32	32	38	48	5.5	5.9

자료 : WMRC, Global Insight Report: Vietnam(Telecoms), 2006.5.22

□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

① 베트남우정통신 공사(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VNPT)

-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VNPT는 1995년 7월 베트남우정통신청(Department General Posts and Telecommunication: DGPT)에서 분리되었으며 43개의 산하 기관과 61개의 지방통신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베트남 제1위의 통신 사업자임.
- 주요 사업 분야는 우편 및 전기통신 서비스, 우편 및 전기통신 시설의 조사, 설계 및 건설, 관련 장비의 수입·수출 및 공급, 통신 관련 컨설팅 제공 등임.

② Viettel Corporation

- 베트남 정부는 국방성 산하의 METC⁷⁾사에 대해 통신사업을 허가하여 제2의 통신 사업자를 탄생시켰으며 동사가 이후 Viettel Corporation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주요 사업 분야는 공중교환전화(PSTN)⁸⁾, 무선 전화, 무선 호출, 우편 등이며, 2000년 10월에는 베트남 최초로 장거리 통신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③ Saigon Postel(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PT)

- 호치민시가 국영기업, 경찰, 군, 민간기업 등의 11개 주주와 공동으로

7) Militar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8)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설립하였으며, 1995년 8월 국내 및 국제통신 허가를 취득한 제3의 통신사업자임.

- 2000년 9월에는 한국의 합작법인 SLD Telecom과 경영협력계약 (BCC)을 체결하여 CDMA 방식의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사업분야는 전기 및 통신망의 설계, 시설, 운영 및 관련 장비의 수출, 제조 등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무선 통신

□ 개 요

- 1986년에 이르러서야 경제 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된 베트남은 국내 유선통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소요 비용으로 인해 무선통신 인프라가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으며, 그 결과 2005년 말 기준 유선통신 가입 건수는 약 500만 건(회선)인데 반해 무선통신 가입건수는 1,250만에 이르고 있음.

<표 16> 베트남 무선통신 관련 주요 지표 추이

(단위 : 천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가입 건수	5,447	6,473	6,464	7,016	8,421	12,496
증 가 율	43.9	18.8	-0.1	8.5	20.0	48.4
무선 보급률	1.0	1.6	2.4	3.4	5.2	10.5

자료 : WMRC, Global Insight Report: Vietnam(Telecoms), 2006.5.22

-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3%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무선통신 서비스 통신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베트남에는 2세대 통신시스템인 2G 및 2.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도입이 초기 단계임. 베트남 내 이동통신 사용자의 대부분이 통화 및 메시지 송수신만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사업자들이 3세대 통신사업 도입을 주저하고 있음.
- 그러나 MobileFone사 등 일부 사업자는 2006년 중 화상 송수신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3세대 통신서비스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우정통신부는 3세대 통신시스템인 3G IMT2000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총 이동통신 사용자 수가 2,240만 명에 이르고 이중 33%인 740만 명이 3세대 통신사용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요 무선통신 사업자

① MobiFone

- VNPT 산하의 VMS⁹⁾사와 스웨덴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사의 자회사인 Comvik International Vietnam간의 경영 협력계약(BCC)에 의해 1993년 설립되었으며 GSM¹⁰⁾ 방식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Vinaphone사와 함께 베트남 무선통신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약 3억 5,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9) Vietnam Mobile Telecom Services Company

10)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GSM)으로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기관인 ETSI에서 제정한 디지털 셀룰러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임. 1982년에 당시 유럽전기통신표준기관인 CEPT 산하에 설치된 무선통신 기술위원회(Group Special Mobile)의 이름을 따서 GSM시스템이라고 함.

<표 17> 베트남 통신 관련 기업 현황

구 분	관련 기업 리스트
유선전화사업자 (5개사)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VNPT) - Vietnam Power Telecoms(VPT) - Viettel Corporation - 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rporation(SPT) - Hanoi Telecom Company(Hanoi Telecom)
무선전화사업자 (5개사)	- Vinaphone - Viettel Corporation - S-Fone - Mobifone - Callink
국제전화사업자 (3개사)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VNPT) - Vietnam Power Telecoms(VPT) - Viettel Corporation
인터넷폰(VoIP) 사업자(6개사)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VNPT) - Vietnam Power Telecoms(VPT) - Viettel Corporation - 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rporation(SPT) - Hanoi Telecom Company(Hanoi Telecom) - Vietnam Maritime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s Company(MSHIPEL)
인터넷서비스(ISPs) 사업자(15개사)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VNPT) - The Corporation for 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ogy(FPT) - Viettel Corporation - 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rporation(SPT) - Hanoi Telecom Company(Hanoi Telecom) - Internet Service Stock Company(OIC) - TIE Trade Import Export Company(TIENET) - Saigontourist - Vshipel - Quality Technology Network Corporation(QTNET) - Thanh Tam Stock Company - Netnam Company(NETNAM) - Hopthanh Company(HTNET) - SAIGONTEL CORP - Saigon tourist Corp
인터넷중계(XPs) 사업자(6개사)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VNPT) - The Corporation for 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ogy(FPT) - Viettel Corporation - 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rporation(SPT) - Hanoi Telecom Company(Hanoi Telecom) - Vietnam Power Telecoms(VPT)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5.

② Vinaphone

- VNPT 산하의 GPC¹¹⁾ 사가 1996년 설립한 자회사로 GSM방식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S-Fone사 등 여타 통신회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사의 통신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MobiFone사와 함께 베트남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③ S-Fone

- SPT사와 SLD Telecom에 의해 2003년 7월 설립되어 베트남 최초의 CDMA¹²⁾ 방식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SLD Telecom사는 한국의 SK Telecom, LG 전자, 동아 Elecomm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한 회사로 한국 CDMA 기술이 베트남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S-Fone은 GSM 서비스 위주의 베트남 통신시장에 저렴한 통신 요금과 다양한 부대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시장점유율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2003년 3만 여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가 최근 50만 명을 돌파하였음.

11) Vietnam Telecom Services Company

12) 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미국 켈컴사에서 제안한 북미의 Digital Cellular 무선통신의 표준방식으로 1993년 7월 미국 전자공업협회(TIA)의 자율 표준 IS-95로 제정되었음.

(다) 인터넷

□ 인터넷 시장의 발전 요인

- 1997년 베트남에 인터넷이 최초로 보급되어 4개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를 제공하였으나 인터넷 네트워크는 베트남우편통신공사(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VNPT)에서 독점하고 있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으로 VNPT사의 네트워크를 임차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이에 따라 베트남내 인터넷 비용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가여서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베트남내에서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표 18> 베트남 인터넷 중계사업자(ISPs) 현황^{주1)}

기업명	국제인터넷망	국내인터넷망 ^{주2)}
V N P T	1,695Mbps	2Gbps
Viettel	210Mbps	100Mbps
F P T	310Mbps	2Gbps
E T C	2Mbps	VNIX와 연결 안됨.
S P T	4Mbps	1Gbps

주1) 2005년 5월말 기준

2) VNIX(the Vietnam National Internet Exchange)를 통한 국내 인터넷망

자료 : Saigon Times News, Chains Fall From Internet's Neck, 2005. 7. 16

- 그러나 2002년 인터넷 독점이 철폐되고 FPT(Financing and Promoting Technology Company), Saigon Postel, Viettel 등이 인터넷 서비스 인가를 받았음.

- 또한 우정통신부는 국내 ISPs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6개 업체에 대해 IXPs¹³⁾ 서비스를 신규로 인가하였음.
- 인터넷 서비스 독점 폐지 이후 베트남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건수는 2003년 5월, 45만 건에서 2005년 5월, 278만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자는 75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베트남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VNNIX)는 베트남 인터넷 시장이 이처럼 급성장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표 19>

베트남의 인터넷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단 위	2003. 5	2004. 5	2005. 5
인 터 넷 가 입 건 수	건	449,959	1,164,893	2,779,172
인 터 넷 사 용 자 수	명	1,799,836	4,700,372	7,503,764
인터넷사용자수/총인구	%	2.25	5.77	9.10
국제 네트워킹 용량	Mbps	255	1,038	2,301
베트남 인터넷 도메인수	개	2,746	7,088	10,829
사용중인 IP 주소 수	IP	71,680	152,064	459,210

자료 : Saigon Times News, Chains Fall From Internet's Neck, 2005.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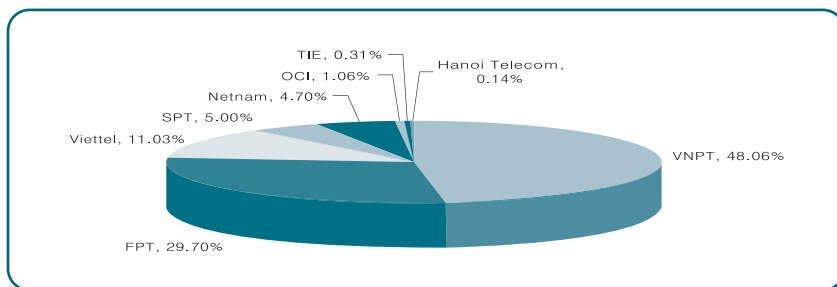
- 첫째, 인터넷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요금¹⁴⁾을 여타 국가들의 평균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였음.

13) Internet Exchange Providers

14) 베트남내 ADSL 사용 비용(다운로드 2Mbps 업로드 640Kbps 기준)은 월 고정사용료 181,818동(11.7달러) 및 데이터 비용(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나 대부분 최고 한도인 909,091VND(65달러)를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 광역고속인터넷서비스(ADSL¹⁵⁾)가 도입되면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동 서비스 개시 5개월만에 2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였고 2005년 5월 기준 8만 4,0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셋째,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음. 베트남의 국제인터넷채널은 2.3Gbps(2005년 5월 기준)으로 2년전에 비해 9배나 성장하였음.
- 넷째,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졌음. 과거에는 전자 메일, 자료 검색, 자료전송, 원격지 접속 등의 4가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인터넷 전화(VoIP), 무선인터넷, 채팅, 온라인 게임, 화상회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섯째, 인터넷 사용 요금이 인하되어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인터넷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주요 고객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음.

<그림 3>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 Saigon Times News, *Chains Fall Internet's Neck*, 2005. 7. 16.

15) ADSL : The Broadband 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 Line

- 이러한 요인들로 베트남의 인터넷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현재 16개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인가를 받았고 그 중 8개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중 VNPT사와 FPT사가 전체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데, VNPT사는 전국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공급자이며 FPT사는 주로 호치민시와 하노이시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소프트웨어산업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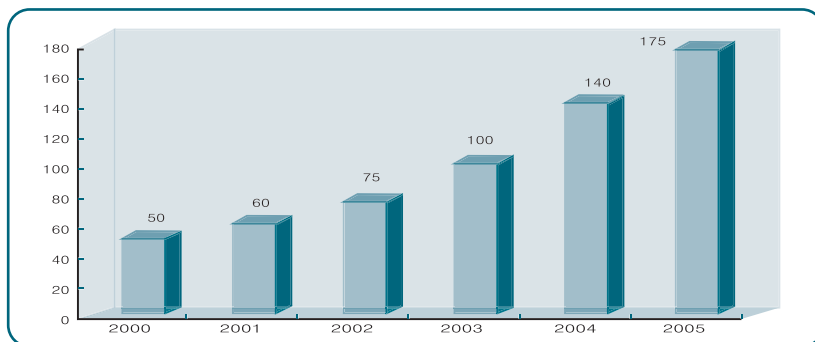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 부문임.
- 호치민시 컴퓨터 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약 4,000개의 소프트웨어 관련 등록 기업이 있으며, 현재 약 720¹⁶⁾ 개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IT업계 전체로는 약 2만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중 약 1만 여명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음.
- 베트남 소프트웨어산업 규모는 2000년 기준 5,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간 25%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억 7,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16) 이중 하노이시에 290개, 호치민시에 370개, 기타 지역에 60여개가 위치하고 있음.

- 베트남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은 연간 8,000~10,000 달러 수준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은 11,000~17,000 달러에 이릅니다.

<그림 4>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5

- 한편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부문에서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CIO Insight사의 글로벌 아웃소싱 2005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은 2005년 기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국가 순위¹⁷⁾의 20위 내에 들지 못하였지만, 2015년 기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능력 국가 전망 순위에서 발표된 30개국 중 17위를 차지함으로써 베트남이 향후 젊고 유능한 IT인력과 정부의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의 주요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17) CIO Insight사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능력 순위는 ① 비용(10%) ② 리스크(54%), 리스크의 세부 요인은 지리 정치적 요소(10%), 인력(10%), IT기술(10%), 경제(6%), 문화(6%) 등으로 구성 ③ 시장경쟁력(16%) 등의 요인들로 구성됨. 2005년 기준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능력 순위 상위 20개국을 보면 인도 1위, 중국 2위, 싱가포르 11위, 필리핀 13위 등인 반면, 2015년 기준 능력순위는 중국 1위, 인도 2위, 필리핀 9위, 말레이시아 12위, 태국 16위, 베트남 17위, 싱가포르 29위 등임.

□ 소프트웨어 산업 단지

- 베트남 정부는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호치민시 및 하노이시 인근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여 면세 등의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호치민시 시내와 인접한 팡중 소프트웨어시티(QTSC)¹⁸⁾와 사이공 소프트웨어파크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팡중 단지의 경우 단지내에 51개의 기업¹⁹⁾에서 약 1,500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음.
- 그러나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호아락 하이테크파크²⁰⁾는 시내로부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입지상의 단점과 주변 인프라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하노이시 인근에서는 오히려 캐논, 파나소닉 같은 기업이 입지해 있고 공항 인근에 위치한 탄롱 공업단지가 더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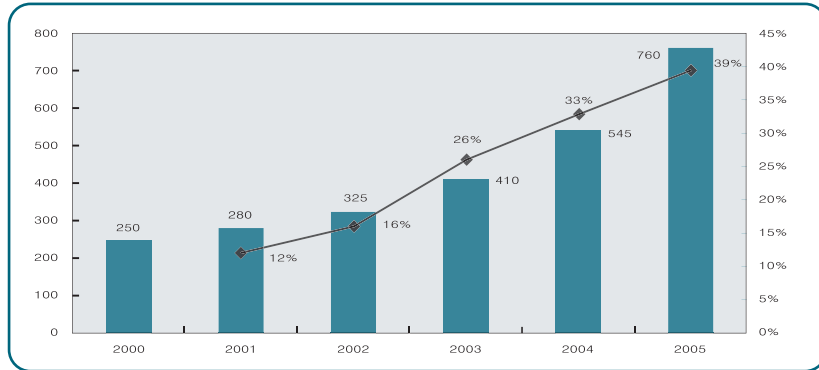
18) 2001년 3월에 설립된 팡중 소프트웨어 시티(Quang Trung Software City)의 주요 기능은 연구개발,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IT 기업에 대한 오피스, 회의장, 전시회, 주택, 식당,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병원 등의 하드웨어도 제공하는 것임.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북서쪽 1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39.2ha임.

19)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11개, 합작기업은 15개임.

20) 1998년 10월 베트남 최초로 설립된 호아락 하이테크파크(Hoa Lac High-Tech Park)의 주요 기능은 하이테크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교육 등으로 하노이 중심부로부터 서쪽 3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1,650ha에 이르고 있음.

<그림 5> 베트남 하드웨어 산업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KADO, Vietnam ICT Development Report, 2006.5

□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 현재 베트남 우정통신부는 2006~2010년 기간동안의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안에 의하면 2010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률을 35~40%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며 이 중 50% 이상을 수출을 통해 창출할 계획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부문을 집중 육성, 국내에서의 경험축적을 통한 해외부문으로의 수출확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개발의 기초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에 두고 다양한 우대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 우선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이익 실현후 4년 동안 면제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수출세 등을 0%로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경감해 주고 있어 베트남내 여타 수출가공지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비해서도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3) 하드웨어 산업

- 베트남 하드웨어 산업 규모는 2000년 2억 5,000만 달러 규모에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2005년에는 7억 6,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전자 산업의 전체 규모는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매출 규모의 대부분은 베트남 자국 기업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한 수출에 기인한 것임.
- 최근 베트남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FPT Eled사, CMS사 등과 같은 현지 하드웨어 생산기업들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여 FPT Eled사만이 연간 1,000만 달러를 넘고 있을 뿐임.
- 베트남 하드웨어 생산의 대부분은 Fujitsu, Canon²¹⁾ 등의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1) Canon사는 2005년 들어 베트남 북부 Bac Ninh 지역에 프린터, 스캐너, 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였음.

2. 에너지 산업 동향

가. 에너지 산업 개발 필요성

- 연평균 7%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1990년대 말부터 에너지 수요가 매년 3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농업 및 제조업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공급기반의 획기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은 빈민층의 고용 확대와 전반적인 산업기반의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효과뿐 아니라 전통적인 연료를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기오염 감소 등의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됨.
- 그러나 베트남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초 에너지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에너지 부존자원을 내수 및 수출용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

나. 에너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현재 1인당 에너지 소비규모는 아시아 지역에서 극히 낮은 편에 속하나 향후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는 연간 10~20% 수준의 증가율²²⁾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0>

베트남의 에너지별 수요

구 분	1995	2000	2005	1995~2010
전력생산(GWh)	14,636	25,706	44,491	77,406
원 유(천 배럴)	38,144	53,994	79,431	117,841
천연가스(십억 m ³)	0.199	2,111	4,663	7,717
석 탄(천 톤)	5,069	7,166	9,142	11,115
개석유 천톤으로 환산	10,663	16,975	24,267	36,973

자료 : 세계은행, Fueling Vietnam's Development, 2003.

- 베트남의 에너지분야 성장잠재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첫째, 2006년에 수립된 5년 경제개발계획은 에너지 분야를 수출지향형 공업화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우선 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있음.

22) 현재 1인당 전력에너지 소비량의 경우 291킬로와트로서 태국 1.6천 킬로와트, 중국 1천 킬로와트에 비하여 아주 낮으며 현재의 경제성장추세를 감안하면 투자계획부(MPI)는 전력수요가 2010년에 가서는 8만 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둘째, 현재 국민의 대부분은 자연 에너지 형태인 원목, 식물류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편리성 추구에 따라 점차 유류관련 소비로의 에너지소비 패턴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평균연령층을 보면 국민의 절반이상이 25세 미만일 정도로 아주 젊어 향후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잠재적인 에너지소비층이 아주 두터워 질 것으로 보임.
- 넷째, 베트남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약 2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중 약 1/3은 ECA나 개발은행을 통한 지원과 FDI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다섯째, 최근 일련의 성공적인 대규모 원유 및 가스 발견으로 인해 대륙붕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앞으로 베트남은 원유개발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 등지로의 원유 및 가스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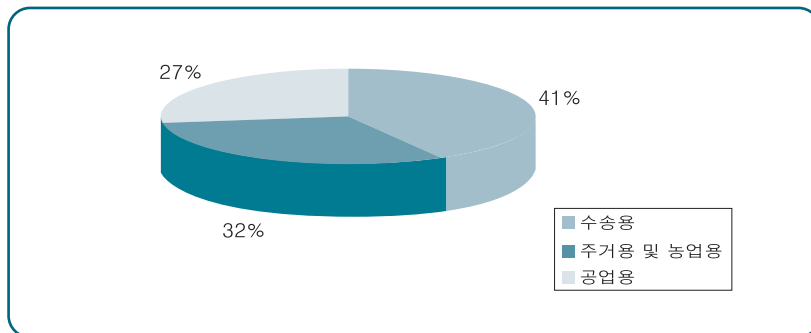
다. 개발정책

- 2002년 이전의 에너지 정책은 공업부(MOI)에 의해 수립되어 경제 자금 성취, 에너지 안보 유지 차원에 그 중점이 두어져 왔으나, 2002년의 내각개편 이후에는 새로 신설된 자원환경부가 석유가스 와 석탄에 관련된 정책수립을 담당²³⁾ 하게 됨.

23) 실무적으로는 2002년 이후부터 국영에너지회사 PetroVietnam 및 Electricite de Vietnam이 에너지 개발업무를 맡고 있음.

- 최근들어 대규모 에너지 개발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라 베트남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게 됨과 동시에 정부로서는 국내투자사업과 국내 연구 및 기술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림 6> 분야별 에너지 소비



자료 : World market Research Center, Vietnam, 2003. 9

- 국제협력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베트남정부는 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있어 역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세계은행이나 ADB와 같은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의 금융지원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
- 현재 베트남은 연간 17백만 톤 규모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베트남내에 정유 공장이 없어 이중 절반정도를 해외로부터 정제품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는 석유 및 전력 관련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련업무 추진시 정부 기관들의 투명성의 결여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함.

3. 석유가스 산업

가. 매장량

- 베트남 해양 원유 부존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복잡하여 실제로 당초 추정되는 가채매장량이 실제 탐사과정을 통해서 대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등 매장량 추정이 상당히 어려움.
-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가스유전지는 BP가 운영하는 06-1 광구의 Lan Tay/Lan Do 유전으로 2002년 11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고, 가채매장량은 2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유 유전은 86년부터 조업에 들어간 Bach Ho 유전이 최대 유전임.

<표 21>

베트남 가채 매장량

광 구 별	최초원유 (mmbbl)	최초가스 (bcf)	잔존원유 (mmbbl)	잔존가스 (bcf)
광 구 05-1a(Dai Hung)	33	-	3	-
광 구 05-2(Hai Thach)	90	1,800	90	1,800
광 구 06-1(Lan Tay/Lan Do)	13	2,000	13	1,995
광 구 09-1(Bach Ho and Rong)	1,240	665	403	391
광 구 15-1(Sutu Den) ^{주 1)}	240	-	240	-
광 구 15-2(Rang Dong)	333	215	263	215
광 구 46(Cai Nuoc)	11	90	11	90
광 구 01/02 (Ruby)	140	-	105	-
Hanoi Basin PSC	0	50	0	31
합 계	2,100	4,820	1,128	4,522

주 1) 2003년 기준

2) 최근 실시한 현지 조사에 따르면 Sutut Den 유전의 경우 운영자인 Cuu Long JOC는 가채매장량이 5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Sutut Trang의 경우도 Sutut Den 유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자료 : Wood McKenzie, South East Asia Upstream Services, 2003.

- 초기에는 가스관련 인프라 부재로 생산된 가스가 생산지에서 그냥 사용되었으나, 2001년 가스파이프가 건설되면서 육상으로 운송되었음.
- 현재 가스 관련 매장량은 복잡한 지형으로 탐사에 어려움이 있어 단지 추정만 하는 정도이며 Rang Dong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Bach Ho 유전지를 통해 육상으로 운송됨.

나. 생 산

□ 석 유

- 베트남의 석유생산은 1986년 Vietsovpetro가 Bach Ho 유전지에 조업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음.
- 1986년 평균 일산 800배럴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25만 8,000배럴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한국석유공사(KNOC)의 자료에 따르면 일산 36만 9,000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표 22>

베트남 석유산업 현황

단위: 천 배럴

유전 명	일 생산량	참 여 사
Bach Ho	240	Vietsovpetro(베-러 합작)
Sutu Den	60	KNOC, SK, Conoco, PVEP
Rang Dong	43	JVPC(일), Conoco, PVEP
Hong Ngoc	16	Petronas(말련), PVEP
Rong	7	Vietsovpetro(베-러 합작)
Bunga-kekwa	2	베트남, 말레이시아 공동 개발구역
Dai Hung	1	PVEP
합 계	369	

자료 : KNOC

- 최근 8년 동안 Dai Hung, Rong, Ruby, Rang Dong 분지가 조업에 들어갔으며, Ruby, Rang Dong분지는 1998년부터 생산 가동중임.
- 2001년 Cuu Long JOC에 의하여 대규모 유전지인 Sutu Den, Sutu Vang이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Sutu Trang에서 유전 발견에 성공함에 따라 최소 약 8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베트남 최대 유전지인 Bach Ho 유전의 노쇠화에 따라 전체 생산량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3> 향후 베트남의 석유생산 전망(일산)

단위 : 일산, 천 배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 산	316	357	340	353	360	370	380
소 비	176	179	193	216	228	242	254

자료 :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 Report: Vietnam(Energy), Nov., 2006.

□ 가 스

- 2002년까지는 Tien Hai와 Bach Ho 유전만이 가스를 생산해왔으나 2002년 후반부터 BP사가 운영하는 Lan Tay/Lan Do 프로젝트가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2006년 가스 생산량은 연산 1,600억 입방피트에 달하고 있음.
- 최근 가스수요가 증가하면서 베트남내 생산가스는 100% 소비되고 있는 실정임.

<표 24> 베트남 가스산업 현황

유 전 명	일생산량	참 여 사
Bach Ho	일산 150백만 입방피트	Vietsovpetro(베-러 합작)
Lan Do/Lan Tay	일산 100백만 입방피트	BP, ONGC, PVEP
합 계	일산 250백만 입방피트	LNG환산 : 5,000톤

자료 : KNOC

다. 천연가스 처리 마스터플랜

-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가스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PetroVietnam은 White Tiger 가스이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내륙 지역으로의 하루 가스수송능력을 4.5백만 입방미터로 늘리고, 내수를 위한 Dinh Co LNG 가스플랜트를 완공할 계획임.
- 이와 함께 Nam Con Son 분지와 남서 지역으로부터의 가스를 이용한 가스처리시설을 완공해 원자재 및 연료 수요에도 충당하여 산업용화 하기로 함.

<표 25> 향후 베트남의 가스 생산 전망(일산)

단위 : 일산, 천 배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 산	40.6	45.9	79.8	95.4	110.0	140.0	160.0

주) Billion cubic feet

자료 :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 Report: Vietnam(Energy), Nov., 2006.

- 2002년 말 기준으로 현재 베트남은 Tien Hai, Bach Ho, Lan Tay 유전에서 가스를 생산중임.

- 이 중 하노이시 동쪽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Tien Hai 유전지는 매장량이 500억 입방피트에 못 미치고 현재 생산도 일산 210만 배럴에 그쳐 당초 용도인 발전용보다는 현재 지역내 요업부문 용도로만 쓰이고 있어 다른 두 개 가스 유전보다 경제적 효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26> 베트남의 가스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	운영자	출발지점	도착지점	길이 (km)	직경 (inches)	용량 (mmcf/d)
Rang Dong to Bach Ho	Petro Vietnam	Rang Dong	Rang Dong	45	16	80~100
Bach Ho to Dinh Co	Petro Vietnam	Bach Ho	Dinh Co	107	16	200
Dinh Co to Ba Ria	Petro Vietnam	Dinh Co	Ba Ria	17	16	
Lan Tay to Dinh Co	BP	Lan Tay	Dinh Co	379	26	700
Dinh Co to Phu My(Lan Tay)	Petro Vietnam	Dinh Co	Phu My	28	26	700

자료 : 세계은행, Fueling Vietnam's Development, 2003.

- 베트남에서 가스파이프라인이 처음 가동된 것은 Ba Ria와 Phu My 지역에 발전용으로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Bach Ho 유전으로부터 해안까지의 파이프라인임.
- 이 파이프라인은 2-phase 파이프라인으로 1-phase는 직경 16 인치에 총 길이 107km의 해양 파이프라인이고, 2-phase는 길이 17km의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Ba Ria의 185MW 발전소의 전력 용도로 사용됨.

- Bach Ho에서부터 Ba Ria, Phu My까지의 가스파이프 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1년부터 Rang Dong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가 길이 45km, 직경 16인치의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하여 Bach Ho 유전까지 운송되게 된후, 다시 Bach Ho에서부터 Ba Ria, Phu My까지의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육상으로 운송되었음.
- 2002년 Lan Tay 유전부터 Dinh Co 까지 연결되는 길이 379km, 직경 26인치의 2-phase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가스파이프로 초기 베트남 가스시장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 가스파이프라인의 용량은 일산 7억 배럴의 가스를 운반할 수 있으나 Lan Tay/Lan Do 유전의 가스 일산량은 3억 5,000만 배럴에 불과한 실정임.
- 파이프라인은 베트남 남부의 Long Hai에서 육지로 나와 Dinh Co의 가스 터미널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약 9km임.
- 현재 터미널은 PetroVietnam이 운영하고 있으며 Bach Ho 유전으로 부터의 가스를 사용하여 일산 3억 5,000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처리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 가스부문 인프라의 증설 여부 등은 전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Lan Tay/Lan Do 유전 개발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에 따른 가스파이프 라인의 증설이나 가스수요 시장의 팽창 등은 Rong Doi, Moc Thin 유전의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자체적으로는 현재의 파이프라인 용량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White Tiger 가스활용 프로젝트

- 1993년부터 PetroVietnam은 점진적으로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이어 최초의 대륙붕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동 사로서는 첫 가스부문 참여 프로젝트임.
- 이 사업은 1995년에 완공되어 일간 100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Ba Ria 발전소에 공급하게 되어 연간 3,000만 달러의 정부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됨.
- 그리고 발전용 천연가스 이용의 효율성이 점차 인정됨에 따라 Phu My 2.1 및 Phu My 2.1 확장 발전소들이 잇달아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간 천연가스 공급량도 2~400만 입방미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됨.
- 현재 White Tiger 가스처리 프로젝트는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서 생산증가 및 수입대체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베트남의 가스산업은 자립성장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Nam Con Son 가스프로젝트 (NCSP)

- 남콘손 프로젝트의 경우는 지질·해양학적인 기술조사와 사업추진 방식에 관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가스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음.
- NCSP 프로젝트외에도 PetroVietnam은 Phu My-Ho Chi Minh시 간 파이프라인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추가로 시장성 조사와 수요증가에 대비한 관련인프라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임.

□ South-West Gas Project

- PetroVietnam은 동 Cuu Long 분지 지역에 대한 가스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이를 에너지 중심센터로 만들어 전력생산능력을 2003년의 1200~1300 메가와트에서 2010년에는 3,000~3,500 메가와트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도 전력 발전계획에 동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동 파이프라인 및 SW 가스개발 프로그램은 Cuu Long 분지 지역 및 국가 발전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Trans-ASEAN 가스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는 관문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Ca Mau Natural Gas Complex

- Ca Mau 성 지역에서의 공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PetroVietnam은 325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육상터미널을 설치할 예정임.
- 이 파이프라인은 PM3 광구로부터의 가스를 지상 가스터미널로 운송해 메콩델타의 Ca Mau 및 여타지역의 가정 및 산업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여기서 최대의 수요자는 Gas-Power-Fertilizer가 될 것임.

4. 정유 산업

- 현재까지 베트남은 원유를 생산하면 인근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판매하고 해외로부터 정제된 원유를 다시 수입해 왔음.
- 이러한 방식은 과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오토바이와 자동차 수요 및 전력 수요 증가로 정유 수입에 대한 비용이 점차 증대하자 정부도 정유시설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총 소비량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안보차원에서 에너지자원 자급 측면뿐 아니라 경제전반의 안정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Petrovietnam은 두 개의 정유설비를 건설할 계획임.
 - Dung Quat Refinery(제1 정유공장) : 2006년 가동 예정
 - Nghi Son Refinery-Petrochemical Complex(제2 정유공장) : 동설비의 제1단계는 우선 2008년 가동 예정
- 이 정유공장들이 예정대로 가동될 경우 수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들 공장들은 석유화학공업 발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어서 Dung Quat Refinery로부터의 프로필렌, 키로센 등과 제2공장으로부터의 나프타 등은 주요한 원자재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그러나 당초 중부지역에서 진행 중인 Dung Quat 프로젝트는 약 13억 달러를 투입, 2005년부터 연간 650만 톤의 원유를 정유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참여 파트너가 경제성을 이유로 계속 바뀌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당초 첫 번째 정유공장은 베트남 주요 유전이 있는 남부지역에 건설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중부지역이 베트남 경제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리하게 유전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부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파트너가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히려 북부지역의 제2차 정유공장이 먼저 건설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이와 같은 대형 정유설비 이외에도 Petrovietnam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한 소규모 정유설비의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들 설비들은 정유제품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5. 전력 산업

가. 개 요

- 2002년 현재 베트남의 총 발전용량은 8,750MW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수력발전이 48%, 열병합발전이 20%, 가스 및 디젤화력발전이 31%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의 경우 총 전력생산량은 약 3만 GWh에 달하였으며, 이 중 수력발전이 60%, 열병합발전이 23%, 가스 및 디젤화력발전은 19%를 차지하였음.
- 1990~2001년 중 전력생산량은 연평균 13% 증가하여 12년 동안 3.5배에 이르렀음. 특히 1994~96년 중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9%였던 데 반해 전력생산 증가율은 17%에 이르렀고, 2001년에도 경제성장률은 4.8%로 둔화되었으나 전력생산량은 15%가 증가하였음.

- 전력생산 방식을 살펴보면, 1990~96년 중 70%에 달했던 수력발전의 비중은 1998년 51%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힘입어 다시 60%로 확대되었음.
-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비중은 1998년에 23%까지 높아졌으나, 2001년에는 19%로 소폭 감소하였음.
- 전력공급망을 살펴보면, 2001년 말 현재 광역지역(district)의 98%와 기초지역(commune)의 85%를 포함하는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송전 및 배전망은 전력공급과 맞맞추어 확충되어야 하나, 투자 부족과 공사 지연 등으로 항상 전력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력 손실, 전력품질의 저하, 정전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

나. 발전설비 건설 추진계획

- 2001년부터 베트남이 EVN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경제사회개발 및 전력확충계획에 따르면, 발전설비 규모는 2001~05년 중 매년 15%, 2006~10년 중에는 매년 13%씩 늘어날 전망이다.
- 이 같은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 총 발전용량도 2002년의 8,750MW에서 2005년에는 9,620MW로, 2010년에는 16,910MW로 늘릴 계획이며, 2002~05년에는 매년 700MW, 2006~10년에는 매년 1,200MW의 추가 발전용량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7>

연도별 전력수요 예측

연 도	최대 전력용량(MW)	소비량(GWh)	비 고
2000	4,900	26,600	
2005	7,800~8,300	46,500~50,000	수력 비중 축소
2010	12,000~14,000	70,000~80,000	원자력 개발

자료 : 세계은행, Fueling Vietnam's Development, 2003.

- 또한, 이를 위해서 2010년까지 18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²⁴⁾ 하고, 2020년까지는 총 320억~400억 달러의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됨.

다. 전력자원 개발현황

- 베트남은 수력, 석탄, 원유, 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동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베트남은 연간 총 30만 GWh의 발전이 가능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수자원은 8만 GWh 정도이며, 이는 2만 MW의 발전용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베트남의 수력발전 설비(건설중인 발전설비 포함)는 약 4,000MW이며, 연간 발전량은 개발가능 용량의 22.5%인 18,000GWh임.
- 향후 수년간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수력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어

24) 이 중 140억 달러 정도는 EVN의 자체재원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외자도입이나 ODA 등을 통해 충당될 계획임.

나가면서 전력생산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다목적 댐의 건설에 치중해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임.

- 이로써 2010년에는 수력발전을 통한 총 전력생산이 8,000MW, 총 전력생산은 3만 GWh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2010년까지 가스발전소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ast Southland의 Baria, Phu My 2.1 및 1 발전소는 Bach Ho 유전의 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건설중이며, Nam Con Son 대륙붕 가스를 이용한 Phu My 4, 3, 2.2 발전소도 Phu My 단지에서 추가로 건설될 예정임.
- PetroVietnam의 추산에 따르면, West Southland의 총 가스매장량은 3~4억 m³에 달하며, 2010년까지 이 지역 가스를 이용하여 Ca Mau와 O Mon 2 등의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임. 이로서 2010년에는 베트남의 가스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이 6,50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Quang Ninh 지역에서 주로 개발되고 있는 석탄자원은 총 매장량이 약 39억 톤에 달하는데, 이 중 2010~20년에 약 2,000만 톤이 채광되고 그 절반 정도가 전력생산에 이용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 정부는 현재 900 MW인 석탄화력 발전용량도 3,000MW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라. 원자력발전

- 베트남은 1992~95년 중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주관으로 원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재래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원의 다변화 차원에서 2010년경 전력 공급을 목표로 800~1,000MW 규모의 원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 또한, 1996~99년 중 산업성 주관으로 베트남 전력공사와 원자력 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1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정책결정을 위한 원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10~15년경 약 3,000MW의 원전을 보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남부 냥투안성의 빈하이 또는 푸옥딩 지역이 유력하게 부상하였으나 중부 푸옌성의 호아 탐 지역도 물망에 오르고 있음.
- 현재는 정부 관련 부처가 원전 도입 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중인데, 통상 원자력발전소 준비에는 기술훈련을 포함하여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으로 수력 및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현재 24년 가동분의 우라늄 매장량이 확인된 바 있으나, 베트남이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국임을 감안할 때 원자력 개발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됨.
- 여기에다 정부 내의 복잡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적 제약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관리기구 설립, 관련법 제정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전력은 1995년 베트남원자력위원회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원전 도입과 관련된 베트남 원자력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 및 원전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과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양국 원전산업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한국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업정보 수집과 국내 업체들의 진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원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개발 등에 대해 기초 준비 및 조사업무를 지원하였음.
- 우리 정부(과학기술부)도 이미 1996년에 한-베트남 원자력연구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 6월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방문 당시 원전도입 타당성 공동조사 등을 포함한 양국간 원자력 분야에 상호 협력키로 하고, 한국전력을 통해 원전도입 타당성 공동조사 연구 수행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수행한 바도 있음.

마. 주변국과의 전력개발 협력 추진

- 베트남은 주변의 메콩강 연안국가와 전력분야를 연계시키면 전력개발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 효율화를 통한 이득을 누릴 수 있음.
- 이와 함께 건기에는 중국과 같은 메콩 강 상류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우기에는 태국과 같이 화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전력을 수출함으로써 수력발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고 있는 메콩 강 유역(GMS) 개발사업²⁵⁾에는 수력발전을 이용한 전력망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25) 운송, 에너지, 환경, 천연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 관광, 교역 및 투자, 통신 등 7개 분야 100여 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1992년부터 시작되어 ADB의 주도 하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본 구상은 GMS 6개국의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여 유럽 대륙과 같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임. 메콩 강 유역 개발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단계(1992. 8~1993. 1)는 참가국과의 협의, 주요 프로젝트 준비, 제2단계(1993. 6~1996. 6)는 권역 내 회원국의 공동행동 가능성을 심층연구, 제3단계(1996. 7~)는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적 조치, 공적자금 등 외자도입 실시임.

데, 이는 예상되는 GMS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GMS 지역은 비교적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다르고 공급능력에도 차이가 있어 汎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
- ASEAN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Trans-ASEAN Power Grid Project와 Trans-ASEAN Pipeline Project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역내로는 메콩 강 유역의 전력통합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은 최근 인접국인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전력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바. 전력공급 확대 방안

-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라 전력수요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의 충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력공급과 투자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첫째, 베트남은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풍부한 수력자원²⁶⁾ 외에도 최근 대륙붕 광구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점차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발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베트남은 ASEAN 회원국보다 전력 기반시설에의 투자규모를 훨씬 높여야 하고,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관세제도도 투자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관점에서 개편되어야 함.
- 베트남 전력부문 투자의 약 2/3가 공적개발원조(ODA), 수출신용, 외국인직접투자 등으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공영사업 추진과 민자 유치에 있어 정부의 보증이 선택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외국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와 관련 제반 법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력부문에 대한 개발금융기관의 지원을 적극 유치해야 함.
- 이를 위해 ADB의 지원을 통한 전력 인프라 사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현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메콩 강 유역 개발사업을 통해 ADB의 장기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 치수, 도로 부문으로까지의 파급효과도 노릴 수가 있음.
- 발전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의 자금의 경우 농촌 지역과 산간 오지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에너지망 확충과 민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6) 베트남의 수자원은 개발가능량의 약 1/4만이 개발된 상태이며, 현재 小수력(개소당 10MW 이하)의 경우 발전가능총량 2,000MW중 약 60MW만이 개발된 상태임.

- 현재 주요 프로젝트로는 전력시설 보수와 개발, 송전선로 확장 및 보수, 농촌 지역에의 에너지 공급 등이 있음.
- 다섯째, 미국과의 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ODA의 지원을 통한 전력 프로젝트 추진에서 탈피하여 서방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투자관련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각종 비리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임.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방안

1. 진출현황 및 애로점

가. 우리의 진출현황

□ 최근 교역규모 급증세

- 1992년 한-베트남 수교 당시 약 5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2005년에는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이 각각 34%, 36%에 이르러 베트남이 우리기업의 주요 교역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품목별

<표 28>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6	누계 2006.6말 기준
신고액	건수	55	117	102	126	181	128	989
	금액	99	383	723	358	368	308	3,502
총투자	건수	47	100	96	112	172	125	871
	금액	51	146	156	173	296	213	1,78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6. 10.

구조를 보면 우선 수출은 석유제품, 기계류, 전자제품 등이 주요 품목이고 수입은 수산물, 신발류, 전기기기 등임.

- 한편 한-베트남 교역 수지는 2005년 기준 한국이 27억 달러의 수출 초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출초과 규모의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개방정책 이후 진출 증가세

-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 실시 이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진출도 증가하여 2006년 6월말 기준 871건에 17억 8,705만 달러의 총투자 잔액을 기록하고 있음.

<표 29> 국가별 대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건수	승인액	유입액
대 만	1,526	7,950	2,809
싱 가 포 르	435	7,903	3,465
일 본	711	7,012	4,274
한 국	1,211	6,010	2,439
홍 콩	373	4,416	1,929
영국령 버진군도	271	3,136	1,287
프 랑 스	174	2,197	1,051
네덜란드	71	2,123	1,754
미 국	299	2,018	731
케이만 군도	19	1,532	527
기 타	1,545	11,946	5,872
합 계	6,635	56,243	26,138

주) 1988년 ~ 2006년 9월 20일까지의 투자 금액으로 MPI 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6. 10. 16-22

- 동 투자금액은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인허가 기관인 기획투자부(MPI)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1,211건에 승인액 60억 달러, 유입액 24억 달러로 증가하는데, 이는 베트남내 통계에는 제3국

<표 30> 지역별 외국직접투자유치현황^{주)}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건수	승인액	유입액
HCMC	2,043	13,572	5,986
Hanoi	735	9,944	3,161
Dong Nai	772	9,000	3,574
Binh Duong	1,197	5,693	1,909
Ba Ria-Vung Tau	129	3,260	1,210
Haiphong	210	2,118	1,237
Long An	116	1,004	343
Hai Duong	89	878	387
Vinh Phuc	109	858	414
Thanh Hoa	63	476	303
기타	1,172	9,440	7,614
Total	6,635	56,243	26,138

주) 1988년 ~ 2006년 9월 20일까지의 투자 금액으로 MPI 기준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6. 10. 16-22

우회 진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로 투자 규모가 일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06년 9월 기준 제4위 투자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 특히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가전부문에 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통신 부문도 우리기업의 제품들이 석권하고 있음.
- 투자 지역별로는 전력, 수도, 인력, 도로, 항만 등 투자 인프라가 베트남내에서 월등히 우월한 호치민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하노이, 동나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 애로점

□ 투자 관련 행정 처리 소요시간 과다

- 투자허가기간이 제도적으로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보통 6개월~1년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며 투자허가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현지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사용,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공장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예상에 비해 인허가 관련비용이 크게 늘어남.
- 투자허가는 MPI(기획투자부)가 맡고 있고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허가 등은 市, 省 인민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데 투자허가보다 각 인민위원회의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 허가절차가 더 까다롭고 처리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투자기업 설립시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설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비용도 예상보다 비싼 편임.

□ 투자용 토지 취득 관련 문제가 많음

-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공단내 토지 임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농업용 토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수속절차가 복잡함.
- 국영기업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도시내 공장의 시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투자 진출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현지 거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함.
- 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지만 개인이 그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투자 관련 인프라가 열악함

- 도로 운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 컨테이너의 운송 및 통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도로여건은 호치민시 등 남부의 경우 비교적 좋은 편이나 하이퐁-하노이 구간 등 북부지역이 특히 열악한 실정임. 도로 및 교량이 너무 낡았거나 좁아 대형 구조물의 경우 도로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베트남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체제는 정비단계에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으며 편법이 성행하고 있음. 또한 제도 및 시책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정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중요함.
-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토지, 건물 임차료 등이 급상승하고 있음. 한편 수출가공구 건설로 시작된 공단개발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장단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함.

□ 현지 인력 관리의 어려움

- 대체로 베트남인은 아시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손재주가 좋고 근면하며 명석한데다 탐구력을 갖추고 있어 최상급 노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나라에 배타적이므로 현지 인력 활용시 관리 및 통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진출 확대방안

가. 진출 전략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진출 전략 필요

- 베트남에의 진출은 동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에 기초를 둔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이익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이익추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음.
-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아직 섬유, 봉제, 가방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의 진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업체간 현지거래선 확보 및 인력확보경쟁 등 불합리한 과다경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품목(업종)의 다양화와 함께 진출지역의 다변화 역시 요망된다고 하겠음.

□ 투자검토단계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과 시장 조사가 필수적임.

- 투자를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임. 베트남은 각종 법제도와 규정이 복잡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

사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추진하면 업무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기 쉬움.

- 현지 투자여건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현지에 기 진출한 동종의 한국계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임.

나. 진출 유망분야

□ 노동집약적 제조업

-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여 특히 봉제, 피혁, 제화, 완구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유리한 편임.

□ 건설용 자재

-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라 건설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자재 분야에서 합작 투자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멘트 제조(내수용), 화강암 및 대리석 가공(수출용), 전기 및 전자조립 생산, 농업기계류, 자동차, 소형 모터 등 기계공업, 비료 생산(인회석 이용), 합성수지 생산, 조미료, 약품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함.

□ 수산업 관련분야

- 새우, 가재, 게 및 어류의 양식·가공 산업이 유망함. 특히 새우 양식은 베트남에서 국제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을 정도로 품질이 양호하여 베트남의 주 수출품의 하나를 이루고 있음.

□ 농수산물 재배, 가공분야

- 차, 타피오카, 골품 및 등나무, 후추, 참깨, 사탕수수, 면화, 황마, 담배, 커피, 야채, 양잠 등의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
- 삼림개발에 관해서는 현재 1,000ha까지 30~50년 동안 삼림지를 대여받을 수 있고 국가가 주선한 기간의 종료시까지 투자할 경우 생산물의 30%~70%를 처분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코코넛, 야자나무, 고무나무, 대나무, 계피나무의 생산 등에 유망한 것으로 보임.

□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분야

-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관계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수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가 높음.
- 그러나 이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합작자체가 국제기관 또는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내지 차관의 도입에 의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건설장비를 리스하거나 기술을 제공한다는 형태로 합작을 하거나 혹은 서방제국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송 분야

- 해상수송의 경우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송 물량은 급증할 것인 반면 베트남 자체의 수송능력은 단기간에 확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합작 사업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

□ 에너지 자원부문 진출방안

-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의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첫째, 우리기업들은 자본과 기술력을 동원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석유산업의 경우 외국의 원유개발 메이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정보공유와 과당경쟁의 방지가 요구됨.
- 둘째, 자원개발분야의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등 단계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 셋째 원유 및 가스 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 및 수송 등을 위한 인프라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ADB나 세계은행 등의 지원과 연계해 진출하거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춘 광구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Nam Con Son이나 Cuu Long 분지 지역의 경우 수송 및 가스처리 등 비교적 인프라기반이 앞서 조성되고 있어 양호한 진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넷째, 중동국가에의 석유수입의존도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선 개발수입의 측면에서 유전개발참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한편 베트남 전력부문에 대한 진출은 메콩강유역개발 계획과의 연계 하에 고려되어야 함. 1994년의 메콩강 개발계획 에너지부문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력의 생산과 송전에 약 3.8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 현재 베트남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전력개발 사업의 경우 BOT방식을 통한 민자 유치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방식의 사업참여에는 막대한 제원의 조달 부담, 투자회수의 장기화, 경험과 기술 부족,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미비로 인한 난관이 따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3.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현황

가. 수은 자금

- 수출입은행의 대베트남 금융지원 규모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하여 2006년 9월말 기준 2억 4,100만 달러의 여신 잔액을 기록하고 있음.
- 자금 유형별로 보면 장단기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은 베트남의 경제가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그 규모가 2억 2,538만 달러로 전체 수출자금의 42%에 이르고 있음.
- 또한 현재 베트남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직 접투자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음에 따라 해외투자자자금은 그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31> 대베트남 수은자금 금융지원 현황

(2006. 9. 3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집 행		여신 잔액	
	건 수	금 액(백만불)	건 수	금 액(백만불)
수출자금	402	539	100	23
해투자금	67	360	15	130
수입자금	1	1	1	1
역외금융	86	336	21	83
기타대출	181	79	5	1
이행성 보증 등	61	117	2	3
합 계	798	1,432	144	24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EDCF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²⁷⁾에 의한 대베트남 유상원조 제공은 2006년 9월말 기준 총 9건, 1,930억 원(승인기준)으로 제4위의 지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한국 재경부는 향후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베트남을 EDCF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고 베트남에 대한 국별원조전략(Country Strategy Program: CSP)을 수립하여 대베트남 EDCF 지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임.

27) EDCF의 운영주체는 정부(재정경제부)로서 지원사업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체결, 사후관리 등 EDCF 운영 실무를 대행하고 있음.

<표 32> 대베트남 경제협력기금지원(EDCF) 현황
(2006. 9월 기준)

사 업 명	승인시기	승인액		집행액 (백만원)	추진단계
		백만원	백만불		
Thien-tan 상수도사업	95.05.26	19,885	26.0	19,885	집행완료
Thien-tan 상수도사업(추가)	00.07.04	8,009	7.0	7,190	
18번 도로 개량	95.05.26	18,355	24.0	18,336	집행완료
Baria발전소 복합화력설비	96.12.31	41,516	49.0	41,516	집행완료
Baria발전소 복합화력설비(추가)	00.01.24	8,470	7.4	8,462	
백신공장 건설사업	99.09.22	34,728	28.5	34,727	지출중
하이퐁 고체폐기물처리사업	01.08.21	23,400	19.6	10,708	지출중
닌빈 고체폐기물처리사업	04.08.31	20,023	21.0	-	구매계약 추진
빈푹 고체폐기물처리사업	05.10.12	18,623	19.5	-	차관공여계약 체결예정
합계		193,009	202.0	140,82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금융 지원 확대 방안

□ 전력 등 인프라 개발 부문에의 우리기업 참여 적극 지원

- 베트남은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 인프라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조속한 개발이 시급한데 특히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발전소 건설 등 발전사업에의 참여는 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투자 리스크가 크므로 우리기업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부문임.
- 따라서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플랜트 건설 입찰에 우리기업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정보 제공과 함께 P/F 방식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대 자금을 통한 지원

- 베트남은 향후 중국을 대체하는 잠재 시장으로서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임. 특히 최근의 고도 성장 지속으로 내수용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상황임.
- 현재 베트남 기업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자금 부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전대 자금을 지원하여 한국제품의 대베트남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EDCF 지원 확대

- 베트남은 경제 성장 가능성과 함께 도로, 항만, 교육, 의료 등 사회 기반분야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이 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큰 상황임.
- 현재 베트남이 우리나라 EDCF의 3위 수혜국이라는 하나 베트남 인프라 부문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DCF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국간 정책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사업을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매년 한국의 EDCF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에 대해 한국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진출과 함께 혼합신용 형태로 EDCF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임.

VIETNAM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부 록





1. APEC의 개요¹⁾

□ 설립의 배경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의 설립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후반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국제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담보 상태를 보이던 시기였음.
- 이 시기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범 세계주의(Globalism)’에 대항한 ‘지역주의(Regionalism)’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음
- 냉전 기간 중 구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의 통합을 용인하였던 미국은 지역주의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자 북미 경제 체제를 통합하는 NAFTA 체결을 서두르기 시작하였고, 미국을 배제한 동 아시아 국가의 결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APEC 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음

1) APEC의 개요는 www.apeckorea.go.kr 등 외교통상부 자료를 주로 참조

- ※ 실제로, 1993년 개최된 제 1차 APEC 정상회의도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성사된 것임
- 한편,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 이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미 존재하던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제조직 또한 APEC의 설립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
- 대표적인 기구로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와 같은 민간 기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민간에서의 협력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음.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의 개요

-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PECC)는 1980년 9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과 태평양 도서국가(島嶼國家) 대표가 참석한 ‘태평양 공동체 세미나(Pacific Community Seminar)’에서 당시 호주 수상 존 말콤 프레이저(John Malcolm Fraser)와 일본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주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1982년 방콕에서 제2차 PECC 총회를 개최하면서 역내 경제 협력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 경제협력체로 발전하였음
- 이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 및 정부 참여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면서 1989년 역내 정부간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범에 공헌하였음

며, 현재까지 APEC의 공식 옵서버로서 역내 경제협력에 공헌하고 있음.

- Tripartite & Independent의 원칙 : PECC는 정부, 업계, 학계의 “3자 참여(Tripartite partnership)”라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개인자격 참여 원칙(Independent)에 따라 참여자들이 정부, 업계, 학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논의와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PECC는 APEC 출범시부터 현재까지 APEC의 유일한 민간 옵서버로서 APEC의 Think-tank 역할을 하고 있음.
- PECC는 매년 APEC 각료 회의에서 PECC Statement를 발표하여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APEC 통상 및 재무 장관회의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APEC 고위관료회의 (SOM)에 참여하여 성명(statement)을 제출함으로써 분야별 연구 활동 및 정책 제안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음.

□ APEC 설립의 목적

-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APEC은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경제·기술 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며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배격함

태평양경제협력회(PBEC)의 개요

- 태평양경제협력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는 1967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의 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最古)의 민간 경제단체임
- 설립 이래 교역 및 투자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그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안보, 부정부패, 전염병, 환경보전, 세계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음.
- 2005년 현재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등 총 20개 국가의 약 1,100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임.

2. APEC의 연혁

□ APEC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력체임

– 국제조약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국제 기구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Forum)’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APEC은 당초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 회의로 출범하였음

– 이후 꾸준히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가입이 이어졌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최고의 정책공조 포럼이자 역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게 되었음.

<표 1> APEC 회원국 가입 경과

년도	가입국수	가입회원국
1989	12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1991	3	중국, 홍콩, 대만
1993	2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	1	칠레
1998	3	러시아, 베트남, 페루
계	21	

* 1997년 정상회의에서 10년간 새로운 회원 가입 동결에 합의

- APEC은 역내 국가가 당면한 여러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빠르게 변화하게 정치·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의제를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음

<표 2> APEC 정상회의 각 회차별 주요 의제

구 분	주 요 의 제
제 1회 시애틀 회의(1993. 11)	-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래 전망과 경제성장을 위한 각국 고려사항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제 2회 보고르 회의(1994. 11)	-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 방안 - APEC 무역·투자 자유화
제 3회 일본오사카 회의(1995. 11)	- APEC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의 실현을 위한 행동
제 4회 필리핀 수빅회의(1996. 11)	- 아·태 협력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제 5회 캐나다 밴쿠버 회의(1997. 11)	-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와 경제 인프라 개발 무역투자 자유화
제 6회 쿠알라룸푸르 회의(1998. 11)	- 금융안정과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및 전자상거래
제 7회 오글랜드 회의(1999. 12)	- 다자 무역체제 강화
제 8회 부르나이 반다르스리베가완 회의(2000. 11)	- 공동체에 대한 기여 - 보다 강한 협력기반 구축과 새로운 기획의 창출
제 9회 상해 회의(2001. 10)	- 세계 및 지역경제 현황과 인간능력 배양
제 10회 멕시코 로스카보스회의(2002. 10)	- 반테러와 경제적 파급효과 - 자유·개방시장으로의 전환
제 11회 방콕회의(2003. 10)	-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 반테러 대책
제 12회 칠레 산티아고 회의(2004. 11)	- 무역·투자 자유화, 인간 안보 강화, 지식기반 경제 논의
제 13회 한국 부산 회의(2005. 11)	- 무역 자유화 진전, 역내 안전문제 협력강화 반부패 공동 대책 등 논의

- 이러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 가입국 증가 등 외형적 성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적 성과를 이루었음.

<표 3> APEC의 주요 성과

년 도	월 일	주 요 성 과
1989	11.6~7	- 제 1차 APEC 각료 회의 (캔버라) 개최 • APEC 공식 출범 및 APEC 원칙 채택 • 한·미·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총 12개국)
1993	2.12	- APEC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설립
	11.20	- 제 1차 APEC 정상회의 (미국 시애틀, 블레이크 섬) • 공식명칭 :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 경제비전 성명서(APEC Leaders Economic Vision Statement) 채택
1994	11.15	- 제 2차 APEC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보고르) • 보고르 선언 채택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 자유무역 달성을 목표
1995	11.19	- 제 3차 APEC 정상회의 (오사카)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틀을 제시하는 오사카 행동지침 (Osaka Action Agenda) 채택
1996	11.25	- 제 4차 APEC 정상회의 (필리핀 수빅)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제 행동 계획을 명시한 마닐라 행동 계획(Mania Action Plan) 채택 • 개별 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 채택
1997	11.24~25	- 제 5차 APEC 정상회의 (밴쿠버)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³⁾) 15개 분야 승인
1998	11.17~18	- 제 6차 APEC 정상회의 (쿠알라룸푸르)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승인

1999	9.12~13	- 제 7차 APEC 정상회의 (오클랜드) •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및 경제 · 기술협력 (EOTECH) 이행상황 점검
2000	11.15~16	- 제 8차 APEC 정상회의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베가완) • 신경제를 위한 행동계획 채택
2001	10.20~21	- 제 9차 APEC 정상회의 (상해) • 상해 합의, e-APEC Strategy 채택 • 반테러 별도 정상성명 채택
2002	10.26~27	- 제 10차 APEC 정상회의 (멕시코 로스카보스) •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 투명성 성명, 디지털 경제성명 채택 • 반테러와 경제성장 성명, APEC 회원국 내 테러 사태에 관한 정상성명, 북한 관련 별도 정상성명 채택
2003	10.20~21	- 제 11차 APEC 정상회의 (방콕) • 무역 · 투자 자유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강화, 세계 회의 채택 향후 논의 • 보건 안보에 관한 정상성명 채택 • 북한 관련 의장의 구두 발표
2004	11.20~21	- 제 12차 APEC 정상회의 (칠레 산티아고) • 무역 · 투자 자유화, 인간 안보 강화, 지식기반 경제 논의 • 무역확대를 위한 산티아고 구상 채택, 인간 안보 증진, Good Governance와 지식기반 사회 추진을 위한 노력 합의
2005	11.18~19	- 제 13차 APEC 정상회의 (한국 부산) • 무역 · 투자 자유화, 역내 안전문제 협력 강화, 반부패 공동 대책,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공조, 회원국간 투자 활성화 등 논의 • APEC 출범후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와 향후 APEC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 구상 채택,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원 특별성명 채택

자료 : www.apeckorea.go.kr

2) 분야별 조기 자유화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보고르 목표보다 더욱 조속한 시기에 특정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1996년 필리핀 수빅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 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 정도,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간의 이익 균형을 감안하여 15개 분야를 조기 자유화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음. 회원국의 자발성(Voluntarism)과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을 존중하여 논의하되, 주요 논의 내용은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경제 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결정. 15개 대상 분야는 수산물, 임산물, 의료장비, 완구, 보석, 화학, 환경, 에너지, 통신 상호인증(이상 9개 우선 추진분야), 식품, 지

3. APEC의 주요 활동 내역

□ APEC의 주요 활동 내역

- APEC은 설립 초기부터 크게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양대 업무로 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에는 ‘대테러(Counter-Terrorism)’ 분야도 논의되었으며,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보건, 환경, 기술 등 비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의 측면에서 그 동안 APEC의 주요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지종자, 비료, 자동차, 고무, 민간 항공기(이상 6개 후속 추진분야)임. 1998.11. 제10차 각료회의에서 9개 우선추진 분야의 관세부문을 WTO에 이관하여 논의기로 합의하고, 1999.6. 제6차 통상장관회의에서 6개 후속 추진 분야도 WTO에 이관기로 합의. WTO에서는 EVSL을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로 명칭을 변경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 EVSL 15개 분야 중에서 화학과 자동차 분야가 민관 협의체 형식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음.

- 3)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 1993년 시애틀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아·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APEC 활동의 지주로 무역·투자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무역·투자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를 채택하였는데 이 2개를 묶어서 TILF로 약칭하고 있음. 특히, 1995년 오사가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 계획의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가 추진됨.
- 4)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더불어 APEC 활동의 양대 지주의 하나. 제4차 APEC 정상회의(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아·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인적자원 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경제 인프라 강화, 미래를 위한 기술 활용, 환경친화적 지속 성장, 중소기업육성 등 경제·기술협력 6개 분야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1) 시애틀 정상선언 (1993. 11월)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는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의와 그 결과로 발표된 정상 선언문(APEC Leaders' Economic Vision Statement)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APEC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목표임
- 1993년 11월 정상 선언문에서 APEC 정상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촉구함으로써 무역 자유화가 APEC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우선적으로 천명하였고,
- APEC의 목적이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개방적인 세계 교역 시스템을 추구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제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음
-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투자위원회(CTI)를 설치하여 APEC 차원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⁵⁾

5)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 :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에서 설립이 결정된 APEC 산하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와 연계하여 연 3회 개최됨.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흐름의 원활화, 무역 자유화 및 확대를 위한 협력, 회원국간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의 기여 등이 목표임. 특히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해서 오사카 행동지침에서 제안된 15개 분야에서 기업인의 활동 장벽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CTI 산하 11개 소위원회 :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투자전문가그룹(IEG),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지적재산권 전문가 그룹(IPEG), 경쟁정책 규제완화 그룹(CPDG), 정부조달 전문가그룹(GPEG), 기업인 이동 전문가그룹(IEGBM), WTO 능력배양그룹(WCBG), 경제법 인프라강화조정그룹(SELI))

(2) 보고르 선언 (1994. 11월)

-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1994년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정상 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of Common Resolve)을 통해 역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no later than the year 2020)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 선언을 계기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가 APEC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렸으며, 이외에도 역내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음.

(3) 오사카 행동지침 (1995. 11월)

- 시애틀 및 보고르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제정되었음.
- 오사카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정상 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for Action)이외에 별도로 발표된 40여 페이지의 '오사카 행동지침'을 통해
 - 무역·투자 자유화(liberalization)와 무역·투자 원활화(facilitation)는 서로 불가분(inseparable)의 관계임을 천명하고,
 -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시한 이내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으로

- ① 포괄의 원칙(Comprehensiveness)
- ② WTO와의 일관성(WTO-Consistency)
- ③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 ④ 차별금지의 원칙(Non-Discrimination)
- ⑤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
- ⑥ 현상 동결(Standstill)⁶⁾
- ⑦ 동시 시작, 지속 노력 및 차별화된 시한(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tables)
- ⑧ 유연성(Flexibility)
- ⑨ 정책공조(Cooperation) 등을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관세, 비관세 적 무역장벽, 서비스 분야, 투자, 산업 표준, 세관통관 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 구매, 규제완화, 원산지 표시, 무역분쟁 중재, 인력의 이동,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실행,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총 15가지 분야에 있어서 APEC이 목표로 하는 바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음.
- 경제 및 기술 협력 분야에서는 정책공조, 공동 노력 및 정책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적자원 개발, 산업기술 발전, 중소기업 진흥,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운송, 정보통신, 관광, 무역 및 투자 정보, 무역 진흥, 해양자원 보전, 어업, 농업 기술 등 13개 분야에 있어서의 향후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음.

6) 오사카행동지침(OAA : Osaka Action Agenda)의 일반 원칙 중의 하나. 협상시 어떤 특정한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4) 마닐라 실행 계획 (1996. 11월)

- 오사카 행동지침에서 명시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됨.
- 보고르 목표 시한과 관계없이 조기 자유화를 추진할 이른바 ‘분야별 조기 자유화(EVSL)’에 대한 논의가 개시됨
- 현재 무역·투자 자유화는 공동실행계획(CAP)⁷⁾과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매년 개선시키고 있는 개별실행계획(IAP)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5) 상해 합의 (2001. 10월)

- 21세기 들어 최초의 APEC 정상회의는 주요 국가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던 2001년 10월 상해에서 개최되었음.
- 제 9차 상해 정상회의에서는 경기 침체를 활황으로 역전시키고 불확실한 시기에 경제주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WTO와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기구와 공

7) Collective Action Plan : 오사카 행동지침(OAA)에 따라 원활한 무역·투자를 위해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 회원국이 참여 중인 계획. 관세, 비관세조치, 통관절차, 서비스 등 15개 분야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조치를 소관 산하 기구에서 96년부터 작성하고 있음

8) Individual Action Plan : 1995년 채택된 오사카 행동지침에 의거, 관세 등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대상 분야에 대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계획. 회원국은 매년 보완·개선된 IAP를 제출하며, 2001년부터 각국 IAP 보고서를 전자화 하여 www.apec-iap.org에 수록하고 있음.

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함

- 그러나, 상해 합의가 갖는 중요성은 이보다 더 큼. 특히, APEC의 비전을 그 간의 단순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뛰어 넘어 ‘개혁’과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제로 확대하였는데, 예를 들면
 - 경제성장을 지속함과 아울러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광범위한 개발(broad-based development)’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과 ‘구조조정’을 지속하여 이른바 ‘마켓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 건전한 경제정책과 거버넌스(governance), ‘능력 배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각국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명을 채택하였음.
- 이 외에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진행성과를 2005년에 중간평가하기로 하고,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보고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선구자적 접근법’⁹⁾을 도입하였고,

9) 선구자적 접근법(Pathfinder Approach) :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얻기 어려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합의하는 일부 회원국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여타 회원국의 후발 참여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식.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만 실행이 가능한 컨센서스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1년 상해합의에 포함됨. 2002년 정상회의에서 사전승객정보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s), 개정교토협약 이행(The Revised Kyoto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전자적 SPS 인증(Electronic SPS Certification(e-cert)), 전자적 원산지 증명(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전기전자장비 적합성 평가 2,3단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f Conformity Assessment on Electronic Equipment Parts II and III),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IAP의 Peer Review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각 국별 개별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또한, 브루나이 회의¹⁰⁾에서 논의된 ‘e-APEC 전략¹¹⁾’을 구체화한 전략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성명을 채택하였음.

□ 부산 APEC 회의 개요와 성과(2005. 11)

- 제 13차 APEC 정상 회의가 한국의 부산 해운대에서 2005년 11월 18~19일간 개최되었음.

<표 4> 부산 APEC 주요 행사

일 자	행 사	주요 논의 내용
11. 12~13	고위관리회의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의제 사전 조율
11. 14~16	기업인자문위원회	역내 투자 및 기술협력증진방안, 반부패 등 협의
11. 15~16	합동 각료회의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
11. 16~17	투자환경설명회	APEC 회원국간 투자설명회
11. 17~18	CEO Summit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역내 교역 증진
11. 18~19	정 상 회 의	무역자유화, 아태지역안보 등 협의

등 7가지 이니셔티브가 승인됨. 2003년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분야별 식품 상호인증협정, 무역과 디지털 경제성명 이행 계획을 신규 이니셔티브로 추가 승인함.

- 10) 브루나이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역내 모든 회원국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2005년까지는 인터넷 접속을 2000년 대비 3배로 증가시키기로 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음
- 11) 2001년 제 9차 상해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된 전략.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구조 강화 및 인프라 투자·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능력배양 강화 및 기업가 정신 제고를 도모함. 동 전략의 추진을 위해 2001년 한시적으로 e-APEC Task Force 설치한 이후 동 전략은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CSG : E-Commerce Steering Group)에서 계속 논의 중임.

- 부산 APEC의 주요 의제는 역내 안전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반부패 공동 대책 등 5개의 의제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각 의제별 협의 내용은 회원국 정상들의 공동 합의문으로 작성, 발표되었음.

<표 5> 부산 APEC 회의의 주요 의제

구 분	주요 의제
무역자유화 진전	• 역내 교역증진 목표를 제시한 부산 로드맵 마련 • 세계무역기구(WTO)의 DDA 협상 지원
역내 안전문제 협력강화	• 대테러, 에너지 안보, 재난 대응 등 • 선진국과 후진국간 공조체제 강화
반부패 공동대책	• 투명한 교역환경을 위한 반부패 대책반 설치 • 국내외 CEO들 반부패 공동 성명 발표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공조	• 검역체계와 약품 조달 협조 • 2006년 베트남에서 보건장관회의 개최
회원국간 투자 활성화	•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 회의기간중 각국 투자설명회 개최

- 부산 APEC 회의의 주요 성과는 아래 다음과 같음.

(1) 부산 로드맵 채택

- APEC 출범 후 지난 16년간의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및 향후 APEC의 나가갈 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 합의문에 별도 보고서로 첨부하였음.
-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채택한 무역자유화의 주 내용이던 관세 인하 이외에도 지적재산권보호, 국내 규제, 경쟁정책 등의 내

용을 포함함.

- 2010년까지 통관 등 거래비용 5% 감축, 2008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모델 개발을 합의함.

(2)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원 특별 성명 채택

- 각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체제 강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후생증진에 기여한다는데 공감하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수출 및 농업보조금 철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음.
- 각국 정상들은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담에서 협상을 진전시켜 2006년까지 DDA협상(Doha Development Agenda)을 타결할 것을 결의함.

(3)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합의

-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각국 정상들은 이에 공감하고 사회적차 해소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을 합의함.
- 한국은 이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2007년부터 3년간 2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함.

(4) 각국 기업인들 활발한 토론 및 협의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에서는 무역자유화, 에너지 안전 확보,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대비책 마련 등을 협의 및 건의함.
- APEC 정상들도 ABAC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제시한 의제를 놓고 토의하였음.

* ABAC : APEC의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약자로 APEC 정상들의 공식 민간 자문기구 역할을 함. 총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핵심의 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의제를 정리해서 정상들에게 건의함.

(5) 노무현 대통령, 각국 정상과 양국간 정산회담 개최

-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기간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4. APEC의 조직 및 APEC의 특징

□ APEC의 조직

(1) APEC 사무국(APEC Secretariat)

- 1993년 2월 싱가포르에 설치되었으며, 각 회차별 APEC의 각종 회의 개최와 사업기금 운영 및 대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예산을 절감하고 회원국 주도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의장 국가)과 사무차장(다음해 의장 국가)을 포함한 24명의 정규직원이 각 회원국에서 파견되어 근무함.

(2) APEC 협의 체계

- 회의 유치국이 의장국이 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각급 회의를 개최

<표 6> 역대 APEC 의장국

년도	개최국	년 도	개최국
1993	미 국	2002	멕시코
1994	인도네시아	2003	태국
1995	일본	2004	칠레
1996	필리핀	2005	한국
1997	캐나다	2006	베트남
1998	말레이시아	2007	호주
1999	뉴질랜드	2008	페루
2000	브루나이	2009	싱가포르
2001	중국		

- APEC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각급 회의로는
 -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분야별 장관회의 및
 - 고위관리회위(Senior Officials' Meeting) 등이 있음.
- 각급 회의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 정상회의는 APEC의 비전과 경제현안을 협의하고,
 - 각료회의는 매년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며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제안함
 - 정상회의의 결과는 정상선언(Declaration)으로, 각료회의 결과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으로 발표됨
 - 기업인 자문위원회는 '96년 4월 APEC에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출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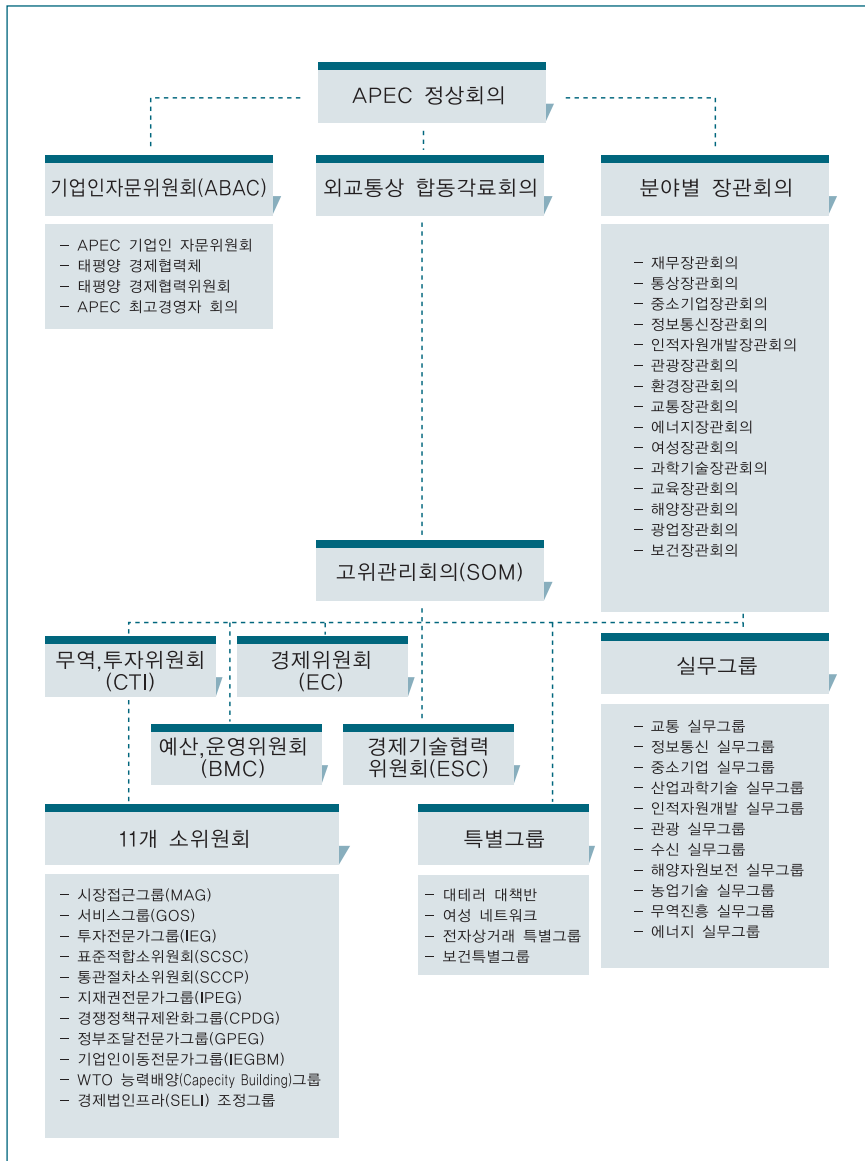
-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논의한 사항을 정상회의에 제안함
- APEC의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회의는 일년에 4~5 번 열리며, 4개의 위원회와 11개의 소위원회 및 11개의 실무그룹, 기타 특별그룹의 활동을 점검함.

□ APEC 운영상의 특징

- 회원국의 자발적 협력과 컨센서스(총의)로 의사결정을 함.
- 회원국의 주도하에 각급 회의를 운영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추구함
- 정상, 각료 및 고위관리들의 격식 없는 비공식 협의를 통하여 지도자들 간에 인간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함.
- 기업 인사문위 위원회(ABAC)와의 대화,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 정상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지역차원의 민간기구(PECC, PBEC 등)와도 협력을 추구함.
- APEC은 국가 명칭 및 국기(國旗)를 사용하지 않음. 회원국을 '국가(country)'로 지칭하지 않고 '경제체제(economy)'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은 각각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와 홍콩차이나(Hong Kong, China)로 표기함.

<그림 1>

APEC의 조직



자료 : www.apeckorea.go.kr

-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도 정상회의라고 칭하지 않고, APEC 경제지도자 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AELM))라고 칭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에 위치한 사무국도 국제기구의 지위를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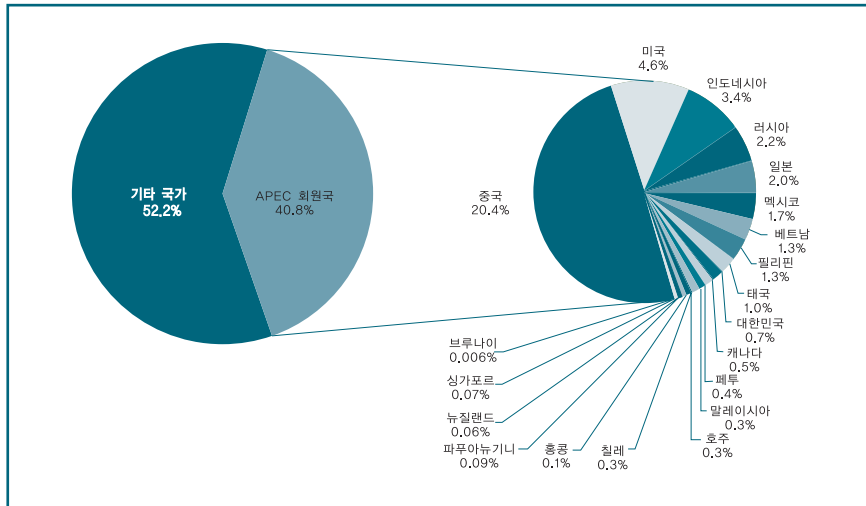
□ APEC 조직의 특징

- (1) 규모가 매우 큰 경제공동체 : 전 세계 인구의 40.8%가 APEC 회원국의 국민이며, 총 면적은 세계 면적의 약 47%를 차지함.

태평양경제협력회(PBEC)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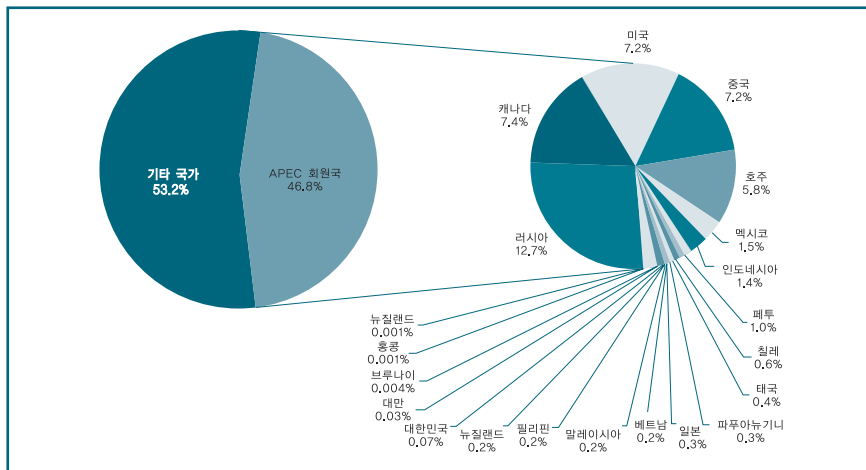
- 2005년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64억 6천5백만 명)를 1,0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중 408명이 APEC 회원국 국민임.
- 중국 인구가 절반인 204명이고, 미국이 46명, 인도네시아 34명,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22명과 20명이고 우리나라는 7명임.
- 한편, 1명 내외인 인구 소국은 파푸아뉴기니(0.09%), 싱가포르(0.07%), 뉴질랜드(0.06%), 브루나이(0.006%) 등임.
- UN 경제사회국은 2005년 현재 26억 4천만명인 APEC 역내 국민이 10년 후에는 28억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붙임 1〉의 APEC 회원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참조)

<그림 2> 전 세계에서 APEC 회원국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2005.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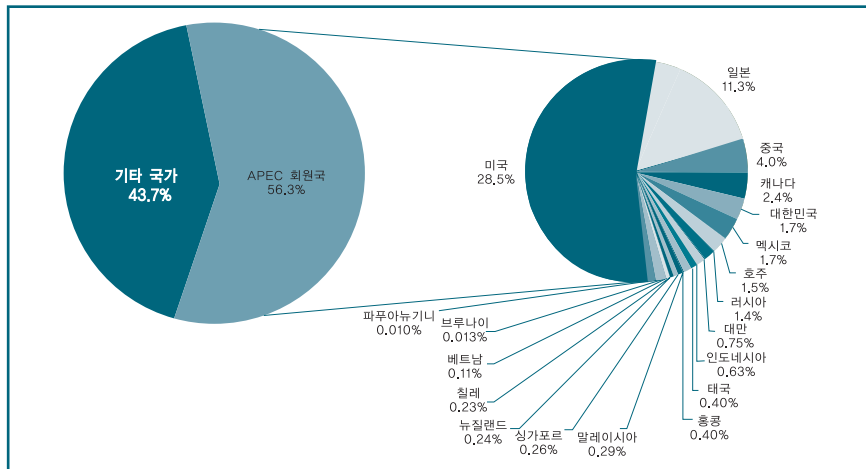
<그림 3> 전 세계에서 APEC 회원국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전세계 GDP의 약 56%를 차지하고 총교역량의 약 45%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임.

<그림 1-4> 전 세계에서 APEC 회원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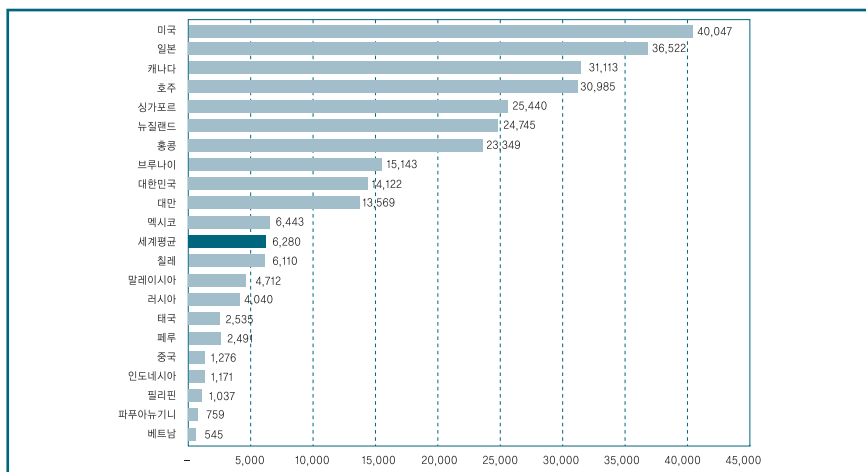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2) 회원국간 차이가 매우 큰 공동체

- APEC의 회원국은 회원국간 격차가 매우 큰 경제 협력체임. 일례로, 브루나이의 인구는 약 36만명으로 APEC의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 인구의 0.03%에 불과함.
- 한반도의 77배가 넘는 1,708만 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있는 반면, 한반도의 330분의 1에 불과한 684 km²의 싱가포르도 존재함.

- 1인당 GDP의 경우 가장 낮은 베트남의 경우 1인당 1일 평균 1.5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살아가지만(2004년 1인당 GDP : 545달러),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1인당 1일 평균 110달러(2004년 1인당 GDP : 40,047달러)로 베트남의 73배를 상회함

<그림 5> APEC 회원국 1인당 GDP (2004년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5

(3) 매우 다양한 성격

-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APEC 회원국은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우선 국가 체제 측면을 살펴보면, 단일국가이면서 민주공화국인 나라(칠레)로부터 입헌군주국(파푸아뉴기니), 왕정국가(브루나이), 연합국가(멕시코), 연방국가(러시아), 국가가 아닌 특별 행정구역(홍콩) 등 다양한 국체(國體)가 공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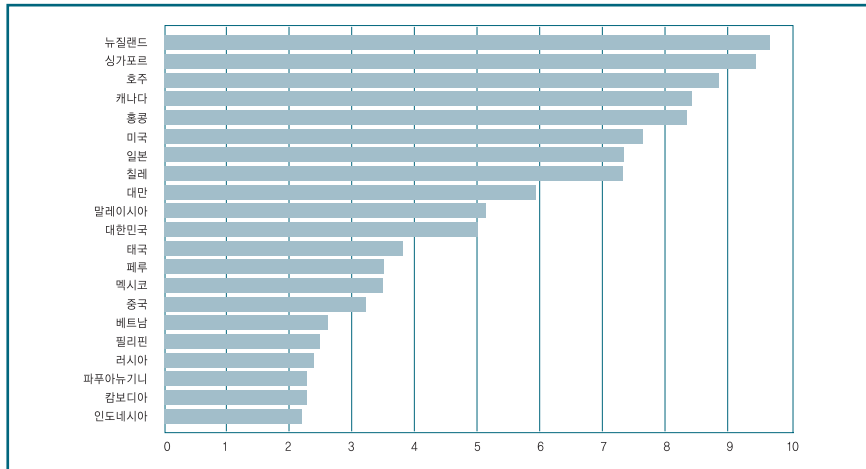
- 이들 국가 중 역사가 200여년에 불과한 국가(미국)와 2차 대전 종전을 계기로 독립한 국가(필리핀)로부터 수천 년에 이르는 독립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태국)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도 다양하며,
- 사회주의 공화국(베트남)으로부터 개방경제 도상에 있는 국가(중국)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첨병(미국)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 전 인구의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일본)도 있지만 300여개가 넘는 민족이 공존하는 나라(인도네시아)도 있으며, 전 인구의 대부분이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페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대한민국)도 있음.

<표 7> APEC 회원국의 국체(國體) 현황

군 주 국			공 화 국			특별 행정 구역
왕정 국가	입헌군주국		사회 주의	민 주 주 의		
	연방 또는 연합국	단일 국가		연방 또는 연합국	단일 국가	
브루 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태국	베트남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체제 전환국 : 중국, 러시아		칠레 페루 대만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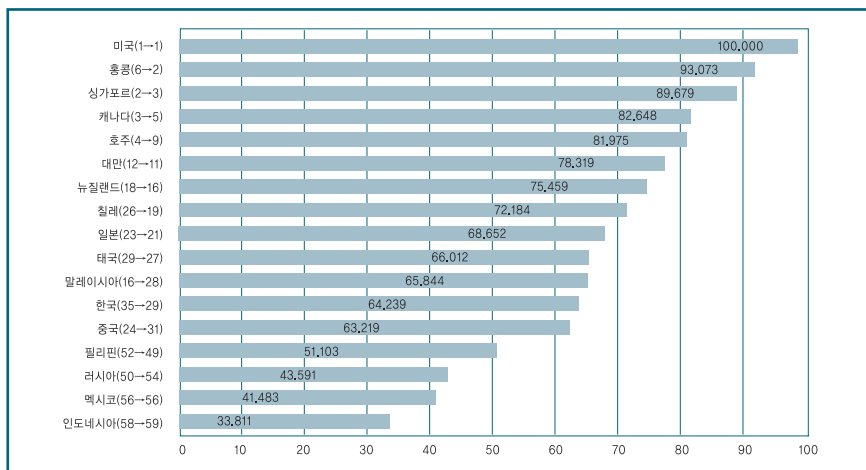
- 한편, APEC 회원국의 투명성이나 국가 경쟁력 지수 또한 국가별로 격차가 큰 편임

<그림 6> 2005년 APEC 회원국의 투명성 지수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5.10

<그림 1-7> APEC 회원국의 경쟁력 지수



주 : 국가명 (2004년 순위 → 2005년 순위)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2005



2005년 11월 29일 제 11차 국회 No 59/2005/QH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통과

투 자 법

2001년 12월 25일 제 10 대 국회, 10 차 회의 결의안 No.
51/2001/QH10 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에 근거하여:

본법은 투자활동에 대해 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조정 범위

본법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
의 합법적 권익의 보장, 투자 우대 및 장려 분야, 베트남 내 투자 및 베트
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침에 대해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1. 베트남 영토 및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내국 및 외국투자자.
2. 투자활동에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

제 3 조. 용어 설명

본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투자자라 함은 투자자가 본법 및 관련법의 규정들에 따라 각종 유형 또는 무형으로 이루어진 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형식이다.
3.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자가 지분,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 증권투자기금의 매입 또는 기타 금융중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되, 투자자는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형식이다.
4. 투자자라 함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a)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구성원들에 속한 기업
 - b)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연합
 - c)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자본기업
 - d) 개인 사업자, 개인
 - e) 외국의 개인 혹은 단체, 재외 베트남 교포,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 f)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각 단체

5. 외국투자자라 함은 베트남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외국투자자본기업이라 함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지분의 매입, 합병, 인수를 행한 베트남 기업으로 구성된다.
7. 투자활동이라 함은 투자준비, 투자진행 및 투자프로젝트 관리로 이루어지는 투자과정에서 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8. 투자프로젝트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투자활동들을 진행하는 중·장기 자본 출자를 위한 계획들의 조합을 말한다.
9. 투자자본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투자형식에 따른 투자활동들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과 기타 합법적인 자산들을 말한다.
10. 국가자본이라 함은 국가 예산에서 출현된 개발투자자본,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자본, 국가 개발투자금융 및 기타 국가투자자본을 말한다.
11. 투자주(主)라 함은 자본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 혹은 자본 소유주를 대리한 자(者) 또는 자본을 차입한 자(者), 투자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자본을 직접 사용, 관리하는 자(者)를 말한다.
12. 외국투자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자금과 기타 각종 합법적인 자산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내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가 자금과 기타 각종 합법적인 자산을 출자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외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자금과 기타 각종 합법적인 자산을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건부 투자분야라 함은 법률이 규정하는 구체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투자를 실행 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16. 경영협력계약(이하 BCC로 칭함)라 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의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 형식을 말한다.
17. 건설-경영-양도계약(이하 BOT로 칭함)라 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는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18. 건설-양도-경영계약(이하 BTO로 칭함)라 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경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19. 건설-양도계약(이하 BT라 칭함)라 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20. 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공업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계가 확정된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1. 수출가공구라 함은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경계가 확정된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2. 첨단기술단지라 함은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기업 양성, 첨단기술 인력 교육,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및 경영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경계가 확정된 특정 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을 말한다.
23. 경제지구(economic zone)라 함은 투자자들의 투자 및 경영에 특별히 유리한 여건이 주어진 독립된 경제 공간으로 확정된 경계를 가지며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을 말한다.

제 4 조. 투자관련 정책

1. 투자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 부문, 직종에 투자 할 수 있고,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투자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국가는 경제구성원 내 모든 투자자들 및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평등한 법적 대우를 한다. 또한, 국가는 투자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조건을 조성한다.
3.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수입, 기타 합법적인 각종 권리 및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각종 투자활동들의 존재 및 장기적 발전을 인정한다.
4. 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투자관련 국제 조약들의 이행을 보증한다.
5. 국가는 투자 우대분야 및 지역들에 대한 투자에는 장려 및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제 5 조. 투자법, 국제 조약, 외국 법률, 국제투자 관습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본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2.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서 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 외국 법률과 국제 투자 관습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각 측은 외국 법률 및 국제 투자 관습의 적용에 대해 계약서 상에서 합의 할 수 있다.

제 2 장

투자 보장

제 6 조. 자산 및 자본에 대한 보장

1. 투자자의 합법적인 투자자본 및 자산은 국유화 되지 않으며, 행정 조치로 압류 되지 않는다.
2. 국익, 안보, 국방상의 이유로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징수, 징발 이 공포되는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지불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불 혹은 보상은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외국투자자에 대해 당(當)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한 지불 혹은 보상은 국제통용 통화로 이루어 지며, 투자자는 이를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징발, 징수의 조건 및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제 7 조. 지적 재산권의 보호

국가는 투자활동에서 투자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들에 의거 베트남에서 기술의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제 8 조.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의 개방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의 규정들에 맞추어, 국가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해 다음 규정들의 이행을 보장한다.

1. 국제 조약에서 약속한 일정에 맞춘 투자 시장의 개방.
2.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a) 국내 상품, 서비스의 우선적 구매 및 사용 또는 특정한 국내 생산자 혹은 서비스 공급자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구매 및 사용
 - b)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상품의 가치, 상품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 c) 수출 상품의 수량 및 가치에 상응하는 수입 상품의 수량 및 가치, 수출로부터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 균형 유지(외환에 대한 교역 균형의 유지)
 - d)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 e) 국내에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일정 비율의 가치 혹은 수준의 달성
 - f) 국내 혹은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 g) 특정한 지점에 본사의 설치

제 9 조.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1.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제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합법적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 a) 경영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 b)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c)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 d) 투자자본, 투자종결 후의 기타 각종자산
 - e)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2. 베트남에서의 진행되는 각종 투자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제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 할 수 있다.
3. 상기 항목들에 대한 국외 반출은 투자자가 선택한 무역은행에서 외환 환전 시세에 따라 국제 통용 통화로 이루어진다.
4. 투자활동관련 상기 항목들의 해외 송금 수속은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요금, 경비, 수수료에 대한 통일적 적용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 경비,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제 11 조. 법률, 정책 변화의 경우에 대한 투자 보장

1. 새로운 법률, 정책에서 규정된 권익과 혜택이 투자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권익과 혜택 보다 더 우호적인 경우, 새로운 법률, 정책이 효력을 가질 때로부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 정책의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는다.
2. 새로운 법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

법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하나 혹은 일부, 또는 다음의 각 조치들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 a)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계속적 향유
 - b)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c)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d)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3. 법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에 근거하여, 법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1.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화해, 중재 또는 법원에서 이를 해결 한다.
2.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기업들 사이 혹은 국내기업과 베트남 국가기관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베트남 중재 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이를 해결한다.
3. 분쟁의 발생시 한 측이 외국투자자이거나 외국투자자본기업인 경우, 또는 외국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 혹은 단체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 a) 베트남 법원
 - b) 베트남 중재 위원회
 - c) 외국 중재 위원회
 - d) 국제 중재 위원회
 - e)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상에 특정한 합의 조항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영토상에서 이루어진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중재 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 3 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 13 조. 투자와 경영의 자주권

1. 투자 분야, 투자 형식, 자본 동원 방식, 투자 지역, 투자 규모, 투자 파트너 및 프로젝트의 활동시 한에 대한 선택권.
2. 하나 혹은 여러 분야와 직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법 규정에 따른 기업 설립, 등록을 마친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제 14 조. 투자 재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

1. 각종 금융, 지원기금의 사용, 법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자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동등한 대우.
2.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의 기계, 설비의 임대 혹은 구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규정이 있고,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 인력의 고용, 경영상 혹은 생산상의 필요에 따른 외국 관리자, 기술자, 전문가들의 고용.

제 15 조. 투자활동 관련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권한

1. 투자활동 실행을 위한 기계, 설비, 원료, 자재, 상품에 대한 직접 수입 및 위탁 수입, 또는 상품의 직접 혹은 위탁 수출 및 상품의 판매 권한.
2. 자신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마케팅 권한, 광고 사업권을 가진 단체와 직접적 광고 계약 권한.
3. 상품의 가공 및 재가공, 국내에서 가공 및 재가공의 발주, 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의 가공 발주 권한.

제 16 조. 외환 매입권

1. 투자자는 외환취급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 외환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른 각종 교환거래, 자본거래, 기타 각종 교역들을 위해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2. 정부는 에너지, 교통 기반시설, 폐수처리 분야관련 일부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외환의 균형을 보장하거나 외환의 균형을 지원한다.

제 17 조. 투자자본 또는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및 양도 권한

1. 투자자는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조정과 양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만일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 측은 베트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양도,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상기 경우들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다.

제 18 조.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의 담보 설정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

동이 허가된 각종 금융기관에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투자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을 차입 할 수 있다.

제 19 조. 투자자의 기타 권한

1. 본법 및 각종 연관 법의 규정들에 따른 우대혜택 향유 권한.
2. 차별 대우 금지 원칙에 따른 공적 서비스의 사용 및 접근 권한.
3. 투자 관련 각종 정책, 법률 자료, 투자활동 관련 각종 국가, 지역별 경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투자활동 관련 기타 경제-사회 정보들에 대한 접근 권한 및 투자 관련 정책, 법률에 대한 의견 개진 권한.
4. 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조직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청원, 고소, 제소권한.
5.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권한의 행사.

제 20 조. 투자자의 의무

1. 투자 수속 관련 법 규정 준수, 투자증명서에 규정된 내용 및 투자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서류, 투자등록 내용의 성실성, 정확성 및 각종 인증 서류들의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이 규정하는 제정 의무의 충실한 이행.
3. 정리, 회계, 통계에 대한 법 규정의 준수.
4. 법에 규정된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의 인품과 명예 존중,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5. 노동자의 정치-사회 단체 설립,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6.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7.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제 4 장

투자 형식

제 21 조. 각종 직접투자 형식

1. 국내 혹은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2. 국내 및 외국투자자들 사이의 합자로 경제단체 설립.
3.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4. 사업개발투자.
5.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6.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7.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적 투자.

제 22 조. 경제단체 설립 투자

1. 본법 21조에 규정되어있는 투자형식들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경제단체들을 설립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 a)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b)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 c)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d)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단체들
2. 당(當)조 1항에 규정된 경제 조직들 이외에, 국내투자자는 조합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조합, 조합 연합의 설립에 투자 할 수 있다.

제 23 조. 계약서에 따른 투자

1.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경영 시한, 각 측의 권리, 의무, 책임, 각 측의 협력관계,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각 측이 협의하여 계약서상에 명기 한다. 유전의 탐사, 조사, 개발을 위한 BCC 계약 및 일부 자연 자원에 대한 생산물 분배 형식의 계약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수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다. 정부는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분야, 투자프로젝트 진행 조건, 절차, 수속, 투자프로젝트의 진행방식 및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 측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제 24 조. 경영 개발 투자

투자자는 아래의 형식들을 통해 경영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1.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2.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제 25 조. 자본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 합병

1.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 할 수 있다. 일부 분야, 부문, 업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비율은 정부가 규정한다.

2. 투자자는 기업 및 지사를 인수, 합병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본법, 경쟁에 관한 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간접투자

1. 아래의 형식들에 따라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간접투자를 진행 할 수 있다:
 - a)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매입을 통해
 - b) 증권 투자기금을 통해
 - c)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2. 간접투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연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제 1 절 투자 분야 및 지역

제 27 조. 투자 우대 분야

1. 새로운 자재,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 분야.
2. 농·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

- 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3. 첨단 기술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4. 노동자 고용 수요가 큰 분야.
 5.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7.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8.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제 28 조. 투자우대 지역

1.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2. 공업 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제 29 조. 조건부 투자 분야

1. 조건부 투자 분야의 구성:
 - a)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b) 금융 및 은행 분야
 - c)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d)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e)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f) 부동산 사업
 - g)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h)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i)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2. 당(當)조의 1항에 규정된 분야들 이외에,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에서 확약한 이행 예정 조항에 속한 투자 분야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추가로 포함된다.

3. 외국투자자본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은 분야들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활동 과정 중에 기(既) 투자한 분야가 조건부 투자 분야의 목록에 새로이 보충 포함되었다면, 투자자는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 할 수 있다.
4.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각 시기별 경제 사회 개발 요구에 근거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조항들과 부합되도록, 정부는 외국 투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 단체의 설립, 투자 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 개방에 대해 규정한다.

제 30 조.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2.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3.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4.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제 31 조. 우대 투자 분야 및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목록 공포

1.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방향 및 계획,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규정들에 근거

하여, 정부는 투자 우대 분야, 투자 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금지 분야의 목록을 공포 혹은 개정, 보충한다.

2. 각 부(部) 및 부급(部級)기관, 성(省)인민위원회, 중앙직속 시(市)인민위원회(이하 성급(省級)인민위원회라 칭함)는 법률의 틀을 넘어서서 투자 금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우대 분야들 관련 규정을 공포 할 수 없다.

제 2 절 투자 우대

제 32 조. 투자우대 대상 및 조건

1. 본법 27조와 28조에 규정된 투자 우대 지역 및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당(當)조의 1항에 규정된 투자 우대 사항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능력 및 효율의 향상, 기술 혁신, 상품의 질 향상, 환경의 오염의 축소 관련 투자프로젝트에도 적용 된다.

제 33 조 세금우대

1. 본법의 32조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 혜택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제단체가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투자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기 경제단체의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

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 된다.

4.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 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제 34 조. 손실의 이월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 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35 조.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과급 효과가 큰 경영 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 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제 36 조.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1.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 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보다 장기적인 시한이 요구 되는 경우 70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토지를 교부, 임대 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투자자가 토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계속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기관은 확정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맞추어 토지 사용 시한에 대해 연장을 검토한다.

2. 투자 우대 분야 혹은 투자 우대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다.

제 37 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및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혜택들을 규정한다.

제 38 조. 투자우대 시행 수속

1. 본법의 제 45조에 규정된 투자등록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투자등록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속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는 자신이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항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 우대 조건 및 사항들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 수속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 우대 사항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경우 투자등록 수속을 밟아 투자관리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우대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2. 본법의 47, 48, 49조에 규정된 투자심사 분야에 속하며, 우대 조건을 충족 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우대 사항을 투자증명서에 명기한다.
3.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투자자본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투자 우대 사항을 명기한다.

제 39 조. 우대혜택 확대 적용의 경우

특별히 중요한 어느 한 분야 혹은 특정한 한 지역, 한 경제지구의 개발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법에 규정된 투자 우대정책들 이외의 기타 투자 우대혜택들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 3 절 투자 지원

제 40 조. 기술 이전 지원

1. 국가는 기술 이전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투자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로 자본을 출자하는 각 측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여건을 조성한다.
2. 국가는 선진기술 및 원천기술, 새로운 상품의 생산, 상품의 생산성, 경쟁력, 품질의 향상, 원료, 연료, 에너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의 베트남 이전을 장려한다.

제 41 조. 교육지원

1. 국가는 국내외 개인과 단체의 자본 출자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인력교육지원기금의 설립을 장려한다. 기업의 교육경비는 합리적 경비로 계산되고 법인세 산출 시 근거로 활용된다,
2. 국가는 국가 예산에서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업들의 노동자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제 42 조. 투자관련 서비스 발전 장려 및 지원

국가는 아래와 같은 투자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을 지원, 장려한다.

1. 투자 자문, 관리 자문.
2. 지적 재산권 자문, 기술 이전 자문.
3. 직업 교육, 기술 교육, 관리 노하우 교육.
4.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과학기술 정보, 기타 기술 및 경제, 사회 정보의 공급.
5. 마케팅, 투자 및 무역 촉진.
6. 사회 단체, 사회-직업 단체의 설립, 참여.
7.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실험 센터의 설립.

제 43 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1. 정부에 의해 승인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관련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 각 부급 기관, 성급인민위원회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 내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외부 지역에 기술 기반시설과 사회기반 시설망을 건설한다.
2.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과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 위치한 일부 지방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자본을 지방에 지원하여, 정부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투자자와 함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내의 기반시설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는 국가 예산 및 우대금융에서 출현한 자본으로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 내의 기술기반 시설과 사회기반 시설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단지, 경제지구의 기반시설 개발투자를 위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강구한다.

제 44 조. 입국, 출국 비자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투자자, 전문가, 기술자와 가족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며, 이때 비자의 최장 발급 기간은 5년이다.

제 6 장

직접투자활동

제 1 절 투자 수속

제 45 조. 국내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수속

1.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VND)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는 투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VND) 이상 3000억 베트남동(VND) 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한다.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성급 투자관리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3. 투자등록 내용의 구성:
 - a) 투자자의 법적 자격
 - b)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 장소

- c) 투자 자본, 프로젝트 시행계획
 - d) 토지 사용 면적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약속
 - e) 투자 우대건의 사항 (만일 해당 사항이 있다면)
4.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 46 조.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수속

1.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 동(VND)이하,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에서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2. 투자등록 서류의 구성:
 - a) 본법의 45조 3항에 규정된 서류 및 내용
 - b)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 c) 합자 계약서 혹은 BCC 계약서, 기업정관(만일 있다면)
3.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갖춘 투자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47 조. 투자프로젝트 심사

1. 국내의 투자프로젝트 혹은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 이상,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투자 심사는 충분한 양식을 갖춘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초과 할 수 없고, 단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시간이 다소 늘어 날 수는 있으나, 4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3.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는 국회가 프로젝트의 투자 방향 및 기준을 결정하며, 정부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수속, 절차 및 투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4. 정부는 투자증명서 심사 및 발급 관련 권한의 위임에 대해 규정한다.

제 48 조.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상으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 심사수속

1. 투자 심사 서류의 구성:
 - a)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b) 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
 - c)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 d) 프로젝트의 목적, 투자 지점, 투자 규모, 투자 자본, 투자 이행 계획, 기술 설명서, 환경 설명서로 구성된 경제-기술 설명서
 - e) 외국투자자는 합작 계약서, BCC 계약서, 기업정관(만일 있다면)
2. 심사 내용의 구성:
 - a) 기술 기반시설 개발계획, 토지사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기타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 b) 토지 사용 면적
 - c) 프로젝트 이행 계획
 - d) 환경문제관련 해결책

제 49 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의 심사수속

1.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하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수속 규정:
 -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 설명서,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5조 3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외국 자

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6조 2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각 조건들에 대한 심사
2.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VND)이상으로 조건부 투자분야
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수속 규정:
-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본법의 48조 1항
에 규정된 심사 서류
 -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만 하는 조건 및 본법의 48조 2항에
규정된 내용 심사

제 50 조. 경제단체 설립 관련 투자 수속

1.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갖추고 있
어야 하며 투자관리국가기 관에서 투자 심사를 받거나, 투자등록 수
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
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 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되어 이미 설립된 경제단체가 새
로운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를 진행 하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젝
트 실행 수속을 진행하되 반드시 새로운 경제 단체를 설립 할 필요는
없다.
3. 경제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국내투자자는 기
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며, 본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수속을 진행한다.

제 51 조.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1.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시한 관련 투자프로젝
트의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는 다음의 수속에 따른다.

- a)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조정 내용을 결정하고 조정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투자관리국가기관에 등록한다.
 - b) 투자심사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해당 관할 투자관리국가기관별로 투자프로젝트 조정 건의서를 제출하여 조정 심의를 받도록 한다. 투자프로젝트 조정 건의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조정 사유, 기(既) 심사내용과 조정 신청 내용상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투자관리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구비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조정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투자프로젝트의 조정은 투자증명서의 내용을 조정,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제 52 조.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시한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은 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부합하되,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활동시한의 연장을 결정 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투자증명서 상에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을 명기한다.

제 53 조. 프로젝트 수립, 투자 결정, 투자 심사에 대한 책임

1.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하며, 투자등록 내용 및 투자 관련 서류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등록된 투자관련 약속을 이행 해야 할 책임을 진다.
2. 프로젝트의 수립, 투자 결정, 검토, 투자 증명 관련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제안과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 54 조.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선정한다.

제 2 절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제 55 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1. 토지 사용의 요구가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 토지관리기관과 접촉하여 토지 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의 교부, 임대관련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투자자가 토지를 이미 교부 받았으나 규정된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증명서도 회수한다.

제 56 조. 건설 부지의 준비

1.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의 교부 혹은 투자자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의 책임을 진다.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 정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채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력으로 보상 및 부지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 및 부지 정리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토지 사용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프로젝트 실시지역 소재 법적 해결권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부지를 교부하기 전에 부지정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 수용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이 투자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임대 가능하고, 개인 또는 세대 또는 경제단체의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을 출자 받을 수 있다.

제 57 조.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투자프로젝트는 자연자원, 광산법 규정을 따른다.

제 58 조.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1.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 설계, 예산, 총예산에 대한 수립, 심사 및 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투자자는 환경보호 및 건조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9 조. 기계, 설비의 감정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고정자산으로 납입되는 수입기계, 설비의 가치 및 품질을 감정할 책임을 진다.

제 60 조. 베트남 시장에서 상품의 소비(판매)

1.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

(판매) 할 수 있고, 상품 소비(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베트남 내의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의 상품을 소비(판매)하는 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인 경우, 판매가격은 국가관계기관이 공포하는 가격 체계에 따른다.

제 61 조. 외환 계좌, 베트남동(VND)계좌

1.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은행에서 외환계좌 및 베트남동(VND)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가은행이 승인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 할 수도 있다.
2. 국내 은행 및 외국의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을 따른다.

제 62 조. 보험

투자자는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보험 사업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산 보험과 기타 각종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 63 조. 관리 단체에 대한 용역

1.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관리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들에 대해 투자활동 및 경영활동관리를 관리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계약서 내에 명기된 관리활동 제반 문제들과 연관된 관리

업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관리업체는 투자 관리와 경영활동 관리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며, 계약서 상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 및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서 범위 밖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4 조.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투자증명서의 회수

1.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투자관리국가기관에 통보하여 프로젝트 일시 정지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투자증명서가 발급 된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 할 능력이 없다면 투자증명서를 회수 한다.

제 65 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따라 이행된다.

1. 투자증명서 상 명기된 활동시한이 종결된 경우.
2. 계약서, 기업정관에 명기된 활동 종결의 조건 혹은 투자 이행 계획에 관한 각 투자자들 사이의 합의, 약속에 따라 종결된 경우.
3. 투자자의 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경우.
4.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관리국가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 중재위원회, 결정, 판결에 따른 활동 종결의 경우.

제 66 조. 중요한 일부 프로젝트와 건조물에 대한 국가의 보증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중요한 투자프로젝트들을 선정하고 차입자본, 원자재의 공급, 상품의 소비(판매), 지불, 프로젝트

관련 각종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며, 보증을 담당할 관할 국가기관을 지정한다.

제 7 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제 67 조.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 관리

1.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계획 및 전략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반드시 사용 목적이 분명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자본별, 투자프로젝트 종류별로 적합한 관리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투자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3. 법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을 투자 또는 기타 각 경제 구성원들과 합자와 제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가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투자단계 별로 각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시키며, 국가자본 사용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국가관리의 권한 위임 및 업무 분장을 시행한다.
5. 투자는 법률 및 이행 진행 계획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투자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낭비, 비공개, 손실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제 68 조. 경제단체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1. 국가 예산에서 출연한 투자자본의 경제단체에 대한 출자는 국가자본투자 및 국영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국가자본투자 및 국영기업은 국영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한회사(limited companies)의 복수 이상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국영기업 혹은 신설 주식회사에서 국가자본의 소유권을 대리한다.

3. 정부는 국가자본투자 및 운용 총회사의 활동, 조직을 규정한다.

제 69 조. 공익 활동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1. 국가는 계획의 배정, 상품의 발주 또는 입찰 실시를 통해 공익 상품, 서비스의 공급 및 생산에 투자 한다.
2.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 구성원에 속한 모든 개인, 단체는 공익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생산에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공익 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공익 상품 및 공익 서비스관련 목록을 작성, 공포한다.

제 70 조. 국가개발투자금융자본을 통한 투자

1. 국가개발투자금융자본이 사용되는 대상은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대출자본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경제프로그램 또는 일부 중요한 분야와 부문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들 이다. 국가개발투자금융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재정방안, 차입자본 상환방안에 대해 대출담당기관의 심사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의 개발투자금융자본으로부터 지원되는 투자지원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시기별 금융지원 수혜 대상 및 대출 조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제 71 조. 국가자본이 사용되는 투자프로젝트의 관리를 위임 받은 개인, 단체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위임 받는 개인과 단체는 자본의 효과적 사용, 자본의 보전 및 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개인 혹은 단체 또는 기업에서 국가의 지분을 대리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국가자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 72 조. 투자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연기, 정지, 파기

1. 투자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주(主)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경 사유 및 변경 사항을 밝히고 관할 국가기관에 보고하여 이에 대해 심사, 결정토록 하며, 만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경우 투자주(主)는 반드시 프로젝트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문서로 프로젝트 내용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자주(主)는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한다.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자프로젝트는 연기, 정지, 파기 될 수 있다.
 - a) 투자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투자주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할 국가기관이 문서로 승인 하지 않은 경우
 - b) 프로젝트 목적을 변경하였으나,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문서상으로 통보 받지 못한 경우
4. 투자프로젝트를 연기, 정지 혹은 파기를 결정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해당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 73 조. 프로젝트 진행 입찰자의 선정

국가의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자문, 물품의 구매, 건설을 담당할 입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 8 장

해외투자

제 74 조. 해외투자

1. 베트남법 및 투자지(地)의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2. 국가는 해외투자활동에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해외 베트남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3. 모든 경제구성원에 대한 평등, 동등 대우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는 각종 금융 자본들에 대한 투자자의 원활한 접근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 특별장려 분야에 속한 해외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본 차입을 보증 한다.

제 75 조. 해외투자 장려 분야,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는 노동자 송출 수요가 큰 분야, 베트남 전통 분야와 업종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분야, 투자지(地)의 자연자원 개발 분야, 수출 가능성 및 외화 획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베트남의 경제단체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한다.

2. 국가기밀, 안보, 국방, 역사, 문화,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국가는 해외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 76 조. 해외투자 조건

1. 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a) 해외투자프로젝트
 - b)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의 충실한 이행
 - c) 투자관리국가기관이 발급한 투자증명서
2. 간접투자 형식에 따른 해외투자는 은행법, 증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들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만 한다.
3. 국가자본을 사용하여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자본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77 조. 해외투자자의 권리

1. 투자국 및 투자지역의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투자프로젝트를 승인을 받은 이후,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2.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 사항 관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는 자신이 해외에 설립한 기업 및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 · 채용 할 수 있다.

제 78 조. 해외투자자의 의무

1. 투자국의 법률 준수.
2. 해외투자로 발생한 소득 및 이익의 법규정에 따른 본국 송금.
3. 해외투자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정기보고 활동 이행.

4. 본국에 대한 재정의무의 충실한 이행.
5. 해외투자 종결 시, 법 규정에 따라 모든 자본 및 합법적 자산의 본국 이전.
6. 투자자가 당 조의 2항과 5항에 규정된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한 각종 소득, 이윤, 자산, 자본의 본국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 79 조. 해외투자 수속

1. 해외투자의 구성:

- a)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VND)이하의 프로젝트로 투자 등록 프로젝트
- b)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VND)이상의 프로젝트로 투자 심사 프로젝트

2. 투자등록 및 투자심사 수속 규정:

- a)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b) 투자심사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증명서 발급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해외투자 관련 장려, 금지, 제한 분야, 투자조건,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정책 및 해외투자의 절차, 수속, 관리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제 9 장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제 80 조.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1. 개발투자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도.
2. 투자 관련 법률규범 문건들의 공포 및 이행.
3.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안내, 투자자의 요구 사항 및 장애 사항 해결.
4. 투자증명서 발급 및 회수.
5. 투자활동 안내, 평가, 감독, 감사 및 청원, 고소의 해결, 투자활동에 대한 포상 및 투자활동 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6. 투자활동과 관련된 인력 자원 교육 활동 개최.
7. 투자 촉진 활동.

제 81 조. 투자관련 국가 관리의 책임

1. 정부는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통일 적용한다.
2. 기획투자부는 정부에 투자활동관련 국가관리 업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각급 부, 부급 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의 범위 내에서 투자관련 국가관리 담당 업무를 책임지고 실행한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투자관련 국가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 82 조.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 관리

1. 정부는 개발계획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 보고, 비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투자프로젝트는 기술 기반시설 개발계획, 토지사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을 준수 해야만 한다. 지역 개발계획, 분야별 개발계획, 생산품 개발계획은 본법 27, 28, 29, 30조에 각각 규정된 투자 우대 분야, 투자 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및 투자 금지 분야와 부합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3. 개발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은 매스컴을 통해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본 계획들을 공개하고 공포할 책임이 있다.
4. 당(當)조에 규정된 기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국가기관이 중개자로서 개발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통보해 줄 책임을 진다.

제 83 조. 투자 촉진

1. 각급 국가기관들의 투자 촉진 활동은 정부 규정을 따른다.
2. 투자 촉진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급 한다.

제 84 조. 투자활동에 관한 감독 및 평가

1. 각급 투자관련 국가관리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평가 및 보고를 시행 한다.
2. 투자활동 감독, 평가의 내용 구성:
 - a) 법적 권한에 따른 법률 안내 문건 공포 및 투자 관련 법 규정의 이행

- b) 투자증명서의 규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상황
- c) 국가, 각 부, 각 지부, 각 지방 및 각급에 위임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 d) 투자 장애 요소 해결, 투자법 위반 행위 처리방안에 대한 건의 및 투자 평가결과에 대한 동급 국가관리기관과 상급 투자관리국가기관에 대한 보고

제 85 조. 투자활동 감사

1. 투자활동 감사 임무:
 - a) 투자 관련 법, 정책 시행에 대한 감사
 - b) 투자 관련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방지, 법적 권한에 따른 처리 혹은 관할 국가기관에 위반 행위 처리 건의
 - c) 투자 관련 청원, 고소에 대한 조사,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관련 청원, 고소 해결 건의
2. 투자 감사의 조직과 활동은 감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86 조. 청원, 고소, 제소

1. 법 규정에 따라 개인은 청원, 고소, 제소의 권한을, 단체는 청원, 제소의 권한을 가지며,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청원, 고소, 제소의 신청 및 청원, 고소, 제소의 해결은 법 규정을 따른다.
2. 청원, 고소, 제소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 혹은 단체는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행정결정을 시행해야만 하며, 관할 투자관리국가기관이 고소,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해당 결정과 판결에 따른다.
3. 관할 각급 투자관리국가기관은 자신의 관할 권한에 속한 각 단체, 개인의 청원, 고소를 해결할 책임을 진다. 자신의 법적 권한에 속하

지 않는 청원,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법적 해결 권한을 가진 관할 국가기관으로 이를 적시에 송부하며 고소, 청원자에게 문서로 이에 대해 알린다.

제 87 조. 위법의 처리

1. 본 법 및 투자관련 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반의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조치, 행정조치 또는 형사상 기소 처리 된다. 만일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해야 한다.
2.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투자활동을 방해 하거나 투자자에게 어려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투자자의 요구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 주지 않거나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각종 공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의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조치, 행정조치 또는 형사상 기소 처리된다.

제 10 장

부 칙

제 88 조.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진행 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법 적용

1.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외국투자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투자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투자증명서를 재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 투자등록을 원하면, 투자증명서 교환 교부 수속을 밟으면 된다.

2.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완료한 국내 프로젝트는 투자등록 수속 혹은 투자심사수속을 진행 할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투자관리담당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제 89 조. 시행 효력

본법은 2006년 7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지닌다. 본법은 1996년 베트남 외국투자법, 2000년 일부 보충 및 개정된 외국투자법과 1998년 국내투자 장려법을 대체한다. 정부는 본법의 시행령 및 이에 대한 안내 규정을 마련한다.

본법은 2005년 11월 29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 11대 국회 제 8차 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옌 반 안.

베트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발행일	2006년 11월 10일
발행인	양 천 식
편집인	이 재 민
발행처	한국수출입은행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
